

1995年 NPT 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1994. 12

全 星 勳(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후
후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노력과 북한 핵문제 등을 감안할 때, 1995년 NPT 연장회의는 한국의 안보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의이다. 한국은 연장회의에 대비하여 확고한 원칙과 신축성있는 세부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연장회의를 국익 극대화의 場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NPT 연장회의를 준비하는 정부의 협상전략 수립과 향후 한국의 핵정책을 보완·발전시키는 데 一助하고자 준비되었다. 본 연구는 연장회의의 주요 예상쟁점으로 11가지 사항을 파악하고 각 쟁점별로 한국이 취해야 할 대책을 제시하였다.

第 I 章 序 論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고, 북한 핵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995년 봄에 개최될 예정인 NPT 연장회의는 한국의 안보 및 원자력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1995년 연장회의는 국익을 앞세운 각국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조약의 유효기간 연

장 합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1995년 연장회의에 대비한 한국의 대책이 다음과 같은 네가지 원칙을 토대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NPT 체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NPT는 유지되어야 하며 차별성을 해소하고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원빈국들의 평화적 원자력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핵무기의 보유와 사용이 금지되어야 하며 완전한 핵군축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넷째, 「비핵화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해소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군축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을 높인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NPT의 기원과 체결배경을 검토하고 NPT의 내용과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NPT에 내재한 문제점과 연장회의에서 제기될 예상쟁점들을 파악하였다. 둘째, 각 예상쟁점별로 한국이 연장회의에서 개진해야 할 입장과 설득논리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第 II 章 NPT의 起源과 締結背景

1. 「바루크 플랜」時期(Baruch Plan Era: 1945~1946)

「바루크 플랜」 시기는 세계 최초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미국이 원자력의 사용과 개발 기술에 대한 독점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기구를 통해 원자력의 무분별한 사용을 통제하고자 시도했으나 실패한 기간이다. 트루만 행정부가 1946년 6월 발표한 「바루크 플랜」(Baruch Plan)의 골자는 (1) 전세계적으로 핵무기의 제조를 중지하고, (2) 감시체제가 가동 이후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하며, (3) 조약위반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합의되고 감시체제가 가동되면 미국은 국제기구에 원자력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소련은 「바루크 플랜」을 즉각 반대하면서 모든 핵무기를 우선 폐기한 이후에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2.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論議時期(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Era: 1946~1957)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논의시기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포괄적인 군축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한 기간이다. 이 시기의 주요 사건은 아이젠하워가 1953년 12월 유엔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계획」(Atoms

for Peace Plan)을 발표한 것이다. 아이젠하워는 핵무기 경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을 제의하였다.

3. 부분군축방안 合意時期(Partial Measures Era: 1957 ~1968)

부분군축방안 합의시기에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포괄하거나 또는 전체 재래식 무기를 모두 포함하는 군축이 아니라 특정 부분의 무기체계 내지는 군사활동을 규제하는 세부군축방안이 합의·이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바로 이 시기에 NPT가 합의되었다. NPT는 아일랜드(Ireland)가 1958년부터 1961년까지 유엔에 제출한 일련의 결의안들에 그 起源을 두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의 1961년도 유엔결의안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擴散禁止 概念」이 NPT의 토대가 되었다: ①핵무기 확산 문제는 국제조약을 통해 다루어져야 함, ②이러한 국제조약은 核國과 非核國이 이행해야 할 의무에 기초해야 함. 확산금지 개념에 기초하고 비핵국들의 핵군축, 평화적 원자력 이용 증진, 안전보장 등의 요구를 반영한 NPT 조약이 1968년 7월 1일 서명, 1970년 3월 5일 발효되었다.

第 Ⅲ 章 NPT의 內容과 履行現況

1. 條約內容 分析 및 履行現況 檢討

NPT는 12개항의 前文과 11개조의 條文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주제별로 다음과 같이 6가지 부문으로 재구성하였다.

가. 擴散禁止(Nonproliferation)

핵국의 핵무기 개발 지원과 비핵국의 핵무기 개발 시도를 금지하는 擴散禁止 부문은 前文 1~3항과 제 I, II조로 구성되어 있다. 확산금지 부문은 대체적으로 잘 이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5개 핵국을 비롯한 원자력선진국들이 정치적·상업적 동기에 의해 핵잠재국들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했고 이라크와 북한 등 신흥핵개발국들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나. 安全措置(Safeguards)

비핵국의 NPT 준수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安全措置 부문은 前文의 4~5항과 제 III조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조치 부문은 비핵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IAEA 사찰로 대별된다.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이후 수출규제조치가 계속 강화되어 왔으며 이라크의 핵개발 사실 발견 이후 기존의 IAEA 사찰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다. 原子力の 平和的 利用(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비핵국들의 평화적 원자력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原子力の 平和的 이용 부문은 前文 6~7항과 제Ⅳ, V조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부문은 핵국과 비핵국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다. 비핵국들은 핵무기를 포기한 댓가로 핵국을 비롯한 원자력선진국들이 그들의 평화적 원자력이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수출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평화적 핵폭발의 혜택을 공유하는 문제는 제2차 NPT 평가회의 이후 死文化된 것으로 보인다.

라. 軍縮(Arms Control and Disarmament)

핵국들의 핵무기 감축을 규정한 軍縮 부문은 前文 8~12항과 제Ⅵ조로 구성되어 있다. 군축 부문은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금지와 수직적 확산금지를 연계하려는 비핵국들의 요구로 NPT에 첨가된 조항으로서 NPT 무기연장을 지지하는 핵국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문이다. 핵국들은 특히 탈냉전 이후에 추진된 군축성과를 예로 들면서 군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비핵국들은 핵국들의 군축노력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면서 NPT 연장과 군축을 연계하고 있다.

다. 非核國의 安全(NWFZ and Security of NNWS)

비핵국들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 영토를 비핵지대화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非核國의 安全 부문은 제Ⅷ조에 해당된다. 비핵국의 안전 부문은 비핵지대 창설과 안전보장으로 세분된다. 한반도를 포함하여 중남미와 남태평양 등 세곳에서 비핵지대가 창설되어 있다. 비핵지대는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비핵국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비핵지대 창설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개 핵국들은 비핵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극적 안전보장」과 「적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있으나 비핵국들은 보다 완벽한 안전보장을 원하고 있다.

바. 條約의 改正, 履行 및 延長(Amendment, Implementation and Extension)

조약의 이행절차와 세부사항을 규정한 條約의 改正, 履行 및 延長 부문은 제Ⅷ, IX, X조로 구성되어 있다. NPT 발효 이후 조약의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는 개최된 적이 없으나 조약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회의는 1975년 이후 5년마다 개최되었다. 1995년에는 조약의 이행을 검토하는 평가회의와 연장기간을 결정하는 연장회의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NPT 탈퇴 규정을 이용하여 탈퇴를 선언했던 유일한 국가는

북한이다.

2. 評價會議 分析

1975년 이후 현재까지 4차례 개최되었던 NPT 평가회의는 조약의 이행현황을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회의이다. 평가회의에서는 특히 NPT를 核國에 유리한 조약이라고 비판하면서 핵국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非核國의 주장과 이에 대한 핵국의 대응이 부각되고 있다.

가. 1975年 第1次 評價會議

제1차 평가회의는 1975년 5월 5일부터 30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평가회의에서는 핵무기 확산 방지와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군축을 위해 NPT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였으며 최종선언문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핵무기 감축과 핵실험 금지 등의 문제에서 핵국과 비핵국간의 의견이 대립되었으며 비핵국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원자력선진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였다.

나. 1980年 第2次 評價會議

제2차 평가회의는 1980년 8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평가회의와 같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군축 및 비핵국의 안전보장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

되었으나 핵국을 비롯한 원자력기술 선진국들과 비핵국들간의 심각한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겪었다. 핵군축 문제에 대한 77 그룹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최종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했다.

다. 1985年 第3次 評價會議

제3차 평가회의는 1985년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평가회의에서 핵국들은 IAEA 전면안전 조치 및 수출통제의 강화 필요성과 핵비확산이 국제 원자력교역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기술과 정보의 교환은 원자력 공급국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핵군축에 대해서는 전략적·정치적 문제라는 이유로 신중히 대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비핵국들은 원자력수출 통제는 NPT의 범위를 벗어난 원자력공급국들의 일방적인 월권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원자력공급 보장 대책을 수립할 것과 기술과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대립에도 불구하고 제3차 평가회의는 최종선언문 도출에 성공하였다.

라. 1990年 第4次 評價會議

제4차 평가회의는 1990년 8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평가회의에서 비핵국들은 NPT 연장에 앞서 「핵실험전면금지조약」(CTBT)을 체결할 것과 비핵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평화적 원자

력이용 분야에서 NPT에 가입한 비핵국들을 우대할 것과 핵 물질의 장기공급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핵국들은 NPT 연장과 CTBT 체결의 직접적인 연계에 반대하면서 모든 NPT 가입국들이 IAEA 안전조치를 철저히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평가회의는 1995년도의 NPT 연장회의와 CTBT 체결을 연계시키는 문제에 대한 관련국들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최종선언문 채택에 실패하였다. 제4차 평가회의에는 북한이 처음으로 참가함으로써 주요 현안에 대해 南北間의 대결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第Ⅳ章 NPT 延長會議의 豫想爭點과 韓國의 對策

NPT의 기원과 내용을 검토하고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5년 연장회의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11가지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각 예상쟁점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核國의 核武器 開發 支援 禁止

첫째, 핵국이 비핵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핵국들이 핵잠재국들의 핵개발을 지원한 「間接擴散」 문제에 대해 한국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NPT에 가입하지 않은 비핵국들에 대한 무분별한 수

출을 자제할 것과 모든 원자력수출의 조건으로 IAEA 전면안 전조치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수출입 현황에 대한 단일보고체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의할 필요가 있다. 비핵국의 영토에 대한 핵무기 배치와 비핵국 군대의 핵무기 사용훈련을 허용하는 「間接的 核武裝化」 문제에 대해, 한국은 한반도에는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거하여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NPT는 핵무기 배치여부를 검증할 수 없으나 「비핵화 공동선언」은 상호사찰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핵무기 탑재 가능한 항공기와 함선의 通過·訪問·寄港 금지 문제는 단기적으로 기존의 허용 입장을 고수하되 중장기적으로 韓·美間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 非核國의 核武器 開發 試圖 遮斷

둘째, 비핵국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는 문제이다. 신흥핵 개발국들중 특히 이란의 핵개발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국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CTBT를 조속히 체결하고 NPT 가입국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CTBT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IAEA 사찰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찰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사회가 남북한

모두에 대해 핵개발 의혹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NPT 연장회의를 핵무장 의사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NPT 연장회의 참가국들에게 「원자력통제기술센터」(TCNC)를 통한 국내사찰 강화와 남북한 상호사찰 등 남북한의 핵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NPT 연장회의 석상에서 남북한이 앞으로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핵·화학·세균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고 공동으로 선언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3. IAEA 安全措置 強化와 原子力透明性 提高

셋째, IAEA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원자력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문제이다. 우선 한국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비핵국에 대한 전면안전조치 적용을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으로 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핵국들의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대한 IAEA 사찰을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핵국들이 모든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대해 NPT에 가입한 비핵국들과 같이 전면안전조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핵국들의 원자력시설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정기사찰보다는 회수와 시기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任意檢査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기존의 IAEA 사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①사찰대상의 확대와 보고체

계의 단일화, ②사찰기준을 변경하여 査察資源이 핵개발 가능성이 큰 국가에 많이 할당되도록 조정, ③IAEA가 정의한 「重要量」(significant quantity: SQ)과 「轉換時間」(conversion time)을 현실에 맞게 수정, ④현실성 있는 특별사찰 실시방안을 강구, ⑤자체적으로 사찰을 실시하는 지역협의체와 협력을 강화, ⑥IAEA 사찰의 非調査的 사찰문화를 변경, ⑦금지되지 않은 군사활동에 사용되는 핵물질에 대해서도 사찰을 실시, ⑧IAEA 사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핵시설을 설계. 남북한 원자력활동의 투명성 증대차원에서 한국은 원자력 통제기술 센터를 통한 국내사찰강화와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거한 남북한 상호사찰 실현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해야 한다.

4. 原子力の 平和的 利用 増進과 輸出規制 緩和

넷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고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이다. 한국은 NPT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수출규제를 강화하되 NPT 가입국에 대해서는 원자력활동의 투명도가 보장되는 정도에 따라 평화적 원자력이용을 지원함으로써, NPT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가는 것이 NPT 체제유지에 기여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핵연료 공급문제에 대해 한국은 핵연료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는 비핵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핵연료 수출국들이 NPT에 가

입한 비핵국들에 대해 핵연료의 가격안정과 공급의 연속성을 구체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지역핵연료주기센터는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비핵국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핵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은 자체적으로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규제의 완화와 관련하여, NPT 체제의 강화가 비핵국들의 평화적 원자력이용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원자력수출국들은 NPT 가입국들에 대해 우대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평화적 목적의 핵실험도 CTBT를 통해 전면 금지되어야 하며, 아울러 한국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공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5. 大幅的인 核軍縮 實現

다섯째, 핵국들의 핵무기를 감축하는 문제이다. 한국은 비핵국으로서 핵국들이 보다 과감한 군축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정 달성에 기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핵무기의 보유와 사용 및 사용위협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는 「核武器에 대한 不法化 規範」이 국제사회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촉구해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규범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핵무장 의혹을 해소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美·러의 핵군축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 NPT 연장기한을 우선 2005년까지로 정하고 이후의 연장 여

부를 「START II」의 이행 여부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핵국들이 「핵무기 質的 동결 의정서」를 체결하여 핵무기의 질적 개선을 중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핵국들이 자국의 영토 이외의 지역에 핵무기의 보유·배치를 금지하는 별도의 NPT 의정서를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국들이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군사전략을 재정립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핵국들이 비핵국에 대해 무조건 핵무기 사용금지를 약속하는 「핵불사용 의정서」를 NPT의 부속의정서로 채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6. 「獨立國家聯合」(CIS)의 核武器 解體 및 核物質·技術 流出 防止

여섯째, 「독립국가연합」(CIS)의 핵무기 해체와 핵물질과 기술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는 문제이다. 특히 핵을 담보로 반대급부를 얻어내려는 우크라이나의 핵정책과 러시아의 핵물질·기술 유출 문제가 주요 관심사항이다. 한국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NPT와 「START I」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한국은 핵물질·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①핵물질 유

출문제를 전담하여 감시·수사하는 국제조직의 창설과 各國 감시기구간 정보교환 및 협력의 강화, ②불법으로 유출된 핵물질·기술의 습득을 시도한 국가에 대한 유엔차원의 제재조치 강화, ③ 핵물질·기술의 불법유출을 중범죄로 간주하여 관련인사나 조직에 대한 형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각국의 국내법을 정비.

7. 「核實驗全面禁止條約」(CTBT) 締結

일곱째,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CTBT를 체결하는 문제이다. 한국은 CTBT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1) CTBT는 신무기 개발, 기존 무기의 현대화 및 量産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적인 조치이므로 조속히 체결되어야 하며 모든 NPT 당사국들이 CTBT에 서명해야 한다; (2) CTBT는 평화적 핵폭발과 소규모의 핵실험을 포함하여 일체의 핵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8. 軍사용 核物質의 生産 禁止 및 透明性 提高

여덟째, 군사용 핵물질의 생산을 금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문제이다. 한국은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군사용 핵물질 생산금지 조약의 조속한 체결을 요구해야 한다. 군사용 핵물질의 생산중단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군사용 핵물질의 총량을 파악하는 조치, 즉 재고공개와 검증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사용 핵물질의 생산금지와 재고파악은 하나의 조치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시설에서 군사용 핵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개 핵국의 평화적 원자력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이 강화되어야 한다.

9. 非核國에 대한 安全保障 強化

아홉째, 핵국이 비핵국에 대해 제공해 온 기존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1995년 연장회의를 앞두고 기존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라는 비핵국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은 새로운 방식의 안전보장을 NPT의 부속의정서로 채택할 것을 제의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안전보장은 기존의 안전보장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격이어야 하며 그 대상은 NPT 가입국으로 한정함으로써 NPT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은 5개 核國들이 「포괄적 안전 보장 의정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약속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①NPT에 가입한 비핵국에 대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위협을 하지 않는 無條件 核不使用, ②비핵국의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저장하지 않는 核武器의 地域的 擴散 禁止, ③5개 핵국 이외의 새로운 핵국으로부터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위협을 받은 비핵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엔안보리는 공격측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포함하여 즉각적인 지원조치를 취하는 非核國에 대한 安保支援.

10. 非核地帶 創設

열제, 비핵국들이 자국 영토에 핵무기 배치를 금지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비핵지대 창설 문제이다. 한국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거하여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약속한 만큼 국제적인 비핵지대 창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국이 「포괄적 안전보장 의정서」의 제2항에서 제의한 「핵무기의 지역적 확산 금지」는 비핵지대 창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기존의 비핵지대화 주장을 다시 제기할 경우 한국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북한의 주장을 재고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1) 남북한 관계의 진정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북한이 체제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하면서 대남 적화노선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남북간 화해·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이 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11. NPT 效力延長 類型 및 期間

마지막으로, NPT 효력연장의 유형과 기간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효력연장의 유형과 관련하여 세가지 가능한 방안중, 한국은 동일 기간을 반복하면서 연장하되 매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기존의 평가회의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여

유효기간 반복의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지지해야 한다. 효력연장의 기간은 10년을 단위로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년의 근거는 NPT 체제의 지속적인 유지와 핵군축을 연계시키기 위해 「START II」에 의거하여 美·러가 3,000~3,500개로 핵탄두를 감축하고 미행정부가 현재의 핵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2003년을 중심으로 제1차 연장시점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핵국들이 10년이 너무 짧다고 강력히 반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은 NPT 최초 발효 후 연장회의 개최까지의 기간, 즉 25년을 마지노선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第 V 章 結 論

1995년 연장회의에서는 남북간의 대결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연장회의에서 논의될 예상쟁점에 대한 남북간의 의견대립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북한이 NPT에 대해 표명해 온 입장을 보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NPT 연장회의에서 유사한 입장을 표명한다면, 이는 양측 모두 핵무기를 포기한 비핵국의 입장에서 NPT의 차별성 해소와 국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5개 핵국과 원자력선진국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

이다. 결과적으로 NPT 연장회의는 국제적으로 참여한 이해가 얽혀있는 핵문제에 대해 남북한의 공조체제가 자연스럽게 구축되고 양측이 民族의 이익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탈냉전 이후 핵국을 비롯한 원자력선진국들은 제3세계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강화해 왔다. 반면에 핵국들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더 이상의 핵군축을 유보하면서, 평화적 기술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핵군축과 안전보장 및 평화적 기술이전에 대한 비핵국들의 요구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핵국들은 1995년 NPT 연장회의를 필두로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이며 제3세계 국가들이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궁극적으로 핵무기의 완전폐기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目 次

第 I 章 序 論	1
第 II 章 NPT의 起源과 締結背景	11
1. 「바루크 플랜」時期(Baruch Plan Era: 1945~1946) ...	12
2.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論議時期(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Era: 1946~1957)	15
3. 부분군축방안 合意時期(Partial Measures Era: 1957~1968)	21
第 III 章 NPT의 內容과 履行現況	33
1. 條約內容 分析 및 履行現況 檢討	33
가. 擴散禁止(Nonproliferation)	33
나. 安全措置(Safeguards)	41
다.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51
라. 軍縮(Arms Control and Disarmament)	54
마. 非核國의 安全(NWFZ and Security of NNWS) ...	60
바. 條約의 改正, 履行 및 延長(Amendment, Implementation and Extension)	64
2. 評價會議 分析	66
가. 1975年 第1次 評價會議	67

나. 1980年 第2次 評價會議	83
다. 1985年 第3次 評價會議	101
라. 1990年 第4次 評價會議	111
第Ⅳ章 NPT 延長會議의 豫想爭點과 韓國의 對策	135
1. 核國의 核武器 開發 支援 禁止	137
2. 非核國의 核武器 開發 試圖 遮斷	140
3. IAEA 安全措置 強化와 原子力透明性 提高	143
4.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 增進과 輸出規制 緩和	156
5. 大幅的인 核軍縮 實現	163
6. 「獨立國家聯合」(CIS)의 核武器 解體 및 核物質·技術 流出 防止	169
7. 「核實驗全面禁止條約」(CTBT) 締結	173
8. 軍事用 核物質의 生産 禁止 및 透明性 提高	181
9. 非核國에 대한 安全保障 強化	184
10. 非核地帶 創設	189
11. NPT 效力延長 類型 및 期間	194
第Ⅴ章 結 論	207
〈附錄〉 「核武器非擴散條約」(NPT) 全文	226
〈參考文獻〉	236

第 I 章 序 論

소련의 와해와 東歐 공산정권의 몰락으로 반세기간 지속되어 오던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였다. 美·蘇 대결구도하에서의 국제관계가 대결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것과는 달리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질서는 대화와 협력이 바탕을 이루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한반도와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냉전시대와 같은 체제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경제 및 군사적 측면의 변화로 광범위하게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유럽의 시장단일화, 北美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약체 형성 움직임 등 지역별로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단일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군사·안보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약이 체결되었고 지역별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군비경쟁과 폐쇄성에 의존했던 국가 안보가 탈냉전시대에는 개방과 투명성 증대에 의해 성취된다는 인식이 증대하고 있다.

탈냉전시대에 군사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핵·화학·세균무기 등 大量殺傷武器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첫째,

소련의 붕괴 이후 연방정부의 核統制가 약화됨으로써 소련의 핵물질·기술 및 핵과학자들의 외부유출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은 외부유출의 가장 큰 동기가 되고 있다. 둘째, 과학기술의 발달로 평화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에 모두 사용가능한 兩面性을 가진 기술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의 제조능력이 보편화되고 있다. 셋째, 국제적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부 국가들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

1991년 걸프전쟁이 끝난 후 이라크의 군비증강 현황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는 제3세계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이라크는 서방정보기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은밀하게 핵·화학·세균무기의 개발을 추진했던 것이다. 결국 탈냉전 이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라크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제3세계 국가들의 핵·화학·세균무기 개발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①이라크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제재, ②「핵무기비확산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의 철저한 준수 천명, ③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안전조치 강화, ④「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의 체결, ⑤「세균 및 독성무기금지협약」(Biological and Tox-

in Weapons Convention: BTWC)의 검증조항 보강을 위한 노력.

이와 같은 새로운 국제환경속에서 1991년 봄 공개적으로 제기된 北韓의 核問題는 범세계적 핵비확산 체제의 유지와 남북한 관계개선에 중대한 위협이 되어 왔다. 북한 핵문제가 동북아 안보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이래 거의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단순히 핵확산 금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의 정치·외교·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그간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북한으로부터 핵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凍結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핵을 카드로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려는 북한이 아직 그들의 과거 핵활동, 즉 정확한 플루토늄 추출량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계기는 걸프전 이후 이라크의 핵개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터이다. 걸프전이 끝난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은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자극받은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북한 핵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던 것이다.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하였으나 18개월 內에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IAEA의 안전조치협정을 5년이

지나도록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1991년 봄까지 북한의 핵개발 현황에 대한 정보는 주로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사진촬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재처리시설을 건설중인 것이 위성사진을 통해 발견됨으로써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은 1991년 11월 「韓半島의 非核化와 平和定着에 관한 宣言」을 통해 핵무기 개발과 재처리 및 우라늄농축 시설의 보유를 포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한국내 일각에서는 평화적으로 사용되는 재처리와 농축시설까지 포기한 것은 主權을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결정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용 재처리시설이 발견된 상황에서,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를 유도하여 핵개발을 중단하도록 만들려는 苦肉之策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韓·美 양국의 노력을 통해 남북한은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하고 북한은 1992년 1월 30일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였다.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핵무기를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는다는 非核8原則을 선언하고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할 것과 재처리 및 우라늄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1993년 봄에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되어 협상이 중단되었다.

북한은 1993년 3월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북한 핵문제가 발생한 이후 한국을 비롯한 북한 핵문제의 당사국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며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미국도 북한과 1년 반동안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관련당사국들의 평화적 문제해결 노력에 힘입어 북한을 NPT 체제내에 묶어두고 북한이 IAEA 사찰을 수용하기 시작한 1992년 5월 이후 핵물질을 不法으로 전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1992년 5월 以前の 플루토늄 추출에 대한 진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1994년 5월에는 IAEA와 협의없이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5MW 원자로에서 사용후 핵연료봉을 인출함으로써 유엔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유엔의 제재결의안 채택 움직임으로 한반도의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미국의 카터 전대통령이 1994년 6월 중순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카터와의 회담에서 북한의 김일성은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해주고 핵위협 중지를 보장하면 핵개발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카터와 김일성의 회담결과를 토대로 北·美간에 3단계 1차 고위급회담이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3단계 1차 회담은 7월 초에 열렸었으나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중단되었다 재개된 것이다. 김일성 死後 북한의 핵 정책이 다시 강경으로 선회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이 수립한 핵정책, 즉 핵을 카드로 對美 협상을 통해 당면한 난국을 돌파한다는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단계 1차 회담에서 北·美 양국은 ①북한의 핵개발 동결(후연감속로 건설 중단 및 방사화학실험실 봉인)과 미국의 경수로 지원, ②워싱턴과 평양에 외교대표부 설치, ③미국의 對北韓 핵불사용 보장과 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④북한의 NPT 잔류와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 등 4가지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개최된 3단계 2차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 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본합의문에 합의하였다. 기본합의문에서 북한은 기존의 주요 핵시설들을 동결·해체하고 NPT에 완전히 복귀하며 IAEA가 요구하는 사찰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조만간 양국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2003년까지 대체에너지와 총 2,000MW 규모의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불사용을 공식 보장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하였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고, 북한의 핵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995년 봄에 개최될 예정인 NPT 연장회의는 한

국의 안보 및 원자력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1968년에 체결되어 1970년에 발효된 NPT는 25년이 경과한 1995년에 유효기간을 재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NPT의 연장문제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이미 1995년도 연장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1994년 9월까지 세차례의 준비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¹⁾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1995년 연장회의는 국익을 앞세운 각국의 참여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조약의 유효기간 연장합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핵무기를 보유한 5개 核國들과²⁾ 기타 원자력선진국들은 NPT의 無期限 연장을 지지하는 반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 非核國들은 NPT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핵국들의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短期間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1995년 NPT 연장회의를 국익확대를 위한 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실 한국이 공식적인 핵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11월 「韓半島의 非核化와 平和定着에 관한 宣言」 이후이다. 그 이

1) 1995년 연장회의는 1995년 4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연장회의의 사전준비를 위해 계획된 4차례의 준비회의(PrepCom meeting)중 1994년 11월 현재 3차례의 준비회의(1993.5.10~14; 1994.1.17~21; 1994.9.12~16)가 개최되었고 1995년 1월 23~27일 마지막 준비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2)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核國」(nuclear weapon state)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非核國」(non-nuclear weapon state)으로 命名하였다.

전까지 한국은 북한의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 주장에 대해서도 일체 대응하지 않고 거의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따라서 1995년도 연장회의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정책을 국제사회에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NPT 연장회의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사항들을 파악하고 각 쟁점별로 한국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5년 연장회의에 대비한 한국의 대책이 다음과 같은 네가지 원칙을 토대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NPT 체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NPT는 유지되어야 하며 차별성을 해소하고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원빈국들의 평화적 원자력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핵무기의 보유와 사용이 금지되어야 하며 완전한 핵군축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넷째, 「비핵화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해소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군축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을 높인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NPT의 기원과 체결배경을 검토하고 NPT의 내용과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NPT에 내재한 문제점과 1995년 연장회의에서 제기될 예상쟁점들을 파악하였다.

둘째, 각 예상쟁점별로 한국이 연장회의에서 개진해야 할

입장과 설득논리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반적인 핵정책을 다루기 보다는 당면한 NPT 연장 회의에 대비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또한 연장회의에서 북한의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이나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세계 대다수 非核國중의 하나인 한국이 NPT의 차별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5개 核國들과 원자력선진국들을 상대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³⁾

본 연구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NPT의 기원과 체결배경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국제적인 군비통제 노력의 맥락속에서 살펴보았다. 1945년 이후 NPT가 체결되던 1968년까지의 기간을 세부분으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핵무기 확산 방지와 재래식 군사력 감축의 추진 과정을 검토·분석하였다. 둘째, 제Ⅲ장은 NPT의 내용을 여섯가지 주제로 재구성하여 분석하고 각 주제별로 조약의 이행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1975년 이후 5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평가회의를 중심으로 조약이행에 따른 문제점과 核國과 非核國間의 갈등을 고찰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제Ⅱ, Ⅲ장의 연구를 바탕으로 1995년도 NPT 연장회의에서 쟁점으로 등장할

3)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성 때문에 한국의 입장이 다른 비핵국들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이미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였고, 또한 주변의 핵국들에 대응하여 공존공영을 모색해야 한다는 민족적 당위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核國 對 非核國의 구도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을 제시하였다.

것으로 예상되는 11가지 사항을 파악하고 각 쟁점별로 한국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쟁점별 대책은 가능한 한 세부적인 문제까지 언급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연장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의 협상전략 수립에 一助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장기적인 행정책을 보완·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第 II 章 NPT의 起源과 締結背景

1968년에 체결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적으로 진행된 군비통제 노력이 거둔 주요 성과중의 하나이다. 戰後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핵무기를 폐기하고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다분히 선전적이고 수사적인 제안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군축을 위한 의견들도 많이 개진되었으며 쌍방의 이해가 일치되는 부분에서 조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NPT의 기원과 체결 배경은 이러한 국제 군비통제 협상의 맥락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NPT가 체결된 1968년까지의 기간은 핵무기의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마칠 때 다음과 같이 세 時期로 대별할 수 있다: ①「바루크 플랜」 時期(Baruch Plan Era: 1945~1946), ②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論議時期(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Era: 1946~1957), ③부분군축방안 合意時期(Partial Measures Era: 1957~1968).

본 장에서는 각 시기별로 핵무기 확산 방지와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위해 진행되어 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그 과정을 검토·분석함으로써 NPT 기원과 체결 배경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바루크 플랜」 時期(Baruch Plan Era: 1945~1946)

「바루크 플랜」 시기는 세계 최초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미국이 원자력의 사용과 개발 기술에 대한 독점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기구를 통해 원자력의 무분별한 사용을 통제하고자 시도했으나 실패한 기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핵무기 확산을 막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國內적으로, 핵무기를 포함한 원자력의 통제권을 軍에서 민간기구인 「원자력위원회」(Atomic Energy Commission: AEC)로 이양하고 핵물질과 기술에 대한 관리를 독점하도록 하였다. 또한 핵관련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장치도 만들었다. 國際적으로, 미국은 1946년 1월 영국, 소련 등과 함께 유엔차원의 원자력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유엔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당시 국무장관 애치슨(Dean Acheson)을 중심으로 원자력의 국제적 통제기구 설치를 위한 내부작업에 착수하여 1946년 3월 「애치슨-리랜탈 보고서」(Acheson-Lilenthal Report)를 발간하였다.

「애치슨-리랜탈 보고서」는 원자력의 연구 및 개발 독점권을 갖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¹⁾ 同 보고서는 이러한 국제기구에 원자력의 개발 및 사용의 모든 단계에 대한 감독

1) Coit Blacker and Gloria Duffy, *International Arms Control: Issues and Agreement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4), p. 96.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이 핵무기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에치슨-리랜텔 보고서」의 한가지 특징은 국제기구가 모든 원자력활동의 운영, 통제, 검사, 허가 등의 권한을 보유하되 조약위반자에 대한 제재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트루만 행정부는 바루크(Bernard Baruch)를 통해 「에치슨-리랜텔 보고서」의 결과를 「유엔원자력위원회」(UN Atomic Energy Commission: UNAEC)에 제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바루크는 조약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을 同 보고서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유엔안보리에서 다수결로 가결된 제재조치에 대해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트루만 행정부는 바루크의 요구를 수용하여 조약위반국에 대해 유엔안보리에서 다수결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을 첨가한 「바루크 플랜」(Baruch Plan)을 1946년 6월 UNAEC에 제출하였다.²⁾ 「바루크 플랜」의 골자는 (1) 전세계적으로 핵무기의 제조를 중지하고, (2) 감시체제가 가동 이후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하며, (3) 조약위반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합의되고 감시체제가 가동되면 미국은 국제기구에 원자력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감시체제는 단계적으로 설치되며 매 단계별로 미국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정보

2) Ibid., p. 97.

와 권한을 국제기구에 이양한다. 그러나 「바루크 플랜」은 실시의 최종단계까지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련은 「바루크 플랜」을 즉각 반대하면서 모든 핵무기를 우선 폐기한 이후에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소련의 반대 이유는 구체적으로 유엔안보리의 거부권한, 서방측의 경제적 우위, 검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3가지 문제로 귀결된다.³⁾ 첫째, 유엔창설 당시부터 안보리의 거부권을 주장해 온 소련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피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루크 플랜」에 유엔을 對蘇 군사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바루크 플랜」의 국제기구가 사실상 서방측에 의해 지배될 것을 우려한 소련은 적어도 원자력분야에서 소련의 경제가 서방에 종속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셋째, 폐쇄체제인 소련은 전통적으로 自國의 시설에 대한 외부요원의 檢證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즉 소련은 국제기구의 檢査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서방으로 유출하는 정보수집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루크 플랜」이 최종단계까지 미국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함으로써 핵무기 분야에서 미국의 對蘇 우위를 기정사실화한 점이다.

3) Ibid., p. 98.

결국 「바루크 플랜」은 이상의 여러가지 차이점에 대해 美·蘇가 타협점을 모색하지 못함으로써 실현되지 못했다.

2.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論議時期(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Era: 1946~1957)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논의시기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포괄적인 군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한 기간이다. 초기에는 다분히 修辭적이고 宣傳적인 차원의 제안들이 교환되었으며 각국은 오히려 군비증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954년 6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핵무기의 완전 폐기와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골자로 하는 3단계 군축안을 제시하면서 부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군축논의가 진행되었다.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논의시기의 전반부는 공산주의의 세력확장을 봉쇄하려는 1947년 「투루만 독트린」(Truman Doctrine), 1948년 체코의 공산화와 베를린 위기, 1950년 한국전쟁 등 東·西間의 냉전이 심화된 기간이었다. 美·蘇間의 군비경쟁도 강화되어, 소련이 1949년 원폭실험에 성공하고 미국은 1952년에 수폭실험을 강행하였으며 소련도 그 다음 해에 수폭실험에 성공하였다. 한편 「바루크 플랜」이 실패한 이후 미국은 핵기술의 확산을 방지하는 규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1946년에 만들어진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은 영국과의 협력도 차단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비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쏠렸던 것은 아니다. 트루만대통령은 1950년 10월 유엔총회에서 미국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동시 감축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1952년 1월에는 기존의 UNAEC와 「재래식군축위원회」(Commission for Conventional Armaments)를 대체하는 단일기구로서 「유엔군축위원회」(UN Disarmament Commission: UNDC)를 창설하기 위한 유엔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또한 같은 해 5월 서방측은 병력수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재래식 군축과 핵군축을 연계시키는 제의를 했으나 소련은 이를 거부하였다. 특히 소련은 서방측이 제의한 검증체제를 광범위한 간첩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소련의 원폭실험에 뒤이어 1952년에는 영국이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더 이상 원자력이용에 대한 비밀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미행정부도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가능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변화는 평화적 원자력이용에 대한 미국의 對內外 정책 변화를 가져 왔다.

국내적으로, 미행정부는 1954년에 「원자력법」을 수정하여 AEC로 하여금 동맹국들과 민간산업계에 원자력과 관련된 정

4) Joseph Nye, "The superpowers and the Non-Proliferation Treaty," in Albert Carnesale and Richard Haass, eds., *Superpower Arms Control: Setting the Record Straight* (Cambridge, Massachusett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87), p. 166.

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핵기술과 정보의 확산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AEC는 적절한 감시장치하에서 핵물질과 기술의 확산을 담당하게 되었다.⁵⁾ AEC의 이와 같은 역할 변화는 1954년에서 1960년까지의 미국 행정책의 근간이 NATO와 핵능력을 공유하는 것이었다는 점에 기인한다.⁶⁾ 1953년에 최초의 핵포탄을 유럽에 배치한 미국은 1955년에 「원자력법」을 완화하여 NATO 회원국들이 핵무기의 외부특성과 핵무기 사용훈련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1958년에는 「원자력법」을 더욱 완화하여 핵물질과 민감한 정보를 동맹국에게 이전할 수 있게 하였다.

국제적으로, 트루만의 뒤를 이은 아이젠하워가 1953년 12월 유엔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계획」(Atoms for Peace Plan)을 발표하였다.⁷⁾ 아이젠하워는 핵무기 경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만약 원자력 선진국들이 이를 위해 그들이 보유한 핵물질의 일부를 국제기

5) Coit Blacker and Gloria Duffy, *International Arms Control: Issues and Agreements*, p. 148.

6) Joseph Nye, "U.S.-Soviet cooperation in a nonproliferation regime," George, A., P. Farley, and A.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Achievements, Failures, Less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 339.

7) 이와 함께, 아이젠하워는 재래식 군사력에 대해서 각국의 병력수를 절대수치로 혹은 각국별 비례에 따라 제한할 것을 제의하였다.

구에 제공한다면 그 만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은 줄어들게 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과시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계획」은 평화적 원자력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을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제시하였다.⁹⁾ 당시 핵무기 보유의 不法化를 추구하는 소련의 선전공세에 대응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아이젠하워의 계획이 소련을 겨냥한 제안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¹⁰⁾

1954년 6월 영국과 프랑스는 다음과 같은 3단계 군축안을 제시하면서 매 단계별로 검증장치를 우선 설치한 후 조약을 이행할 것을 제의하였다:¹¹⁾ (1) 제1단계에서는 모든 국가가 병력과 국방비를 1953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2) 제2단계에서는 합의된 재래식 군사력 감축분의 절반을 감축하고 핵무기

8) Coit Blacker and Gloria Duffy, *International Arms Control: Issues and Agreements*, p. 149. 아이젠하워의 또 다른 의도는 원자력에 대한 독점체제가 무너지면서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는 대신 국제기구를 통해 통제력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이병욱 연구원과의 의견교환, 1994년 11월 14일.

9)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계획」의 기본취지는 평화적 목적이라는 보장하에 각국의 원자력이용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으나 당시 원자력의 평화적 개발에 드는 비용과 그 속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된 정책이 아니며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Joseph Nye, "U.S.-Soviet cooperation in a nonproliferation regime," p. 336.

10) Joseph Nye, "The superpowers and the Non-Proliferation Treaty," p. 166.

11) Coit Blacker and Gloria Duffy, *International Arms Control: Issues and Agreements*, p. 102.

제조를 중지하며, (3) 제3단계에서는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종결하고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며 모든 핵물질을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한다. 반면에 소련은 1955년 5월 10일 국제적 긴장완화, 군비감축, 핵무기 금지, 국제감시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군축안을 제의하였다. 同 제안에서 소련은 서방의 병력상한선 설정제의를 수용하여 美·蘇·中 3국의 병력상한을 100~150만명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제감시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이전보다 진전된 제안을 했으며 위험한 군사활동의 조기경보를 위해 항구, 철도, 교차로 및 공항에 통제소를 설치할 것도 제의하였다.

1955년 7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美·英·佛·蘇 4개국 정상회담에서 아이젠하워는 기습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조기경보의 수단으로 각국의 영토를 포괄적으로 공중검사할 것과 모든 군사시설물에 대한 완전한 청사진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영공개방제안」(Open Skies Proposal)을 했지만 소련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련의 기습공격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우려는 심각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에 미국은 소련의 핵무기를 공격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목표물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¹²⁾ 영공개방은 공격

12) Allan Krass, "The Soviet view of verification," in William Potter, ed., *Verification and Arms Control* (Lexington: Lexington Books, 1985), p. 41.

능력의 강화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소련은 공중검사가 포괄적 군축의 마지막 단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며 미국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당시 소련의 군사력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였다는 점과 영공개방에 의한 정보수집의 여파 등을 고려해 볼 때, 소련의 거부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소련은 미국이 핵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공개방이 소련내 군사·전략적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초래하게 될 전략적 손실과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우려하였다.¹³⁾ 한편 제네바 정상회담에서 소련은 5월 10일에 제의했던 군축안에 (1) 美·蘇·英·佛·中 등 5개국 이외의 각국 병력을 150,000~200,000명으로 제한하고, (2) 핵무기의 선제사용을 금지하는 등 2가지 사항을 추가한 군축안을 제의하였다.¹⁴⁾

제네바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비록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세부적인 부분군축방안들이 美·蘇 쌍방에 의해 제의되기 시작하였다.¹⁵⁾ 예를 들어, 제네바 정상회담에서 핵무기의 완전폐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는 아이젠하워는 1956년 3월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중단」(CUTOFF)을 제안하였다. 소련은 현장검사에 반대하였고 또한 당시 핵물질 생산량에 있어 미국에 비

13) 전성훈,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 80.

14) Coit Blacker and Gloria Duffy, *International Arms Control: Issues and Agreements*, p. 103.

15) *Ibid.*, p. 104.

해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젠하워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소련도 동서독 비핵지대화 창설, 국방비 15% 삭감, 핵무기 실험금지,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국경을 중심으로 800km의 영공개방지대 창설 등 개별적으로 합의가능한 세부 군축방안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헝가리 침공, 英·佛의 스웨즈 운하 공격 등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으며 이후 유사한 방안들이 제의 되었으나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3. 부분군축방안 合意時期(Partial Measures Era: 1957 ~1968)

부분군축방안 합의시기에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포괄하거나 또는 전체 재래식 무기를 모두 포함하는 군축이 아니라 특정 부분의 무기체계 내지는 군사활동을 규제하는 세부군축방안이 합의·이행되기 시작하였다. 부분군축방안 합의시기 초기에는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논의시기부터 협상을 추진해 온 방안들이 합의되었고 구체적인 군축을 논의하기 위한 다자간 협의체가 형성되었다. 반면에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는 美·蘇를 중심으로 협상 노력이 가속화되어 다양한 세부군축방안이 합의되었다. 부분군축방안에 대한 협상은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논의시기의 일반개념에 대한 논의와 달리 구체적인 세부조항을 협의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한번에 2개 이상의 조약을 협상하기 보다는 타결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에 협상력을 집중하였다.¹⁶⁾

1957년을 주요 전환점으로 삼은 이유는 바로 이해에 군사·전략적 및 핵무기 확산 방지 측면에서 2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957년 10월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닉(Sputnik)號를 발사함으로써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는 美·蘇 양국의 안보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보다 타협이 용이한 부분군축방안으로 협상목표를 전환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¹⁷⁾ 스푸트닉 발사후 소련은 他國도 소련 영토를 인공위성으로 정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960년 파리 頂上會談에서 흐루시초프는 어느 국가라도 원한다면 인공위성으로 자유로이 소련을 사진정찰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1963년에는 유엔결의안을 통해 국가의 안보가 우주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原則을 수용하였다.¹⁸⁾ 인공위성의 개발은 東·西 양진영의 관계가 아직 침투성이 강한 現場檢査를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영토·영공·영해

16) Ibid., p. 110.

17) Ibid., p. 107.

18) Mark Lowenthal and Joel Wit, "The politics of verification," in William Potter, ed., *Verification and Arms Control* (Lexington: Lexington Books, 1985), p. 155;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Verification Technologies: Cooperative Aerial Surveillance in International Agreements* (Washington, D.C.: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1991), p. 51.

를 침범하지 않고 조약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수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군비통제조약 체결에 커다란 촉매역할을 하였다.¹⁹⁾

1957년 7월에는 수년간의 협상끝에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가 정식으로 가동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아이젠하워가 1953년에 제의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계획」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미·소 양국은 1954년 1월부터 아이젠하워가 제의한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당시에 핵물질 생산에 있어 미국에 뒤져있던 소련은 「바루크 플랜」에서와 같이 처음에는 아이젠하워의 제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소련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⁰⁾ ①「원자력법」을 수정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려는 미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 ②1954년 가을 유엔총회에서 원자력의 관리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소련이 IAEA 창설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난처해진다는 점, ③미국이 우라늄 공급을 통제하기 위해 영국, 캐나다,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벨기에, 호주, 포르투갈 등이 참여하는 모임을 조직했다는 점. 일련의 협상을 거쳐 1956년 10월 26일

19) 전성훈,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p. 133.

20) Coit Blacker and Gloria Duffy, *International Arms Control: Issues and Agreements*, p. 149.

「IAEA 헌장」(The IAEA Statute)이 마련되었으며 1957년 7월 29일 18개국이 IAEA 헌장을 비준함으로써 IAEA가 임무를 시작하였다. IAEA는 원자력이용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핵물질과 기술 및 자금을 의존하는 기구이다. IAEA는 원자력선진국들로부터 받은 핵물질과 기술을 세계 각국에 제공하며 관련 원자력활동이 평화적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조치협정에 의거한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1959년 8월 美·蘇·英·佛은 실질적인 군축회담기구로서 「10개국 군축위원회」(The Ten-Nation Disarmament Committee)를 창설하였다. 1959년 12월에는 남극을 비무장화, 비핵지대화하고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南極條約」(The Antarctic Treaty)이 체결되었다. 남극이 조약가맹국들의 영토가 아니고 군사적 중요성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극조약의 전략적 가치는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남극조약은 특정지역의 비무장화와 비핵지대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한 조약으로서 훌륭한 군비통제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美·蘇 양국은 1961년 9월 22일 「군축협상 원칙에 대한 미·소 공동성명서」(The US-Soviet Joint Statement of Agreed Principles for Disarmament Negotiations)를 발표하고 「10개국 군축위원회」를 「18개국 군축위원회」(The Eighteen-Nation Disarmament Committee:

ENDC)로 확대·개편하는 데 합의하였다.²¹⁾ 공동성명은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이 양국의 목표라고 선언하였으나 부분군축방안의 개념도 명시하고 있다.²²⁾

1960년대 초에 東·西間 긴장을 고조시켰던 두가지 사건(1961년의 베를린 장벽 설치와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은 군비통제의 관점에서 볼 때,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든 중요한 사건들이다. 특히 미국과 소련을 핵전쟁 일보직전까지 몰고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는 부분군축방안에 대한 합의를 촉진시킨 사건이었으며, 정치적으로는 국제관계가 긴장국면에서 벗어나 대탕트 시대로 진입하는 촉매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핵전쟁 발발의 위험을 실감한 美·蘇 양국은 양국간

21) ENDC는 1969년 26개국으로 회원수를 확대하고 그 명칭도 「군축위원회회의」(Conference of the Committee on Disarmament: CCD)로 개칭하게 된다. 이후 1979년에는 회원수가 40개국으로 늘어나면서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CD)라는 새로운 명칭을 갖게 되었다.

22) 「군축협상 원칙에 대한 미·소 공동성명서」는 一名 「맥클로이-조린 선언」(The McCloy-Zorin Declaration) 이라고도 하는데 유엔의 틀내에 「국제군축기구」(International Disarmament Organization: IDO)를 설치할 것도 제의하였다. 이 原則에 따르면, IDO의 검사요원들은 효과적인 검증을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장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受檢國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Alan Sherr, *The Other Side of Arms Control: Soviet Objectives in the Gorbachev Era* (Boston: UNWIN HYMAN, 1988), p. 273, note 10. 「맥클로이-조린 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군비통제의 기초였던 포괄적 접근법이 거의 마지막으로 시도된 선언이었다. Benjamin Sanders, "Avoiding the worst of all possible worlds," in Joseph Pilat and Robert Pendle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1990), p. 21.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전달 장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1963년 6월 20일 「핫-라인조약」(Hot-lin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이후 1963년 「핵실험부분금지조약」(Limited Test Ban Treaty: LTBT), 1967년 「우주공간에 관한 조약」(Outer Space Treaty), 역시 1967년 「중남미비핵지대화조약」(Treaty of Tlatelolco), 그리고 1968년 NPT 등 일련의 세부적인 군비통제조약들이 체결되었다.

NPT 협상의 정치적 여건은 1960년 이후 핵무기 확산 금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점차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에 프랑스가, 1964년에는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였으며 이에 편승하여 1960년대 초부터는 핵무기 확산을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고조되었다. 핵무기에 대한 국제여론의 악화는 범세계적으로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려는 협상과 함께 지역차원의 비핵지대 설치노력의 강화로 발전되었다. 먼저 아프리카의 경우 사하라 사막에서 실시된 프랑스의 핵실험에 대응하여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핵무기의 실험·제조·사용·배치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다. 반면에 중남미의 비핵지대화 노력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중남미비핵지대 창설의 직접적인 요인은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이다.²³⁾ 이 사건 이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에쿠아도르 등이 1962년 11월

23) Coit Blacker and Gloria Duffy, *International Arms Control: Issues and Agreements*, p. 151.

「중남미비핵화에 관한 결의안 초안」(Draft Resolution on a Latin American Denuclearized Zone)을 유엔총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관련국들간의 협상을 거쳐 「중남미비핵지대화조약」(The Latin American Nuclear Free Zone Treaty: Treaty of Tlatelolco)이 1967년 2월에 서명, 1968년 4월에 발효되었다.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논의시기에는 핵군축에 대한 제의가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포괄적 군축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분군축방안 합의시기에는 핵무기 감축만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아일랜드(Ireland)가 1958년부터 1961년까지 유엔에 제출한 일련의 결의안들이 NPT의 起源이 되고 있다.²⁴⁾ 아일랜드의 제안은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와 이들 핵무기에 대한 NATO의 통제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아일랜드의 1961년도 유엔결의안이 제시한 「擴散禁止 概念」(nonproliferation concept)은 (1) 핵무기 확산 문제는 국제조약을 통해 다루어져야 하고, (2) 이러한 국제조약은 核國과 非核國이 이행해야 할 의무에 기초해야 한다는 2가지 기초를 담고 있다.²⁵⁾ 즉 해당 국제조약은 비핵국

24) Ibid., p. 153. 1958년 아일랜드는 최초로 핵관련 정보의 이전을 금지하는 핵비확산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소련을 비롯한 37개국이 찬성, 미국을 비롯한 44개국이 기권하였다. 이후 아일랜드는 1959, 60, 61년에 계속해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Joseph Nye, "U.S.-Soviet cooperation in a non-proliferation regime," p. 343.

25) Mohamed Shak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regime: a rereading before 1995," in Joseph Pilat and Robert Pendle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1990), pp. 7~8.

의 핵무기 제조를 금지하고,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의 이전과 핵무기 통제권의 이양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산금지 개념」은 核國이 非核國의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운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미국과 소련은 1962년부터 NPT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NATO의 「多國籍核軍」(Multilateral Nuclear Force: MLF) 문제로 1965년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MLF 방안은 NATO가 핵무기를 탑재한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하고 이들 핵무기를 NATO 회원국에서 파견한 병력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NATO의 통제하에 두자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은 MLF 창설을 유럽의 단일화를 가속화하고 구성국간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길로 간주하였다.²⁶⁾ 반면에 소련은 이를 서독이 핵무기 통제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하여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MLF의 창설을 허용하는 핵무기비확산조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²⁷⁾ MLF에 대한 쌍방의 입장차이는 1965년에 양측이 제시한 NPT 초안에 잘

26) MLF에 대한 미국의 숨은 의도는 1960년 프랑스의 핵실험 실시후 MLF를 통해 서독의 독자적 핵개발을 막으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oseph Nye, "The superpowers and the Non-Proliferation Treaty," p. 171.

27) Coit Blacker and Gloria Duffy, *International Arms Control: Issues and Agreements*, p. 153. ENDC에서 NPT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 시작한 1964년 이후 소련은 NPT를 NATO의 핵협력을 차단하고 특히 서독의 핵능력 보유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Joseph Nye, "U.S.-Soviet Cooperation in a Nonproliferation Regime," p. 341.

드러나 있다.²⁸⁾ 미국은 1965년 8월에 제출한 초안에서 핵국이 핵무기를 비핵국의 「국가통제」(national control)하에 두는 것과 비핵국의 핵무기 개발이나 획득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가통제」는 미국의 핵무기를 다른 비핵국이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으나 MLF와 같은 국가동맹체에 의한 관리는 허용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군사동맹에 의거한 군 대과전 등을 통해서 비핵국에 대해 핵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1965년 9월에 제출된 소련의 제안은 MLF 창설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

미행정부내에서 NPT와 MLF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1965년 말 존슨행정부는 MLF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美·蘇間에 NPT 체결의 장애물이 사라졌으며 핵국의 핵무기 이전 금지와 비핵국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골자로 하는 NPT 조약의 기틀이 마련되었다.²⁹⁾ 그러나 1966년부터 ENDC에서 비핵국들이 독자적인 입장을 제기함으로써 NPT는 핵국의 핵확산 금지와 비핵국의 핵보유 포기라는 단순한 차원 이상의 것으로 발전하게

28) Coit Blacker and Gloria Duffy, *International Arms Control: Issues and Agreements*, p. 154.

29) 美·蘇가 NPT에 합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정치적 동기는 당시 핵확산 방지의 주요 대상국들인 일본과 서독을 서로 불신했던 미·소가 이들의 핵보유를 저지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독일 자유백림대 서병문 박사와의 의견교환, 1994년 11월 8일.

되었다.³⁰⁾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인도를 비롯한 비핵국들은 NPT가 핵국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조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핵국이 핵무기 감축을 실시할 것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는 데 있어 핵국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비핵국들은 또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에 핵국들이 自國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1967년 8월 24일 안전조치조항을 생략한 NPT 초안을 공동으로 제시하였다.³¹⁾ 同 초안은 현재 NPT 조약의 제 I, II조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핵국들은 美·蘇의 공동제안에 대해 많은 이견을 제시하였다. 미·소 양국은 비핵국들의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1968년 1월 18일 새로운 공동초안을 제시하였다.³²⁾ 同 초안에서 美·蘇는 핵무기 경쟁을 중단하고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실현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국은 평화적 원자력이용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비핵국들의 비핵지대 창설

30) Coit Blacker and Gloria Duffy, *International Arms Control: Issues and Agreements*, pp. 154~155; Benjamin Sanders, "Avoiding the worst of all possible worlds," p. 21.

31) 안전조치조항이 빠진 이유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회원국들이 NPT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Euratom의 감시체제를 원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럽의 단일화와 통합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지지했으나 소련은 이러한 자체감시를 반대하였다. Joseph Nye, "U.S.-Soviet cooperation in a nonproliferation regime," p. 342.

32) Coit Blacker and Gloria Duffy, *International Arms Control: Issues and Agreements*, p. 157.

권한을 인정하며,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할 것과 조약발효 25년후 연장회의를 갖는다는 점도 명시하였다. 또한 조약 前文에서 핵실험 전면금지를 지지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마침내 조약 문안이 완성되었으며 유엔총회는 1968년 6월 12일 조약의 서명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조약의 서명에 필요한 마지막 걸림돌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비핵국들이 NPT 가입국에 대해 핵국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의 삽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³³⁾ 핵국들은 自國의 전략적 이해를 이유로 비핵국들의 「소극적 안전보장」 요구를 거절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핵무기의 선제사용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비핵국들의 요구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소련은 NPT가 핵무기의 제3국 배치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만약 미국이 서독에 배치한 핵무기로 소련을 공격할 경우 서독에 대해 보복을 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대신 소련은 핵무기가 배치된 국가에 대해서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지 말 것을 제의하였다.

「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지자, 美·英·蘇 3국은 비핵국이 핵무기의 공격이나 공격위협을 받을 경우 즉각 지원하다는 「적극적 안전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

33) Ibid.

을 개별적으로 선언하였다. 유엔안보리는 1968년 6월 19일 이들 선언을 안보리 결의안 255호로 발표하여 非核國에 대한 核國의 「적극적 안전보장」을 공식화하였다.³⁴⁾ 이로써 비핵국들의 안전보장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서 그들의 NPT 거부 주장이 더 이상 명분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NPT 조약은 1968년 7월 1일 서명되었으며 같은 날 존슨대통령은 美·蘇 양국이 「전략무기제한협상」(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SALT)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34) *UN document S/RES/255*, 19 June 1968.

第 Ⅲ 章 NPT의 內容과 履行現況

본 장에서는 NPT의 내용을 분석하고 각 조항별로 이행현황을 검토함과 아울러 4차례에 걸친 평가회의를 중심으로 그간 NPT 이행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12개항의 前文과 11개조의 條文으로 구성된 NPT의 내용을 부문별로 재구성하여 분석하고 각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는가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1975년 이후 5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평가회의를 중심으로 조약이행에 따른 문제점과 核國과 非核國간의 갈등을 고찰하고 1995년 NPT 연장회의에 대비한 한국의 대책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겠다.

1. 條約內容 分析 및 履行現況 檢討

가. 擴散禁止(Nonproliferation)

- 前文: 1. 핵전쟁을 피하고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인식,
 2. 핵무기 확산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증대할 것임을 확신,
 3.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에 의거,

條文: 제 I 조

핵무기 및 통제권의 직·간접적 양도와 非核國의 핵무기 제조, 획득 및 통제를 위한 원조 금지.

제 II 조

핵무기 및 통제권의 직·간접적 접수와 핵무기 제조, 획득 및 이를 위한 지원요청 금지.

NPT의 「擴散禁止」(Nonproliferation) 부분은 前文 1~3항과 제 I, II 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NPT가 핵전쟁의 위험을 피하고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핵확산 방지를 위한 조약체결을 촉구하는 유엔총회의 결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 I 조는 「핵무기 개발 지원금지」(nontransfer) 조항으로서 非核國에 대해 핵무기와 통제권의 이전, 핵무기의 제조와 획득 및 통제를 위한 지원을 금지하는 核國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약에서 사용된 「어떠한 수령자」라는 용어는 NPT 체결 이전에 유럽에서 강력하게 논의되었던 「多國籍核軍」(MLF)과 같은 군사동맹이나 조직을 배제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¹⁾ NPT는 핵무기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비핵국에게 移轉되지 않는 한 해당 비핵국의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

1) Coit Blacker and Gloria Duffy, *International Arms Control: Issues and Agreement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4), p. 156.

을 금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핵국의 영토에 배치된 핵무기에 대해서 NPT 차원의 檢査가 허용될 수 없다.²⁾ 「기타 핵폭발장치」의 금지라는 의미는 NPT 협상과정을 검토해 볼 때, 평화적 목적의 핵폭발 장치의 이전, 제조 및 획득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³⁾

제Ⅱ조는 「핵무기 개발 시도금지」(nonacquisition) 조항으로서 핵무기와 통제권의 접수, 핵무기의 제조와 획득 및 이를 위한 도움요청을 금지하는 非核國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Ⅰ조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타 핵폭발장치」의 「기타」(other)는 「어떠한」(any)으로 해석되어 비핵국이 군사적 목적은 물론 평화적 목적의 핵폭발 장치를 접수, 제조 및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⁴⁾ 따라서 NPT 규정상 비핵국의 핵실험 실시는 전혀 불가능하다.

확산금지 부문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핵국들은 제Ⅰ조의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6개 핵잠재국들이⁵⁾ 핵국을 포함한 원자력선진국들로부터 핵무기 제조에

2) George Bunn and Roland Timerbaev, *Nuclear Verification Under the NPT: What Should it Cover—How Far May it Go?*, PPNN Study Five, (Southampton: Mountbatten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1994), p. 23, note 39.

3) Ibid., pp. 6~8.

4) Frank Barnaby, et al.,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related to disarmament," *SIPRI Yearbook 1976* (Stockholm,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76), p. 378.

5)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이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원자력선진국들의 정치적·상업적 동기가 자리잡고 있다.

정치적 동기의 측면에서 볼 때, 적대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적대국에 인접한 비핵국을 지원하거나 다른 전략적 이유에서 비핵국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해당 비핵국의 핵개발 사실을 묵인하는 사례가 있었다. 前者의 사례로는, 소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핵무장을 지원하거나, 중국이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도운 것을 들 수 있다. 後者の 사례로는, 이란 왕정의 붕괴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응하여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핵개발 규제조치를 완화한 것을 들 수 있다. 1979년 카터행정부는 핵개발 계획을 이유로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원조를 중지하기로 한 결정을 반복했으며, 미의회는 1981년 파키스탄에 대해 「사이밍톤 수정안」(Symington Amendment)의 적용을 6년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⁶⁾ 1984년 9월 레이건대통령은 파키스탄의 우라늄 농

해당된다. David Fischer and Harald Müller, "The fourth review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SIPRI Yearbook 1991* (Stockholm: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91), p. 569.

6) Jennifer Scarlott, "Nuclear proliferation after the Cold War," *World Policy Journal*, vol. VIII, no. 4 (Fall 1991), p. 694. 1976년에 통과된 「사이밍톤 수정안」은 우라늄 농축기술을 수출입하면서 원자력활동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적용을 거부하는 비핵국에 대해 경제·군사원조를 금지할 것을 규정한 법안이다.

축도가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으나 막상 파키스탄이 이를 위반하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990년 부시행정부는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는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실시한다는 요구사항을 6개월내지 1년간 유예하여 5억불의 경제·군사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였다. 여기에는 파키스탄이 걸프전에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참여했다는 점과 파키스탄의 정권교체가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⁷⁾

원자력선진국들의 상업적 이해가 핵잠재국들의 핵개발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6개 핵잠재국 모두가 원자력선진국들로부터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프랑스, 벨기에, 서독 등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핵물질과 장비를 수출했으며 프랑스와 노르웨이가 이스라엘의 핵개발에 도움을 주었다. 인도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원자로와 미국의 重水를 이용하여 핵물질을 양산했으며 파키스탄은 서독, 스위스, 영국 등으로부터 핵물질과 장비를 수입하였다. 서독과 스위스가 아르헨티나를 지원했고 브라질은 서독의 도움을 받아 재처리와 농축을 비롯한 완전한 핵연료주기를 달성하였다.

제Ⅱ조의 위반사례로는 이라크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들 수 있겠다. 이라크는 수십억불의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투자하여 재처리와 농축 등 핵무기 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계획을

7) Ibid., pp. 698~699.

비밀리에 추진하였다. 이라크는 NPT 당사국으로서 IAEA 사찰도 성실하게 수용하면서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더욱 경악시켰다. 국제사회의 핵개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이라크의 노력은 매우 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기 바로 전인 1990년 여름 IAEA의 안전조치 국장은 이라크는 모범적인 핵사찰 수용국이며 이라크에 대한 핵개발 의혹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후세인대통령은 1990년 11월 IAEA 사찰단을 초청, 이라크의 핵시설을 사찰하도록 했는데 IAEA는 아무런 핵개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었다.⁸⁾ 그러나 걸프전 종전 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687호에 의거하여 「유엔특별위원회」(UN Special Commission: UNSCOM)가 임무를 시작하면서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다.

이라크의 핵개발 규모가 그동안 미정보당국이 평가해 온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을 우려한 韓·美 양국은 북한 핵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1985년에 NPT에 가입했으나 IAEA의 안전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Fullscope Safeguards Agreement)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韓·美

8) Ibid., p. 691.

양국의 노력으로, 북한은 1992년 1월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였으며 같은 해 5월부터 1994년 5월까지 10차례의 임시사찰을 수용하였다. IAEA 사찰결과 북한이 1992년 5월 이전에 추출한 플루토늄의 상당량을 IAEA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IAEA는 1993년 2월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IAEA 사찰을 수용한 이후 플루토늄을 추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⁹⁾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몇가지 위반사례에도 불구하고, 1961년 아일랜드가 제출한 유엔결의안의 「擴散禁止 概念」을 구현하고 있는 제 I, II 조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오늘날 NPT 체결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核國의 數가 훨씬 적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초 케네디 미대통령은 1970년대까지 핵무기 보유국의 수가 15~25개국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¹⁰⁾ 그러나 현재 핵잠재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6개국을 포함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핵국의 수는 11개국에 불과하다. 따라서 NPT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NPT가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 방지

9) 블릭스(Hans Blix) IAEA 사무총장의 정기이사회 보고, 「中央日報」, 1994년 9월 13일.

10) Joseph Nye, "The superpower and the Non-Proliferation Treaty," in Albert Carnesale and Richard Haass, eds., *Superpower Arms Control: Setting the Record Straight* (Cambridge, Massachusett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87), p. 186.

에 공헌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기존의 NPT 체제가 여러가지 모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NPT는 그동안 핵무기 확산을 막는 법적 장치로서, 핵비확산 규범의 구현수단으로서, 그리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신뢰구축방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¹²⁾ 또한 NPT를 거부하는 잠재적 핵확산국들을 경계하고, 핵비확산을 위한 대화의 장을 유지하며, 각국의 핵활동을 검증하는 토대가 되었다.¹³⁾ 따라서 현재 국제사회에는 NPT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¹⁴⁾ 예를 들어 미국의 그래함(Thomas Graham) 군축처장은 NPT 연장회의 제3차 준비회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약 55~65개국이 NPT의 무기연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100여국이

-
- 11) NPT가 비판받는 주요 이유는 주권국가들을 核國과 非核國의 두부류로 구분하는 구조적 차별성과 제Ⅳ, Ⅵ조 등 주요 조항들이 만족스럽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Joseph Pilat and Robert Pendley, "Introduction," in Joseph Pilat and Robert Pendle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1990), p. 3. NPT 체제의 모순점을 비판한 논문으로는 金泰宇, "核武器 非擴散條約과 核의 南北問題," 「國防論集」, 第14號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1), pp. 172~192 참조.
- 12) Lawrence Scheinman, "Does the NPT matter?" in Joseph Pilat and Robert Pendle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1990), pp. 53~63.
- 13) Kathleen Bailey, *Strengthening Nuclear Non-Prolifera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3), pp. 12~14.
- 14) NPT 체제의 붕괴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Lewis Dunn, "The collapse of the NPT—what if?" in Joseph Pilat and Robert Pendle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1990), pp. 27~40.

군축의 진전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나 이중 상당수가 강력한 NPT를 원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¹⁵⁾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비핵국들은 기존의 NPT 체제를 거부하기 보다 NPT의 차별성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통해 NPT 체제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그들의 국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安全措置(Safeguards)

前文: 4.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대한 IAEA의 안전조치 적용에 협력,
5. 특정 전략장소에서 원료 물질 및 특수분열성 물질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안전조치한다는 원칙 명시,

條文: 제Ⅲ조

1. 비핵국은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안전조치 수락을 약속.
2. 안전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원료 물질과 특수분열성 물질 및 관련장비는 非核國에게 제공 不可.
3. 안전조치는 평화적 원자력활동 분야에서의 국제협력과 조약당사국의 경제적·기술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
4. 非核國은 IAEA 헌장에 따라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

15) Wendy Lubetkin, "U.S. seeks permanen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Backgrounder* (Seoul: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26 September 1994).

「安全措置」(Safeguards) 부문은 前文의 4~5항과 제Ⅲ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안전조치의 성격을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대하여 특정 전략장소에서 원료 물질 및 특수분열성 물질의 흐름을 검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Ⅲ조는 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은 NPT 가입국이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검증받기 위해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조치의 적용대상을 조약가맹국의 영토내에서 혹은 통제하에 행해지는 모든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과 특수분열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물질이 원자력시설의 내부 혹은 외부에서 생산, 처리, 사용되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안전조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은 안전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핵물질과 장비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항이다.¹⁶⁾ 제2항의 이행을 위해 「NPT 輸出國委員會」(NPT Exporters Committee)가 1970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스위스 외교관이었던 쟁거(Claude Zangger)가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쟁거위원회의 15개 회원국들(이들은 원자력 산업의 발전 정도에 따라 核供給國과 準核供給國으로 분류됨)이 1971부터 1974년까지 모임을 갖고 IAEA의 안전조치

16) 그러나 「시설」(facility)이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본 조항의 중요한 허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가 필요한 「규제품목」(trigger list)을 작성하였다. 아울러 규제품목 수출의 조건과 절차를 결정하였으며 非核國에 수출할 경우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쟁거위원회는 1974년 8월 14일 제2항의 (a)와 (b)목에 대하여 각각 定義와 관련 규제품목을 명시하고 IAEA의 안전조치 적용을 의무화하는 수출규제문서(INFCIRC/209)를 발표하였다. 쟁거위원회가 규정한 규제품목은 <표 3-1>¹⁷⁾에서 보는 바와 같다.

17)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대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3년 3월), p. 15.

〈표 3-1: 쟁거위원회 규제품목〉

1. 핵물질
 - 원료 물질
 - 특수분열성 물질
2. 핵물질의 가공, 사용 또는 생산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장비 및 물질
 - 원자로 및 장비
 - 重水와 같이 원자로에 사용되지만 원자력과 무관한 물질
 - 재처리시설 및 관련 장비
 - 핵연료제조시설
 - 우라늄동위원소 분리시설 및 분석기기를 제외한 관련 장비
 - 重水, 重水素(deuterium) 생산시설 및 관련 장비

쟁거위원회는 1993년 말 현재 29개국¹⁸⁾이 가입하고 있다. 同 위원회의 합의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회원국들의 자율적 준수에 의존한다. 그러나 제4차 NPT 평가회의에서는 원자력수출국들이 쟁거위원회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쟁거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꾀하였다. 즉 NPT 제Ⅲ조와 제Ⅶ조

18)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임.

의 문제를 다룬 「제2위원회」(Main Committee 2)가 채택한 9개항의 권고사항중 제7항에 조약가맹국들이 쟁거위원회에서 규정한 규제품목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¹⁹⁾

쟁거위원회와 함께 원자력수출 규제의 핵심을 이루는 제도가 「原子力供給國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이다. 일명 「런던클럽」(London Club)이라고도 불리는 원자력공급국그룹의 설립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여진다.²⁰⁾ 첫째, NPT가 발효된지 4년만인 1974년 인도가 캐나다에서 수입한 원자로와 自國產 천연우라늄을 이용하여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자 NPT나 쟁거위원회만으로는 핵확산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둘째, 油價 인상으로 인해 제3세계 非核國들의 원자력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셋째, 프랑스와 서독 등 원자력선진국들이 비핵국들에 대해 재처리와 농축시설의 수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핵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미국과 캐나다, 상업적 이유를 들어 처음에는 반대하던 서독과 프랑스 등 4개국에 영국, 일본, 소련이 가세하여 同 7개국이 1976년에 런던에서 최초로 모임을 가졌다. 이후 1977년 9월 15개국이 모인 회의에서 원자력수출시 적용지침이 되는 「런던 가이드라인」(London Guidelines)에 합의하고 이를 1978년 1월 문서(INFCIRC /254)로 발표하였

19) David Fisher and Harald Müller, "The fourth review of Non-Proliferation Treaty," p. 573.

20) Leonard Spector, *Nuclear Ambitions: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1989~1990* (Boulder: Westview Press, 1990), p. 434.

다. 런던클럽의 규제품목은 <표 3-2>²¹⁾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2: 런던클럽의 규제품목〉

1. 핵물질
 - 원료 물질
 - 특수분열성 물질
2. 장비 및 비핵물질
 - 원자로 및 장비
 - 重水와 같이 원자로에 사용되지만 원자력과 무관한 물질
 - 재처리시설 및 관련 장비
 - 핵연료제조시설
 - 우라늄동위원소 분리시설 및 분석기기를 제외한 관련 장비
 - 重水, 重水素(deuterium) 생산시설 및 관련 장비
3. 기술
 - 공급국이 농축 및 재처리 시설, 중수 생산시설 및 주요 핵심부품의 설계, 건설, 운전, 유지에 중요하다고 지정한 기술적 자료
4. 이중사용품목
 - 진동 테스트 장비와 같은 일반산업 관련장비
 - 고강도 알루미늄과 같은 물질
 - 우라늄동위원소 분리장비
 - 「규제품목」이외의 重水생산시설 관련장비
 - 內爆 시스템 개발장비
 - 폭발물 및 관련 장비
 - 핵실험장비 및 부품
 - 중성자 발전시스템과 같은 기타 장비외 다수

21)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pp. 19~20.

NSG의 회원국은 1993년 말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쟁거위원회의 회원국과 동일한 2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공급국그룹 역시 쟁거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자율적인 통제제도이다. 반면에, 런던클럽은 쟁거위원회와 달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²²⁾ 첫째, 런던 가이드라인은 핵물질과 장비 뿐만 아니라 기술의 이전까지 규제함으로써 쟁거위원회의 규제품목보다 적용범위가 훨씬 넓다. 둘째, 안전조치를 적용받지 않거나 핵물질을 다른 용도에 전용하지 않는다는 수입국의 보장이 없는 경우 해당 핵물질을 공급하지 않는다. 셋째, 런던 가이드라인은 규제품목 수출시 IAEA의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적절한 방호조치와 공급국과 수입국간의 협정체결을 요구한다. 넷째, 쟁거위원회는 NPT의 제Ⅲ조 2항을 근거로 함으로써 NPT 조약당사국만이 회원국이 될 수 있는 반면, 런던클럽은 모든 국가가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력공급국그룹은 쟁거위원회보다 여러 면에서 훨씬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수출통제기구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쟁거위원회는 원자력공급국그룹의

22) 송운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다국적 수출통제체제의 동향과 전망,” 「한반도 군비통제」, 제10집 (서울: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1993), pp. 63~64.

규제조치를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 1978년 12월 운영규칙을 1차 개정하면서 같은 해 1월 발표된 런던 가이드라인의 규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였고, 1992년 4월 NSG 제2차 회의에 대부분의 쟁거위원회 회원국들이 참여하여 런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는 데 동의하였다.²³⁾

한편 원자력공급국그룹은 1992년 4월 3일 바르샤바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채택하였다:²⁴⁾ ①핵비확산 목표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보다 우선하는 바, 수출허가에 신중을 기할 것, ②65개 이중사용 품목을 새로운 규제품목으로 결정함, ③그룹의 한 회원국이 특정 수입국에 대한 수출을 거부할 경우 모든 회원국이 이를 따름, ④현재 및 장래의 모든 원자력활동에 대해 IAEA의 전면안전조치를 수용하지 않는 수입국에 대해 수출을 금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함. 이러한 조치에는 과거보다 엄격한 수출관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원자력선진국들의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보인다.²⁵⁾

제Ⅲ조 3항은 NPT 조약국에게 실시되는 IAEA 안전조치

23)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 국제협력 정책연구」, KAERI/RR-1171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 1992), p. 152.

24)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 국제협력 정책연구: NPT 연장 대응전략과 원자력 손해배상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KAERI/RR-1288/93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 1993년 12월), pp. 47~48.

25) 현재 NSG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요건을 충족한 국가에 대해 규제 품목을 수출하고 있다: ①IAEA 전면안전조치 수용, ②핵무기 포기 보장, ③수입한 물질·기술의 제3국 이전시 공급국의 사전동의 의무화, ④핵물질방호협약 준수.

「非敵對的」(nonadversarial)²⁶⁾ 성격임을 규정하고 있다. 비적대적 안전조치란 受檢國의 주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검국이 제출한 자료에 부분적으로 의존하여 검사가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687호에 의거하여 이라크에 대한 핵사찰을 실시하기 전까지 IAEA는 수검국이 검사대상으로 「公開한 시설과 물질」(declared facilities and materials)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해 왔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IAEA의 안전조치 제도는 조약위반을 전제로 이를 探知하는 장치가 아니라 조약준수를 전제로 이를 立證하는 신뢰구축에 중점을 둔 제도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IAEA 전면안전조치체제가 수립되던 1960년대 말에는 아직 평화적 원자력이용이 보편화되지 않았으며 핵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의 대상은 주요 선진국들로 국한되었다.²⁷⁾ 따라서 IAEA 사찰의 비적대적 특징은 운영 및 예산상의 문제와 더불어 당시 주요 사찰대상국이었던 벨기에, 서독, 일본, 이태리, 스웨덴 등 선진 원자력산업국들의 요구에도 기인한다.²⁸⁾

26) Lewis Dunn and Amy Gordon, *On-Site Inspection for Arms Control Verification: Pitfalls and Promise* (McLean, Virginia: The Center for National Security Negotiations, 1989), p. 12.

27) Hans Blix, "Verification of nuclear non-proliferation: securing the future," *IAEA Bulletin*, vol. 34, no. 1, p. 4.

28) George Bunn, "Does the Non-Proliferation Treaty(NPT) requires its non-nuclear-weapon members to permit inspection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of nuclear activities that have not been reported to the IAEA?" *CISAC Working Paper* (Stanford: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Arms Control, Stanford University, May 1992), p. 1.

발전된 원자력기술과 관련 산업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선진국들은 IAEA 안전검사에 따른 비용증대와 더불어 사찰요원들이 사찰과정에서 획득한 산업기밀을 누출함으로써 야기될 원자력수출 시장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였다. IAEA 안전조치의 비적대적 특성은 전면안전조치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사찰제도를 20년 이상 유명무실하게 방치해 온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1992년 2월 24~26일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IAEA는 특별사찰 권한을 확인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결의하였으며,²⁹⁾ 이러한 권한이 1993년 2월 25일 북한에 대해 처음으로 발동된 바 있다.

제Ⅲ조 4항에 의거하여 IAEA는 NPT 가입국을 대상으로 한 「표준안전조치협정문안」(Information Circular /153: INFC-IRC /153)을 마련하여 개별국가와의 雙務的 내지는 여러 국가들과의 多者間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전면안전조치협정」은 「INFCIRC /153」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협정체결국의 특수한 상황이 다소 반영되기는 하지만 안전조치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NPT 발효 당시에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는 발효 후 6개월 내에 IAEA와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시작 후 18개월내에 안전조치협정이 발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총 24개월의 협상시간을 갖는다. 반면에 조약발효 후 가입하는 국가는 조약기탁과 함께 협상을 시작하여 18

29) Jon Wolfsthal, "IAEA to implement 'suspect site' inspection powers," *Arms Control Today*, vol. 22, no. 2 (March 1992), p. 27.

개월내에 안전조치협정이 발효되도록 함으로써 총 18개월의 협상시간을 갖게 된다. 1993년 말 현재 총 162개 NPT 가입국중 95개국에서 「전면안전조치협정」이 발효되어 있다.

다.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前文: 6. 평화적 원자력이용의 혜택은 모든 당사국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

7.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개발을 위한 정보교환과 협력을 촉구,

條文: 제Ⅳ조

1. 본 조약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조약당사국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음.
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최대한의 장비, 물질 및 정보 교환을 약속. 이와 관련, 개발도상지역의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

제Ⅴ조

핵폭발의 평화적 응용에 의한 혜택을 차별없이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부문은 前文 6~7항과 제Ⅳ, Ⅴ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원자력기술의 평화적 응용으로 얻어지는 혜택이 모든 조약당사국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약당사국

간의 과학정보 교환과 협력을 촉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Ⅳ조 1항은 NPT의 어느 조항도 조약당사국이 제Ⅰ, Ⅱ조의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평화적 원자력이용 권한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Ⅳ조 2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교류·협력을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지역 비핵국들의 평화적 원자력이용 발전에 조약당사국들이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Ⅴ조는 모든 조약당사국이 평화적 목적의 핵폭발 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핵국과 비핵국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면서 NPT가 차별적이라는 비핵국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비핵국들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댓가로 선진 원자력기술을 보유한 핵국들로부터 평화적 원자력이용 분야에서의 각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핵국들은 비핵국들의 이러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탈냉전 이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차원에서 핵물질과 기술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핵국과 비핵국간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핵물질과 기술이 평화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에 함께 쓰일 수 있는 兩面性을 갖는다는 데 기인한다.

NPT에 가입하면서 평화적 원자력이용의 혜택을 마음껏 누려 온 국가들은 독일,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의 선진국들과 아시아에서는 일본 등으로 그 數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들 국가들은 핵국들에게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정치적 당위성을 확보하였고, 이와 함께 고도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원자력기술 보유의 경제적 타당성까지 갖추었다. 그러나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이 NPT의 차별성에 불만을 가진 일부 국가들은 아예 NPT 가입을 거부하면서 독자적으로 핵심적인 원자력기술을 확보하였다. 이들 국가들이 핵국들의 수출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 원자력기술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상업적 목적으로 기술과 장비를 수출하려는 원자력선진국들간의 경쟁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평화적 목적의 핵폭발은 앞서 언급한 핵의 양면성 때문에 군사적 목적의 핵폭발과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NPT 협상 당시에도 평화적 목적의 핵폭발 장치와 핵무기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 완벽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사실이 NPT 협상 역사를 검토함으로써 입증되었다.³⁰⁾ NPT 발효 이후 비핵국으로서 공개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인 인도는 자국의 1974년도 핵실험을 “평화적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同 실험 이후 인도는 核國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실정이다. 또한 핵국들이 핵실험을 통해 얻어진 과학적 결과를 비핵국들에게 제

30) Mohamed Shak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regime: a rereading before 1995,” in Joseph Pilat and Robert Pendle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1990), p. 9.

공했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평화적 목적의 핵폭발 조항은 제2차 NPT 평가회의 이후 조약가맹국들의 묵시적 동의 아래 그 이행이 중지되었으며³¹⁾ 현재 死文化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여진다.

라. 軍縮(Arms Control and Disarmament)

前文: 8. 조약당사국의 조속한 핵무기 경쟁 중지와 핵군축 실현 의사 선언,

9. 이를 위한 모든 국가의 협력을 촉구,

10. LTBT 조약당사국들이 同 조약의 前文에서 밝힌 CTBT 협상 의지를 상기,

11. 핵군축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긴장완화와 신뢰증진을 희망,

12. 他國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반대되는 무력사용과 사용위협을 금지할 것과 국제평화는 軍備 지출의 최소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음을 상기,

條文: 제 VI 조

조속한 핵무기 경쟁 중지와 핵군축 및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조약에 관한 협상 진행을 약속.

「軍縮」(Arms Control and Disarmament) 부문은 前文

31) Jozef Goldblat and Macha Levinson, "The second NPT review conference," *SIPRI Yearbook 1981* (Stockholm: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81), p. 324.

8~12항과 제Ⅵ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핵무기 경쟁의 조속한 중지와 조약가맹국의 핵군축 실현 의사를 밝히고 「핵실험부분금지조약」(LTBT) 당사국들이 同 조약의 전문에서 표명한 「핵실험 전면금지조약」(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 체결에 대한 결의를 상기하면서 철저한 국제감시하의 핵군축과 완전한 군축을 위하여 국제적 긴장 완화와 신뢰증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제Ⅵ조에서는 核國들이 핵무기 경쟁의 조속한 중지와 핵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감시하의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을 非核國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제Ⅵ조는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금지와 수직적 확산금지를 연계하려는 비핵국들의 요구로 NPT에 첨가된 조항이다.³²⁾

5개 핵국중 대부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현재 러시아)은 NPT 체결 이후 미진하나마 핵무기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물론 美·蘇가 핵군축 조약을 체결한 것이 비핵국들의 핵무기 감축요구를 의식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美·蘇의 핵군축은 핵비확산 체제 유지차원에서 비핵국들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요인 외에도 전력균형이 달성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과도한 군비지출을 막고자 하는 전략적·경제적 동기와 데탕트로 인한 정치적 긴장완화 등을 통해 양

32) Ibid., p. 335.

국이 협상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NPT가 체결되던 1968년 7월 1일 미국의 존슨대통령이 미·소간에 전략핵무기를 제한하기 위한 협상이 개시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본격적인 핵무기 감축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체결된 「전략무기제한조약 I, II」(SALT I, II Treaty)는 실질적인 군축조약이라기 보다는 조약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쌍방이 보유할 수 있는 핵운반수단의 上限線을 설정하였을 뿐이다. 「전략무기제한조약 I」은 「邀擊彈道미사일조약」(ABM Treaty)과 「전략공격무기에 관한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으로 구성되는데 1972년 5월 26일 모스크바에서 체결, 같은 해 10월 3일 발효되었다. 「요격탄도미사일조약」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서 5년에 한 번 씩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전략공격무기에 관한 잠정협정」은 새로운 조약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5년간 유효하도록 규정되었다 (이후에 「SALT II」로 대체).

「요격탄도미사일조약」은 전략공격무기의 경쟁을 막고 핵전쟁 발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요격탄도미사일시스템(요격탄도미사일, 발사대, 레이더로 구성됨)의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전략공격무기에 관한 잠정협정」은 ICBM의 추가생산과 구형 ICBM의 신형 및 중형 ICBM으로의 전환을 금지하고 SLBM과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數를 현재 보유중이거나 건설 중인 선에서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략무기제한조약 II」는 1979년 6월 18일 비엔나에서 체

결되었으나 미의회의 비준거부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국의 정치적 합의하에 준수되어 왔다. 유효기간은 6년으로 효력발생 후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1985년 12월 31일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되었다. 「SALT II」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쌍방의 정치적 합의하에 준수되어 왔으나 미국이 1986년 11월 일방적으로 조약을 위반함으로써 폐기되었다.

「SALT II」는 ICBM 및 SLBM 발사대, 중폭격기 및 공대지 탄도미사일(ASBM)의 상한선을 1981년 말까지 2,250기로 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

- 다탄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장거리 크루즈미사일 탑재 중폭격기 $\leq 1,320$
- 다탄두 탄도미사일 발사대 $\leq 1,200$
- 다탄두 ICBM ≤ 820
- 고정 ICBM 발사대 신설과 固定重型 ICBM 발사대 수의 증가 금지
- 중형 이동식 ICBM 발사대 및 重型 SLBM, ASBM 발사대 보유 금지
- 新型 ICBM 배치 혹은 실험 금지(단, 輕 ICBM의 경우 1개 신형미사일 개발 가능)
- 기존 ICBM 탄두수 증가를 금지하고 신형 ICBM의 최대허용 탄두수를 10개로 제한하며 SLBM 탄두수를

최고 14개, ASBM 탄두수를 최고 10개, 중폭격기탑재
장거리 크루즈미사일의 수는 평균 28기로 제한

- 전략탄도미사일의 발사중량(launch weight)과 투하중량(throw weight)을 제한하고 輕 ICBM 발사대를 重 型 ICBM 발사대로 전환 不可
- SS-16 ICBM과 신속재탑재(rapid reload) ICBM 시스템 보유 금지
-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배치된 적이 없는 함상발사 장거리 탄도미사일, 해저발사 탄도미사일, 해저발사 크루즈미사일 등 일부 신형 전략 공격무기체계 금지
- 자료교환과 특정 ICBM 시험발사의 경우 사전통보

1970년대의 「SALT I, II」와 달리 탈냉전시대에 체결된 「중거리핵미사일폐기조약」(INF Treaty), 「전략무기감축조약 I, II」(START I, II Treaty)는 실질적인 군축조약에 해당된다. 「SALT I, II」는 핵탄두보다는 이를 운반하는 운반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감축보다는 대체로 기존의 보유수준보다 높은 상한선을 설정하여 핵무기의 증가를 억제한 반면, 「INF」는 중거리핵미사일의 전폐를, 「START I, II」는 핵탄두를 감축대상으로 하고 보유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의 감축을 목표로 하였다.

「INF」는 1987년 12월 8일 워싱턴에서 미·소간에 체결되었으며 1988년 6월 1일 발효되었다. 「INF」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으

로서 사정거리 500~1,000km인 중단거리 및 1,000~5,500km인 중장거리 「지상발사 탄도미사일」(Ground Launched Ballistic Missile: GLBM)과 「지상발사 크루즈미사일」(Ground Launched Cruise Missile: GLCM), 이들 미사일의 발사장치, 기지, 보조장비와 시설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단거리미사일은 조약 발효후 최초 18개월 이내에, 중장거리미사일은 3년 이내에 폐기를 끝내도록 되어 있으며 폐기대상 미사일의 발사실험이나 생산도 금지하고 있다. 1991년 5월 21일 소련이 마지막 21기의 SS-20 미사일을 폐기함으로써 폐기절차가 완료되었다.

「START I」은 1991년 7월 31일 모스크바에서 미·소간에 체결되었으며 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 벨루로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이 새로이 가입하였으며 1994년 12월 5일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정상회담에서 관련국들이 조약비준서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다. 유효기간은 발효후 15년인데 이후 5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발효후 7년간 3단계로 나누어 ICBM, SLBM, Heavy Bomber (HB)로 구성되는 전략핵운반수단(Strategic Nuclear Delivery Vehicle: SNDV)과 「算定可能 핵탄두」(accountable nuclear warhead: WH)의 上限線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제1단계: 발효후 3년〉 SNDV: 2,100기, ICBM & SLBM WH: 8,050개, ICBM, SLBM & HB WH: 9,150개로 규제
- 〈제2단계: 발효후 5년〉 SNDV: 1,900기, ICBM &

SLBM WH: 6,750개, ICBM, SLBM, & HB WH: 7,950개로 규제

- 〈제3단계: 발효후 7년〉 SNDV: 1,600基 (이중 heavy ICBM은 154基), ICBM & SLBM WH: 4,900개 (이중 mobile ICBM의 WH는 1,000개, heavy ICBM의 WH는 1,540개), HB WH: 1,100개로 규제

「START II」는 1993년 1월 3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되었으나 미·러의 비준절차가 완료되지 못했으며, 「START I」이 먼저 발효된 후에 이행될 예정이다. 「START II」는 「START I」보다 훨씬 대폭적인 핵무기 감축을 추구하고 있다. 「START I」에서 算定可能 핵탄두수를 6,000개로 제한하였으나 「START II」에서는 2003년까지 실제 보유하는 핵탄두수를 3,000~3,500개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상에서 발사되는 多彈頭를 전폐하고 러시아의 SS-18 미사일도 완전히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SLBM의 핵탄두수를 700~1,750개로 제한하고 중형 ICBM의 핵탄두를 전폐하도록 하였다.

마. 非核國의 安全(NWFZ and Security of NNWS)

條文: 제Ⅶ조

영토내의 核不在를 통한 조약가맹국들의 비핵지대 창설 권한을 인정.

「非核國의 安全」(NWFZ and Security of NNWS) 부문은 제Ⅶ조에 해당된다. 제Ⅶ조는 비핵국들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의 영토를 핵무기의 존재를 금지하는 비핵지대로 만들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NPT 체결전에 창설된 중남미비핵지대, 1985년에 설치된 남태평양비핵지대 그리고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거하여 합의된 한반도 등 3개의 비핵지대가 존재한다. 이밖에 중동,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아세안 등이 비핵지대화 대상으론 거론되고 있다.

「중남미비핵지대화조약」은 1967년 2월 14일 멕시코의 틀라테롤코(Tlatelolco)에서 체결되었으며 1968년 4월 25일 발효되었고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다. 중남미지역 33개국중 26개국이 비준하였으며 3개국이 서명만 하였다.³³⁾ 조약가맹국들은 핵무기의 획득, 배치, 저장 뿐만 아니라 보유, 생산, 실험, 사용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남미비핵지대화조약」에는 두개의 의정서가 첨부되어 있다. 제Ⅰ의정서는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중남미지역에 영토를 보유한 3개국에 대해서 해당 영토를 비핵지대화 하도록

33) 브라질은 1968년에 조약을 비준하였으나 후속 수정안에 대한 공식인정을 미루고 있다.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은 3개국은 벨리즈(Belize), 도미니카, 세인트 루시아(St. Lucia) 등이다. 서명하지 않은 4개국은 Cuba, Guyana, St. Kitts and Nevis,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등이다. *The Arms Control Reporter* (Cambridge, Massachusetts: Institute for Defense and Disarmament Studies, 1994), p. 452. A.3.

요구하고 있다.

제Ⅱ의정서는 5개 핵보유국이 중남미의 비핵지대화를 존중하며 조약가맹국에 대해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Ⅰ, Ⅱ의정서에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이 의정서를 서명·비준하였다.

「남태평양비핵지대화조약」은 1985년 8월 6일 라로통가에서 체결되었으며 1986년 12월 11일 발효되었다.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며 남태평양 11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조약가맹국들은 이 지역 内外에서 핵무기와 핵폭발 장치를 획득, 제작, 소유, 통제, 실험, 배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태평양비핵지대화조약」에는 세계의 의정서가 첨부되어 있다. 제Ⅰ의정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이 지역에 영토를 보유한 3개국이 해당 영토에서 핵무기의 제조·배치·실험 금지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Ⅱ의정서는 조약가맹국에 대한 5개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사용위협을 금지하고 있다. 제Ⅲ의정서는 남태평양지역에서 5개 핵보유국이 일체의 핵폭발실험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제Ⅰ의정서는 서명국이 없으며 제Ⅱ, Ⅲ의정서에는 중국과 러시아만이 서명하였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1991년 12월 31일 합의되었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등 남북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1991년 9월 부시 미대통령의 전술핵 철수선언으로 인한 남한내 核不在 사실

확인파 북한의 비핵지대화 요구 철회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체결될 수 있었다. 「비핵화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금지하는 非核8原則, ②原子力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 ③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 보유 금지, ④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 실시, ⑤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

남북한은 1992년 3월 19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사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남북한은 1993년 1월 25일까지 13차례의 핵통제공동위원회 전체 회의와 8차례의 위원접촉 및 1차례의 비공개 위원장 접촉을 가졌으나 사찰대상 선정과 사찰방법에 대한 양측의 첨예한 의견대립과 팀스피리트 훈련 개최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담이 중단된 상태이다.³⁴⁾

34) 핵사찰과 관련한 남북한의 입장차이에 대해서는, 전성훈, “核問題에 대한 北韓의 立場과 非核化 展望,” 「제5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14~17; Seongwhun Cheon, “Regional non-nuclear options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paper prepared for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managed by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erkeley, California, June 1994 참조.

바. 條約의 改正, 履行 및 延長(Amendment, Implementation and Extension)

條文: 제Ⅷ조

1. 조약당사국 1/3 이상의 요청으로 조약개정안 심의회의 소집 가능.
2. 조약에 가입한 모든 核國과 개정안 배포시점에 IAEA 이사국인 조약 당사국 전체의 찬성을 포함, 조약당사국 과반수의 찬성(비준서 기탁)으로 승인(발효).
3. 조약발효 5년 후에 조약의 이행여부를 검토하는 평가회의 개최. 그후 5년마다 조약당사국 과반수의 제안으로 동일한 평가회의 개최 가능.

제Ⅸ조

3. 核國은 1966년 12월 31일 以前에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 장치를 제조·폭발한 국가임.

제Ⅹ조

1. 각국은 조약가입이 자국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3개월전에 통보하고 탈퇴 가능.
2. 본 조약 발효 25년 후에 조약 효력의 연장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 소집.

「條約의 改正, 履行 및 延長」(Amendment, Implementation and Extension) 부분은 제Ⅷ, Ⅸ, Ⅹ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Ⅷ조 1항은 조약당사국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약개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Ⅷ조 2항은 개

정안 통과와 조건으로 NPT에 가입한 모든 核國과 개정안 배포시점에 IAEA 이사국인 조약당사국 전체의 찬성을 포함하여 전체 조약당사국 과반수의 찬성투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Ⅷ조 3항은 조약 발효 5년후 조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과 그후 5년마다 조약당사국 과반수의 요청으로 동일한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Ⅸ조 3항은 核國을 1966년 12월 31일 以前에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킨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제Ⅸ조는 이외에도 조약의 가입, 기탁, 통보, 등록 등에 관한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

제Ⅹ조 1항은 조약당사국이 NPT 가입으로 인해 자국의 최고이익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3개월전에 통보하고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제Ⅹ조 2항은 발효 25년이 지난 후 조약의 효력연장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연장회의를 소집할 것과 구체적 연장기간은 조약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NPT 발효 이후 지금까지 조약의 개정을 위한 회의는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 반면에 조약 평가회의는 1975년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나 두번의 평가회의에서 최종선언문도 채택되지 않는 등 NPT의 차별성에 대한 핵국과 비핵국간의 심각한 갈등이 노정되어 왔다. 연장회의의 개최시점이 다섯번째 평가회의가 열리는 1995년이기 때문에 1995년에는 조약의

이행여부를 검토하는 평가회의와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연장회의를 포괄하는 「1995년 NPT 회의」(1995 NPT Conference)가 개최될 예정이다.³⁵⁾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연장회의」로 명칭을 통일한다.

NPT가 발효된 이후 NPT 탈퇴를 선언했던 유일한 국가는 북한이다.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韓·美 양국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미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 강요를 이유로 들어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NPT를 탈퇴한다고 선언하였다.³⁶⁾ 이후 북한은 1993년 6월 2~11일 뉴욕에서 개최된 미국과의 제1단계 고위급회담에서 NPT 탈퇴선언의 효력발생을 임시 정지시킨다고 선언함으로써 NPT 탈퇴를 잠정 유보하였다. 그리고 1994년 9월 23일~10월 17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단계 2차 고위급회담에서 경수로 지원과 北·美 관계개선을 조건으로 NPT에 완전히 복귀하였다.

2. 評價會議 分析

1975년 이후 현재까지 4차례 개최되었던 NPT 평가회의는

35) 연장회의와 평가회의를 함께 개최기로 한 것은 1992년 12월 24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A/RES/47/521A)에 따른 것이다.

36) 「로동신문」, 1993년 3월 13일. 1992년 11월 북한을 방문한 헤이즈(Peter Hayes)는 북한 관리들로부터 만약 팀스피리트 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은 NPT를 탈퇴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 같은 북측의 메시지를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John Fialka, "Security council asked to review North Korea,"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2~3 April 1993.

조약의 이행현황을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회의이다. 평가회의에서는 특히 NPT가 核國에 유리한 조약이라고 비판하면서 핵국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非核國의 주장과 이에 대한 핵국의 대응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각 평가회의에서는 NPT에 내재되어 있는 차별성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제의되었으며 이 중에는 NPT 연장을 앞둔 현 시점에서 再考될 필요가 있는 방안들도 많이 있다. 본 절에서는 4차례에 걸쳐 개최된 NPT 평가회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대책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각 평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표 3-3>에 요약·정리하였다.

가. 1975年 第1次 評價會議

제1차 평가회의는 세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1975년 5월 5일부터 30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96개 정회원국 중 58개국이 회의에 참가했으며 NPT에 가입했으나 비준하지 않은 15개국 중 7개국이 의사결정권없이 회의에 참석했다. 또한 NPT에 서명하지 않은 7개국도 회의를 참관하였다. 회의는 핵무기의 확산 방지와 경쟁 중지 및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NPT의 역할을 재확인했으며 「최종선언문」(a Final Declaration) 도출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핵무기 감축과 핵실험 금지 등의 문제에서 핵국과 비핵국간의 의견이 대립되었으며 비핵국들은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에서

원자력선진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였다. 특히 제Ⅵ조의 이행문제에 대해 가장 논란이 많았다. NPT의 각 조항별로 평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최종선언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³⁷⁾

(1) 제Ⅰ, Ⅱ조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핵국과 핵국의 의무를 규정한 제Ⅰ, Ⅱ조의 위반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최종선언문은 제Ⅰ, Ⅱ조가 모든 조약당사국에 의해 적절히 준수되었다고 명시하고 두 조항의 엄격한 준수가 핵무기 확산 방지의 핵심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가 1974년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사실상 또 하나의 핵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인도가 핵실험에 이용한 플루토늄은 카다나가 공급한 원자로(Cirus)에서 생산된 것이다. 인도는 자국의 핵실험을 평화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카나다는 인도가 同 원자로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어쨌든 인도의 핵실험은 “모든” 형태의 핵폭발장치 개발을 금지하는 NPT 제Ⅰ, Ⅱ조의 보다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37) *Final Declaration of the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CONF/30/Rev. I, Annex I, 30 May 1975; Frank Barnaby et al.,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related to disarmament,” pp. 363~401.*

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NPT 제 I 조는 “核國들”이 핵무기 및 통제권의 직·간접적 양도와 非核國의 핵무기 제조, 획득 및 통제에 대한 원조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NPT는 유사한 능력을 가진 “非核國들”이 조약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다른 비핵국들에게 핵개발을 지원·장려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소련은 1968년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이 다른 비핵국의 핵무기 제조와 획득을 돕는다면 이는 조약의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제1차 평가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되풀이 하였다. 미국도 NPT에 가입한 비핵국이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핵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나 만약 그렇다면 이는 조약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³⁸⁾

한편 유고슬라비아는 핵국이 동맹국인 비핵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핵무기 사용훈련을 시키는 것은 비핵국에 대한 「間接的 核武裝化」(an indirect nuclearization)이며 이는 NPT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³⁹⁾ 사실 이 문제는 핵무기 통제권의 이전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핵무기의 제조 금지는 IAEA 안전조치를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핵무기의 이전 금지를 위한 국제적 감시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38) Ibid., p. 369.

39) NPT Review Conference document NPT/CONF/C.I/SR.9.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⁰⁾ 이는 핵국이 우방국에 배치한 핵 무기를 평시에 완전히 통제하더라도 戰時에 해당 비핵국의 사령관에게 핵무기 사용권을 이전하여 NPT를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제Ⅲ조

최종선언문은 제Ⅲ조에 의거한 IAEA의 검증활동은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경제, 과학, 기술개발 및 평화적 원자력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안전조치의 공정하고 지속적인 적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종선언문은 또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물질 수입국의 모든 평화적 원자력활동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안전조치와 관련된 수출요건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NPT에 내재된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조약당사국들이 전면안전조치의 적용을 받는 반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비핵국들은 IAEA와의 협의에 따라 관련 시설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안전조치를 적용받는다는 사실이다. 즉 NPT 비가입국들은 일부 원자력활동에 대해 안전조치를 받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활동이 전적으로 평화적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점을 고려하여, 최종선언문은 NPT 비가입국에

40) Frank Barnaby et al.,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related to disarmament," p. 385.

대한 안전조치의 확대를 촉구함과 아울러 비핵국에게 구체적으로 이전된 과학,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처리, 사용, 생산된 핵물질에 대해 공통된 안전조치 요건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핵확산 방지의 관점에서 볼 때, 제공된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의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IAEA 사무총장이 평가회의와 IAEA 총회에서 발언한 바와 같이,⁴¹⁾ 핵물질 수입국의 관련활동 일체에 대한 IAEA의 안전조치 적용을 원자력수출의 전제조건으로 하기 전에는 만족스런 안전조치 시스템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핀란드는 NPT 비가입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더불어 각국이 NPT 조약당사국이거나 혹은 이에 상응하는 IAEA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거나 또는 NPT 가입국처럼 수출정책을 펴는 국가들로부터만 핵물질과 장비를 수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NPT 틀밖에서 거래되는 핵물질의量を 제한하고 원자력수출국에 대해 NPT 규범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⁴²⁾

核國의 평화적 원자력활동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이태리, 스웨덴을 비롯한 다수 국가

41) *NPT Review Conference document NPT/CONF/SR.2: IAEA Director General's statement*, 22 September 1975.

42) Frank Barnaby et al.,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related to disarmament," p. 372.

들이 NPT에 가입한 핵국들도 그들의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대해 IAEA의 안전조치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NPT의 차별성에 대한 비핵국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비핵국으로부터 핵국으로 이전되는 핵물질이 핵무기 제조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⁴³⁾ 한편 1974년 6월 미국, 영국, 소련은 3국간에 거래되는 핵물질 관련 정보를 IAEA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 제IV조

최종선언문은 NPT가 조약가맹국의 평화적 원자력활동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장비, 물질 및 정보 교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地域的 혹은 多者間 「핵연료주기센터」(Nuclear Fuel Cycle Center)가 평화적 원자력개발 계획을 발전시키고 핵물질의 물리적防護와 IAEA 안전조치의 적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조항의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비핵국들로부터 상당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조약가맹국들보다 비가맹국들이 훨씬 많은 혜택을 입었다는 점이 통계자료를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최종선언문은 평화적

43) Ibid.

원자력이용을 위한 물질, 장비, 정보 등의 지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각국은 NPT 준수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비핵국의 평화적 원자력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핵국과 원자력선진국들의 노력은 매우 미약했다고 보여진다.

한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등은 핵군축으로 생산되는 핵물질의 일부를 IAEA를 통하여 비핵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으나, 핵국들은 이를 무시하였다. 모든 조약가맹국의 국방비를 1% 감축하여 이를 NPT에 가입한 개발도상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관련 사업에 사용하자는 필리핀의 제안도 거부되었다. 한편 이태리는 핵연료의 가격안정과 공급의 연속성 문제가 최종선언문에서 검토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핵물질과 기술의 보급으로 인해 핵무기 확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종선언문에서 고려한 지역적 혹은 다자간 핵연료주기 센터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⁴⁴⁾ ①개별국가의 농축 및 재처리시설 보유동기를 약화시킴, ②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필요성을 만족시킴, ③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④핵물질의 이동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안전조치 적용을 촉진하고 핵물질 방호를 강화함. 최종선언문은 이 분야에

44) Ibid., pp. 375~376.

대한 IAEA의 연구를 환영하면서 조약가맹국들이 재처리시설, 플루토늄연료 제조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후핵연료 장기 저장시설 등 관련시설의 건설과 운용에 관한 자료를 IAEA에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제 V 조

최종선언문은 조약가맹국들이 핵폭발의 평화적 응용에 의한 혜택을 공평하고 저렴하게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IAEA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기구라고 평가하였다.

멕시코를 비롯한 8개국은 제 V 조에 언급된 「특별한 국제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NPT 조약당사국 회의를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핵국들은 별도의 회의보다는 IAEA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 문제를 IAEA의 틀내에서 다룰 것을 주장하였다.⁴⁵⁾

핵폭발의 혜택을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게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 평가회의에서는 이들이 외부의 도움을 확신할 수 있다면 평화적 핵폭발 기술의 독자적 개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점이 설득력있게 수용되었으며,⁴⁶⁾ 최종선언문은 NPT 비가입국들도 평화적 핵폭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45) Ibid., p. 377.

46) Ibid.

명시하였다.

한편 최종선언문에 평화적 핵폭발 기술은 연구·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으며 국제법 및 기타 많은 관련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된 바와 같이, 평가회의에서는 평화적 핵폭발 응용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평화적 핵폭발의 가치가 별로 없다는 것이 판명되면 조약가맹국들은 평화적 핵폭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체적으로 서방국가들은 평화적 핵폭발의 타당성과 유용성에 회의를 품은 반면 소련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평화적 핵폭발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평화적 목적의 핵실험이 군비통제조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1975년 7월 14~18일 개최된 군축위원회회의(CCD) 비공식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⁴⁷⁾

첫째,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가능한 핵폭발장치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핵실험은 兩面性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화적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는 핵무기 보유능력을 갖추게 되며 평화적 핵폭발 장치의 확산은 곧 핵무기 확산과 동일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NPT는 「모든」(any) 핵폭발장치의 제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지하핵실험과 달리 터널, 항만 등을 위한 굴착목적의

47) Ibid., pp. 378~379.

핵폭발은 대기중에 방사능 물질을 확산시키지 않을 수 없다. 방사능 물질이 핵폭발을 실시한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확산되면 이는 1963년 「핵실험부분금지조약」(LTBT)을 위반하는 것이다.

셋째, 핵국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하핵실험의 규모와 빈도를 제한하는 데 합의하면 평화적 목적의 핵실험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핵무기 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조약이 체결되면 평화적 목적의 핵실험을 통해 군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핵국이 평화적 목적의 핵실험을 가장 하여 핵무기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인 검증이 실시되어야 한다.

(5) 제Ⅵ조

최종선언문은 지난 수년간 다양한 군비통제 및 군축조약이 합의된 것을 환영하였으나, 군비경쟁 특히 핵무기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제Ⅵ조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核國들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최종선언문은 또한 1963년 LTBT의 前文에 명시된 핵실험 전면금지 결의를 확인하면서 CTBT 체결이 핵무기 경쟁을 중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의 하나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LTBT에 가입한 핵국에 대해 지하핵실험의 실시 회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을 촉구하였다.

평가회의에서 비핵국들 특히 비동맹 중립국들은 핵실험의 지속적인 실시와 핵무기의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핵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우선적으로 핵군축을 실시하면서 다른 핵국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핵무기의 數的, 質的 증강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비핵국들에 의해 제시되었다.⁴⁸⁾

볼리비아 등 20개국⁴⁹⁾은 NPT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 I 의정서」(Additional Protocol I)를 첨부할 것을 제의하였다: 미국, 소련, 영국은 NPT 가입국이 100개국에 도달하면 10년간 지하핵실험을 중단하고, 이후 5개국이 추가로 NPT에 가입할 때마다 핵실험 중단을 3년 연장하며, 다른 핵국들도 핵실험 전면금지 의사를 밝힐 경우 즉각 핵실험 중단을 영구적인 「핵실험 전면금지조약」으로 전환함. 또한 상기 20개국중 필리핀을 제외한 19개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 II 의정서」(Additional Protocol II)를 채택할 것도 제의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NPT 회원국이 100개국에 도달하면 1974년 블라디보스톡 협정에서 합의된 2,400基의 전략핵운반수단을 50% 감축함과 아울러 MIRV 장착이 가능한 1,320基의 전략탄도 미사일의 數도 50% 감축하며 10개국이 추가로 NPT에 가입

48) Ibid., pp. 380~381.

49)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가나, 온두라스, 자마이카, 레바논, 리비아, 멕시코, 모로코, 네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페루, 필리핀, 루마니아, 세네갈, 수단, 시리아, 유고슬라비아, 자이레 등임.

할 때마다 잔여 전략핵운반수단과 전략탄도미사일을 10%씩 감축해 나갈.

核國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평가회의에서 논의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련은 이상의 제안들이 美·蘇 관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간섭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미국은 핵무기 감축의 진전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SALT 협상 당사자들에게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NPT 회원국의 많고 적음보다는 핵개발 능력이 있는 국가의 NPT 가입여부가 핵확산 체제 유지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NPT 회원국의 數와 미·소가 보유한 핵무기 수량을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되었다.⁵⁰⁾ 이에 대해 멕시코는 NPT 회원국의 質(핵개발 능력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정서 초안을 수정할 용의를 보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 제Ⅶ조와 비핵국에 대한 안전보장

최종선언문은 모든 국가가 독립성, 영토 보존성 및 주권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핵보유를 포기한 비핵국의 안보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NPT 기탁국들의 적극적 안전보장에 대한 결의에 주목하였다. 또한 지역당사국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주도하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비핵지대를 창설

50) Frank Barnaby et al.,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related to disarmament," p. 381.

하는 것이 핵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해당지역 국가들의 안보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종선언문은 비핵지대화 조약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핵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비핵국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국들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가나, 네팔, 나이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등 5개국은 NPT에 가입한 비핵국 영토의 비핵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였다:⁵¹⁾ ①NPT에 가입한 핵국들이 NPT에 가입한 비핵국의 영토에서 모든 핵무기, 특히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할 것, ② NPT에 가입한 비핵국의 영토에 대한 일체의 핵무기 배치를 즉각 중지하고 상기 조약 발효후 점진적으로 핵무기를 철수할 것, ③영토, 영해, 영공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NPT에 가입한 비핵국은 NPT에 가입한 다른 비핵국들에 대한 이들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허락하지 말 것. 또한 멕시코를 비롯한 11개국⁵²⁾들은 미국, 영국, 소련이 비핵지대 창설을 장려하고 설치된 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비핵국에 대한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적극적 안전보장 의사를 밝힌 유엔결의안 255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적극적 안전보장이 가

51) *NPT Review Conference document NPT/CONF/C.I/L.1.*

52)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가나,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루마니아, 세네갈, 수단, 유고슬라비아, 자이레 등임.

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⁵³⁾ ①적극적 안전보장은 사용된 무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피공격국에 대한 지원의무를 규정한 유엔헌장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함, ②모든 핵국들이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상황에서 적극적 안전보장은 핵국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될 수 있음, ③해당국이 도움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국의 즉각적인 개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부 비동맹중립국들의 주장, ④적극적 안전보장은 핵공격이나 공격위협이 발생했을 경우의 지원을 보장하고 있을 뿐, 이의 방지를 보장하지 못함.

적극적 안전보장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소극적 안전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이제리아를 비롯한 11개국⁵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Ⅲ의정서」(Additional Protocol Ⅲ)를 NPT에 첨부할 것을 제안하였다.⁵⁵⁾ ①NPT 기탁국들은 영토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비핵 조약당사국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하지 말 것, ②「기타」(any other) 비핵 조약당사국에 대한 핵무기의 선제사용을 자제할 것, ③핵무기 사용이나 사용위협의 피해국이 요청할 경우 유엔헌장에 의거하여 즉

53) Frank Barnaby et al. ,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related to disarmament," pp. 383~384.

54)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가나, 멕시코, 나이제리아, 페루, 루마니아, 세네갈, 수단, 유고슬라비아, 자이레 등임.

55) Frank Barnaby et al.,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related to disarmament," p. 384.

각적인 지원을 실시할 것.

비핵국들의 소극적 안전보장 제안에 대한 핵국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특히 미국은 소극적 안전보장이 전세계적으로 취해질 경우 핵비확산과 NPT의 보편적인 준수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핵국의 핵무기로 보호를 받는 비핵국이 자체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종선언문은 비핵지대화가 해당국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핵국이 비핵지대내의 비핵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비핵지대화 제안별로 그 고유성격에 근거하여 특정 안전보장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핵지대화 조약의 범위와 내용에 합의하기 전에 핵국들의 안전보장 제공약속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⁵⁶⁾ 소련은 비핵지대는 진정으로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하며 이러한 상태를 위반할 수 있는 허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⁵⁷⁾ 사

56) Ibid., p. 386. 한편, 「중남미비핵지대화조약」의 제Ⅱ의정서에 의거한 미국과 영국의 핵불사용 약속은 조건부로서 핵국의 지지나 지원 아래 해당 비핵지대의 국가가 군사공격을 감행할 경우 핵불사용 약속을 재고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Jozef Goldblat, "Nuclear weapon-free zones: lessons from the existing agreements," in Darryl Howlett and John Simpson, eds., *East Asia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Southampton: Programme for Promoting Nuclear Non-Proliferation, 1993), p. 58.

57) Frank Barnaby et al.,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related to disarmament," p. 386. 소련은 중남미 지역이 진정한 비핵지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남미비핵지대화조약」의 제Ⅱ의정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다가 5개 핵국중 가장 늦게 1978년 5월 18일 서명하였다.

용할 무기의 종류와 행동양식에 제약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미국⁵⁸⁾과 달리, 소련이 전통적으로 핵무기의 (선제) 사용을 선호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련의 이러한 조건은 실망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소련은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를 위한 회의 개최도 제안한 바 있으며,⁵⁹⁾ NPT 협상 시에는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비핵국 영토에 대해 핵무기 불사용을 보장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기도 했었다.⁶⁰⁾ 5개 핵국중 중국만이 비핵국에 대한 무조건적 핵불사용 정책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한편 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975년 7월 12~15일 개최된 「제6차 이슬람 외무장관 회의」(The Sixth Islamic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에서는 다음과 같은 타협안이 제시된 바 있다.⁶¹⁾ 핵공격이나 공격위협에 대비하여 핵국과 체결한 협정에 의거하여 안전보장을 받지 않는 비핵국들에 대해 핵국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58) *Special message of the US President to Congress*, 28 March 1961.

59) *UN document A/6834*.

60) Frank Barnaby et al.,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related to disarmament," p. 386. 소련의 제안은 「코시킨 포뮬라」(Kosygin formula)라고 불리운다.

61) *Ibid.*, pp. 386~387.

나. 1980年 第2次 評價會議

제2차 평가회의는 세차레 준비회의를 거쳐 1980년 8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일본과 스위스 등 원자력선진국들을 비롯하여 21개국이 추가로 NPT에 가입함으로써 평가회의 개최 당시 NPT 회원국 총수는 114개국에 달했으며 이중 75개국이 평가회의에 참석하였다. NPT에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은 이집트가 의사결정권 없이 회의에 참가했고 NPT에 가입하지 않은 11개국이 회의를 참관하였다. 제2차 평가회의에서는 제1차 평가회의와 같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군축 및 비핵국의 안전보장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으나 핵국을 비롯한 원자력선진국들과 비핵국들간의 심각한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겪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에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제Ⅵ조의 핵군축 문제에 대한 77그룹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최종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했다. NPT의 각 조항별로 평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⁶²⁾

62) Jozef Goldblat and Macha Levinson, "The second NPT review conference," pp. 297~371. 골드블랏(Goldblat)과 레빈슨(Levinson)은 최종 선언문 채택에 실패한 구체적인 이유로 다음과 같은 7가지를 제시하면서 결과적으로 평가회의가 부적절한 시점에 개최된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한다: ① 전략무기제한협상의 불투명한 장래, ②선거를 앞둔 미행정부의 주요 문제에 대한 결단능력 결여, ③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④중동지역의 갈등, ⑤폴란드의 소요, ⑥유럽 전략미사일과 관련한 갈등, ⑦지속적인 군비증강. Ibid., p. 333.

(1) 제 I, II조

제 I조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핵국의 영토나 공해상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조약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⁶³⁾ 또한 많은 국가들이 특정형태의 원자력 협력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비핵국의 핵무장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77그룹 국가들은 이러한 「間接擴散」(oblique proliferation)이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핵물질 수출국들은 이들 두나라와의 모든 원자력 계약과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⁶⁴⁾ 제2차 평가회의에서도 NPT가 비핵국에 대한 핵개발 지원 금지를 핵국의 의무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진 원자력기술을 보유하고 사실상 핵무장이 가능한 비핵국들의 핵개발 원조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제2차 평가회의에서는 제 I조의 「원조, 장려, 유도」 금지 규정은 핵국과 비핵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견해가 설득력 있게 수용되었다.⁶⁵⁾

제 I조가 잘 준수되었다는 것이 평가회의의 전반적인 의

63) *Informal Working Paper Reviewing Articles I and II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prepared during the second NPT review conference, August-September 1980, review of Article I, paragraph 4.

64) *NPT Review Conference document NPT/CONF.II/C.I/2*.

65) Jozef Goldblat and Macha Levinson, "The second NPT review conference," p. 300.

건이었다. 그러나 제Ⅲ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정치·경제적 이유로 인해 원자력선진국들이 비핵국의 핵개발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거나 잠재핵국으로 분류되는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원자력선진국들의 직·간접적 원조를 받았다는 사실은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이 원자력선진국들의 정치적·상업적 이해에 의해 좌절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⁶⁶⁾

제Ⅱ조의 경우에도, 평가회의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핵국의 핵무기 제조와 관련하여, NPT는 핵무기의 「설계」(design)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비핵 부품」(nonnuclear components)의 개발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⁶⁷⁾ 핵무기 설계는 원시적인 핵무기의 설계를 제외하고는 고도의 비밀사항이므로 확산 가능성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비핵 부품의 경우 현재 런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규제되고 있으나 평화

66) 6개 핵잠재국들이 모두 NPT 체제하에서 핵개발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의 핵개발 기원은 1950년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shok Kapur, "World and regional power relations without the NPT," in Joseph Pilat and Robert Pendle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1990), p. 120.

67) Jozef Goldblat and Macha Levinson, "The second NPT review conference," p. 304.

적 목적에도 사용가능한 「이중사용품목」(dual use item)인 경우 비핵국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제Ⅲ조

핵물질 위주의 기존 안전조치체제에 대해 평가회의 참석자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핵물질의 량이 증가하고 원자력시설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안전조치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IAEA의 안전조치 임무가 증대함을 감안하여, 평가회의는 조약당사국들이 안전조치 적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원자력시설을 설계·건설할 것을 촉구하였다.

평가회의에서는 또한 안전조치가 受檢國의 경제·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상호신뢰 증진에 기여했으며 IAEA는 안전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수검국의 주권을 존중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벨기에는 안전조치가 재정적 및 산업기밀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⁶⁸⁾

제1차 평가회의에서와 같이 제Ⅲ조 2항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 즉 NPT 가입국들이 전면안전조치를 받아들여야 핵물질과 장비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반면, NPT 비가입국들은 수입한 시설과 물질에 대해서만 안전조치를 수용

68) Ibid., p. 306.

하는 NPT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평가회의에서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비핵국들도 모든 원자력활동에 대해 IAEA 안전조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공급국들이 의무적으로 이를 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의견이 갈라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⁶⁹⁾

첫째, 호주, 오스트리아, 미국,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는 원자력수출이 수입국의 전면안전조치 수용을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은 모든 원자력공급국들이 NPT에 가입하지 않은 비핵국들에 대해 원자력공급을 조건으로 NPT에 가입한 비핵국과 동일한 안전조치를 수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원자력활동에 대해 IAEA 안전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스웨덴을 비롯한 나머지 7개국은 NPT 비가입국에 대한 원자력공급 약속의 조건으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평화적 핵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 및 특수분열성 물질에 대해 IAEA 안전조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NPT 비가입국들이 그들의 모든 원자력활동에 대해 안전조치를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양식⁷⁰⁾이 IAEA에 의해 이미 오래전에 마련되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69) Ibid., pp. 307~309.

70) IAEA document GOV/1744 and Add. 1.

전면안전조치의 적용대상을 현재의 핵물질에 국한하느냐 앞으로 생산될 핵물질까지를 포함하느냐도 논란이 되었다. 예를 들어, 벨기에는 NPT 비가입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에 대해 안전조치를 수용하면 만족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안전조치를 소위 「기정사실화된 전면안전조치」(*de facto full scope safeguards*)라고 하여 IAEA의 전면안전조치와는 구분하고 있는데,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前者의 경우 비핵국이 향후에 자체 개발한 핵연료주기를 이용하여 핵개발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NPT 비가입국에 대한 안전조치를 논할 때, NPT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 또는 현재 및 장래의 원자력활동에 대한 안전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영국, 서독, 벨기에, 이태리, 스위스, 일본 등 6개국은 NPT 비가입국의 전면안전조치 수용을 환영하지만 이를 수출의 전제조건으로 강요하기를 거부하였다.

셋째, 77그룹은 NPT 가입국이 핵물질과 기술 및 정보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우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NPT 비가입국에 대한 원자력공급의 전제조건으로 전면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사실상 77그룹은 NPT 가입국과 비가입국에 적용되는 안전조치(즉 전면안전조치와 부분안전조치)의 차별성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필리핀 대표는 안전조치와 관련된 NPT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차별이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에게 특별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NPT가 비핵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핵물질과 장비를 공급받는 데 있어서 비가입국이 가입국과 동등히 대우받거나 어떤 경우에는 더 유리하기 때문에 NPT 가입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NPT 비가입국이 혜택을 누릴 수 없고 오히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비가입국의 NPT 가입을 유도하고 기존 가입국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즉 NPT가 비난받는 주요 원인이었던 핵국과 비핵국간의 차별성은 해소시켜 나가되 NPT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차별성을 오히려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NPT 비가입국에 대한 원자력수출을 자제하는 대신 가입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원자력선진국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비핵국들도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활동을 불법적으로 핵무기 제조에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원자력수출국들에게 확고히 심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핵국의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문제도 검토되었다. 제1차 평가회의 이후 미국과 영국은 NPT 체결시 약속한 대로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평화적 원자력시설에 대해 IAEA 안전조치를 수용하였다. 프랑스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였다. 평가회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면서 소련도 이에 동참할 것을 희망하였다. 한편

호주는 핵국에 수출하는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이 군사적 목적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IAEA 안전조치를 수출의 전제조건화하기로 결정하였다.⁷¹⁾

평가회의에서는 또한 제1차 평가회의의 권고에 따라 「핵물질 방호협약」(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이 1980년 3월에 체결되었음을 환영하였다. 「핵물질방호협약」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⁷²⁾

- 협약의 규정은 핵물질 수출국의 해당 원자력시설을 출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입국의 해당 원자력시설에 도착할 때까지의 「국제핵물질수송」(international nuclear transport)에 적용됨.
- 수송되는 핵물질은 합의된 수준의 보호를 받음. 예를 들어 2kg 이상의 플루토늄이나 5kg 이상의 농축우라늄(농축도 20% 이상의 U235)는 호위요원의 지속적인 감시와 유사시에 대비한 병력과 의 긴밀한 교신하에서 수송됨.
- 협약가맹국은 수입·수출할 핵물질이 협약에서 규정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지 않는 한 수입·수출을 하지 않음.
- 협약가맹국은 행방불명된 핵물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

71) Jozef Goldblat and Macha Levinson, "The second NPT review conference," p. 311.

72) Ibid., pp. 311~312.

여 핵물질의 회수를 촉진함.

한편, 평가회의에서는 「핵물질방호협약」의 前文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준의 물리적 방호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핵물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3) 제Ⅳ조

평가회의에서 비핵국들은 평화적 원자력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촉구하였다. 비핵국들은 기술적으로 건전한(technically sound) 요구이지만 IAEA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한 핵기술 선진국들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1980년 6월 1일 당시 전세계적으로 가동중이던 244基의 원자력발전소중 개발도상국의 발전소는 1基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핵국들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선진 원자력기술국들의 강력한 지원을 촉구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회의에서는 NPT에 가입한 개발도상국의 평화적 원자력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⁷³⁾

73) *Informal Working Paper Reviewing Articles III, IV and V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prepared during the second NPT review conference, August-September 1980, review of Article IV, paragraph 18.

평가회의는 제1차 평가회의 이후 원자력수출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1977년 당시 15개국으로 구성된 런던클럽은 쟁거위원회의 규제품목을 확대하여 모든 비핵국에게 수출할 경우 IAEA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런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1978년에 미국은 「핵비확산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을 제정하여 독자적인 원자력수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였다.⁷⁴⁾ 이와 함께 미국의 주도로 「국제핵연료주기평가」(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Evaluation: INFCE) 회의가 1978년에 개최되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핵무기 확산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1980년 2월에 종료된 INFCE 회의는 복잡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회의의 주요 결론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INFCE 회의는 평화적 원자력이용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 회의였다.

74) 특히 플루토늄 생산기술을 규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핵비확산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①농축·재처리 시설과 다량의 플루토늄 및 농축우라늄 수출금지, ②미국이 수출한 핵물질과 제공한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핵물질의 제3국 이전시 미국의 사전동의 필요, ③미국이 제공한 핵물질과 미국의 제공을 통해 생산된 핵물질의 재처리, 20% 이상 농축 및 기타 변형시 미국의 사전동의 필요, ④미국이 제공한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보장, ⑤ 미국의 원자력공급을 받는 조건으로 IAEA 전면 안전조치 수용, ⑥ 同 법안은 소급력이 있으므로 기존 원자력협력 조약을 다시 협상할 것. Jozef Goldblat and Macha Levinson, "The second NPT review conference," pp. 316~317.

비핵국들은 원자력수출규제가 핵확산 방지 목적보다는 원자력공급국들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되는 조치로서 NPT 제Ⅳ조에 규정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많은 비핵국들이 제Ⅲ조에 따라 안전조치를 수용했으므로 평화적 원자력이용에 대한 더 이상의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핵무기 확산 방지라는 명목하에 원자력공급 계약을 위반하거나 원자력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평가회의 참가국들이 원자력공급의 중단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함으로써 비핵국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INFCE 회의의 후속조치로서 1980년 6월 IAEA 이사회는 「공급보장회의」(Committee on Assurances of Supply: CAS)를 설립하였다. 공급보장회의의 임무는 핵비확산을 고려하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예측가능성이 향상된 바탕위에서 핵물질, 장비 및 기술의 공급과 핵연료주기에 관련된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⁷⁵⁾ 그러나 비핵국들은 원자력공급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원자력공급국들은 핵비확산에 대한 고려를 중시하는 등 양측의 입장차이가 분명히 표출되었다.⁷⁶⁾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한을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 비핵

75) IAEA document GOV/1997, 20 June 1980.

76) Jozef Goldblat and Macha Levinson, "The second NPT review conference," p. 318.

국들이 NPT 규정상 평화적 원자력이용은 제 I, II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따르면 NPT 제IV조에 의거한 평화적 원자력이용을 위한 협력은 무제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확산 방지라는 NPT의 제1차적 목적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비통제 측면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측면이 상충될 때는 NPT가 군비통제조약이므로 당연히 군비통제 측면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비핵국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응논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단순히 관련 기술과 정보가 핵무기 제조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IAEA의 전면안전조치를 수용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의지를 입증해 온 많은 비핵국들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NPT가 군비통제조약이기 때문에 핵무기 확산 방지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면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익 때문에 핵잠재국들에게 핵물질과 기술을 수출함으로써 핵무기 확산 위험을 증대시킨 원자력선진국들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 셋째, NPT가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군비통제조약이므로 핵의 수평적 확산금지와 수직적 확산금지가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평가회의에서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도 논의되었다. 핵무기 확산 방지라는 측면에서 재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재처리기술의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노출됨

으로써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대신 IAEA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플루토늄저장」(International Plutonium Storage: IPS) 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물론 국제 플루토늄저장센터가 핵무기 확산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同 센터의 설치 및 운용에는 많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장된 플루토늄을 방출하는 조건은 매우 엄격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연료공급과 관련하여, 「우라늄비상안전망」(Uranium Emergency Safety Network)과 「국제핵연료은행」(International Nuclear Fuel Bank)과 같은 에너지 지원 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⁷⁷⁾ 예를 들어 능력있는 공급국들이 NPT 위반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핵연료를 조달하지 못하는 조약가맹국들을 위해 1년분의 경수로 및 중수로 원료를 비축해 두자는 것이다. 평가회의는 핵연료 시설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IAEA가 1977년 지역차원의 핵연료주기센터 설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⁷⁸⁾ 평가회의에서의 토의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77) *Informal Working Paper Reviewing Articles III, IV and V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prepared during the second NPT review conference, August-September 1980, review of Article IV, paragraph 22.

78)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Regional Nuclear Fuel Cycle Centres, Vol. 1-3* (Vienn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977).

(4) 제 V 조

제1차 평가회의에서는 제 V 조에 명시된 「특별한 국제협정」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검토와 법률적 문제에 대한 조사를 IAEA에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IAEA는 특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1977년 IAEA 이사회에 연구 결과⁷⁹⁾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同 보고서 제출 이후 평화적 핵폭발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유용성에 대한 회의가 급증하였다. 군사적 사용가능성을 배제한 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핵폭발장치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화적 핵폭발의 장려는 핵실험 전면금지조약의 체결에 중요한 장애를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AEA 사무총장은 제 V 조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overtaken by events), 핵폭발의 평화적 이용은 혜택보다는 위험을 더 많이 내포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⁸⁰⁾ 이전과 달리 제2차 평가회의에서는 제 V 조에 언급된 국제적 절차를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없었으며 회의참가국들의 묵시적 동의 아래 제 V 조의 이행은 중지되었다.⁸¹⁾

79) IAEA document GOV/1854.

80) NPT Review Conference document NPT/CONF.II/SR.1.

81) Jozef Goldblat and Macha Levinson, “The second NPT review conference,” p. 324.

(5) 제Ⅵ조

평가회의에서는 군축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특히 77그룹 국가들은 제Ⅵ조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핵무기 경쟁을 조속히 중단하고 핵군축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이 실시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도 제Ⅵ조의 불이행을 비난하면서 수적·질적 군비경쟁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자 하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반하여, 서방측은 「SALT II」의 체결을 예로 들면서 제Ⅵ조의 이행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도 서방측과 유사한 견해를 밝혔다.

사실 NPT 체결 이후 진행된 군비통제와 군비경쟁을 비교해 볼 때, 後者가 훨씬 강도높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의미있는 군비통제조약으로는 「SALT I, II」 및 지하핵실험의 규모를 150kt으로 제한하는 「지하핵실험제한조약」(The Threshold Test Ban Treaty: TTBT)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핵무기의 수적·질적 증강은 급속도로 추진되었다.⁸²⁾ 예들 들어 전략핵 분야에서, Minuteman III, Trident, MX, SS-18, SS-19, 다탄두 개발 등 핵무기의 質的 향상이 이루어졌다. 수적 측면에서 美·蘇는 1975년부터 1980년 사이에 4,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추가로 보유하고 핵

82) Ibid., pp. 325~326.

실험의 경우에도 양국이 1979년에 실시한 핵실험 회수는 1975년에 비해 40%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미국이 제2차 평가회의 개최 며칠전에 발표한 새로운 핵전략(countervailing strategy)도 제Ⅵ조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다.⁸³⁾ 同 전략이 「대통령지침서 59」(Presidential Directive 59)에 의거하여 개발된 동기는 以前의 대량보복위협이 전쟁 억제전략으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전략은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목표에 대한 전략핵무기의 사용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채택될 수 있었던 데에는 미사일 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는 기술적 요인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전략은 핵공격 목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핵무기의 수적·질적 증강과 정찰 및 통신능력의 강화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군비증강을 유발하기 때문에 제Ⅵ조에 역행하는 조치로 평가되었다.

평가회의에서 77그룹 국가들은 제Ⅵ조의 이행을 주장하면서 핵국들이 군축회의(CD)에 특별팀을 구성하여 유엔 특별군축위원회 최종문서⁸⁴⁾ 제50항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상을 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①핵무기의 질적 개선 중지, ②모든 형태의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생산 중지, ③핵무기 제조용 핵물질 생산 중지, ④핵무기와 운반수단의 단계적 감축.

83) Ibid., pp. 326~327.

84) UN document A/RES/S-10/2.

77그룹 국가들은 미·소 양국에 대해 「SALT II」를 조속히 비준할 것과 「SALT III」 협상을 개시할 것도 촉구하였다. 또한 핵국들에 대해 핵실험 전면금지 협상을 위해 CD내에 전담팀(ad hoc working group)을 구성할 것과 핵실험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핵실험 전면금지 는 NPT의 차별성을 무마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잠정중단과 CD내의 전담팀 설치가 실현되지 못했다. 반면에 핵무기 제조용 핵물질 생산을 금지하는 별도의 군비통제 조약을 체결하자는 데는 많은 국가들이 지지를 표명하였다.

(6) 제Ⅶ조와 비핵국에 대한 안전보장

평가회의 참가국들은 비핵지대 창설이 해당지역에서의 핵무기 확산을 막고 域內 국가들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핵국들이 비핵지대내의 국가들에 대해 핵무기 사용이나 사용위협 금지를 약속할 것을 희망하였다. 중남미비핵지대화 와 관련하여, 평가회의 참가국들은 중남미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5개 핵국이 「중남미비핵지대화조약」의 제Ⅱ의정서에 의거하여 同 지역의 비핵지대 지위를 존중하기로 약속한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⁸⁵⁾

85) *Informal Working Paper Reviewing Article VII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the Question of the Security of Non-nuclear-weapon States*, prepared during the second NPT review conference, August-September 1980, paragraph 1 and 2.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평가회의 참가국들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255호에 의거한 적극적 안전보장이 유효함을 재확인하고, 1978년 유엔특별군축위원회에서 美·英·蘇 3國이 선언한 소극적 안전보장의 내용에 주목하면서 비핵국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 및 사용위협 금지를 보장하는 국제조약의 체결이 핵무기 확산 금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⁸⁶⁾ 반면에 한국은 소극적 안전보장의 임의적, 무차별적 적용은 오히려 안전보장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이는 동북아에서 핵무기 사용위협이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⁸⁷⁾

평가회의에서는 소극적 안전보장의 범위와 성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CD에서도 소극적 안전보장의 적용대상과 형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⁸⁸⁾ 적용가능 대상으로는 ①모든 비핵국, ②핵국과 안전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비핵국, ③NPT에 가입한 비핵국, ④핵무기 보유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 영토에 핵무기가 없는 비핵국 등이 제의되었다. 반면에 적용형태로는 ①소련과 파키스탄이 국제협약을, ②미국과 영국이 유엔총회 결의를, ③파키스탄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각각 제의하였다.

86) Ibid., paragraph 5.

87) Józef Goldblat and Macha Levinson, "The second NPT review conference," p. 332.

88) Ibid.

다. 1985年 第3次 評價會議

제3차 평가회의는 세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1985년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130개 조약당사국중 86개국과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콜롬비아와 예멘아랍공화국 등이 참가했다. 1985년도의 국제환경이 1980년도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2차 평가회의에서와 같이 제3차 평가회의에서도 최종선언문이 채택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깨고 최종선언문이 합의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⁸⁹⁾

첫째, 美·蘇는 양국간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NPT 평가회의에서 분쟁을 삼가해 왔다. 이는 美·蘇가 다른 분야에서는 경쟁적 관계를 유지했지만 핵무기 확산 금지에는 공동의 이익을 가짐으로써 핵비확산 체제의 유지를 위해 협력해 왔다는 점을 반영한다.⁹⁰⁾

둘째, 미국의 핵실험금지협상 거부태도가 비판된 것을 제외하고는 핵국에 대한 비핵국의 비난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자제되었다. 특히 소련은 평가회의 개최 한달전에 핵실험 잠정

89) Jozef Goldblat, "The third review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SIPRI Yearbook 1986* (Stockholm: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86), pp. 469~470.

90) Joseph Nye,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mmer 1987), pp. 392~397.

중단을 선언했으며 회의개최에 앞서 자국의 일부 원자로에 대해 IAEA의 안전조치를 받도록 하였다.

셋째, 평가회의가 미·소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시작됨으로써 회의 분위기가 좋았다.

넷째, 원자력산업의 쇠퇴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원부족에 대한 비핵국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었다. 비핵국들의 입장변화에는 1987년에 개최될 예정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증진 유엔회의」(UN Conference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UNCPICPUNE)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다섯째, NPT 가입을 거부하는 비핵국들이 NPT 반대운동을 많이 자제했다.

평가회의에서 핵국들은 IAEA 전면안전조치 및 수출통제의 강화 필요성과 핵비확산이 국제 원자력교역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기술 및 정보교환 문제는 원자력공급국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한 반면, 핵군축에 대해서는 전략적·정치적 문제이므로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비핵국들은 원자력수출 통제는 NPT의 범위를 벗어난 원자력공급국들의 일방적인 월권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원자력공급 보장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기술과 정보는 모든

국가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군축의 부진을 비판하면서 CTBT를 우선적으로 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NPT의 각 조항별로 평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최종선언문⁹¹⁾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제 I, II조

최종선언문은 제 I, II조가 준수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지난 5년간 조약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완수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를 염두에 두고 비핵국이 핵폭발장치를 실험하는 것은 핵무기 확산 방지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스라엘의 핵능력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양국에 대한 모든 원자력시설, 물질, 장비의 이전을 완전히 금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제 III조

최종선언문은 IAEA의 안전조치가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조약가맹국의 조약 준수를 확인함으로써 조약가맹국간의 신뢰증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종선언문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비핵국들이 핵무기 개발 포기를 약속할 것과 모든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대해 IAEA 안전

91) *The Third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1985, Final Declaration, Review document NPT/CONF. III/64/ I, Annex I, 1985.*

조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최종선언문은 4개 핵국이 평화적 원자력활동의 전부 혹은 일부를 IAEA 감시하에 둔 것을 환영하고 중국에 대해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모든 국가의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대해 IAEA 안전조치를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종선언문은 또한 IAEA가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동안 多량의 핵물질이 핵무기 생산을 위해 전용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만족하면서 IAEA 안전조치는 조약당사국의 경제, 과학, 기술적 발전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을 저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최종선언문은 IAEA 헌장 제X II(A)5조에 의거하여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효과적인 「국제플루토늄저장시스템」(International Plutonium Storage System)을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국제핵연료주기시설」(International Fuel Cycle Facilities)의 설립과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을 위한 국제협력의 의의를 인정하였다. 아울러 모든 국가가 1980년 3월에 체결된 「핵물질방호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IAEA의 안전조치 적용과 관련하여, 항상 논란이 되어 온 문제는 NPT에 가입한 비핵국들이 전면안전조치를 수용해야 하는 반면, NPT에 가입하지 않은 비핵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안전조치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일부 원자력공급국들은

NPT 비가입국에 대한 원자력수출의 조건으로 현재와 미래의 원자력활동에 대해 IAEA의 안전조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스위스, 서독, 벨기에 등은 이러한 요구가 NPT 비가입국들로 하여금 독자적인 핵개발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⁹²⁾

(3) 제Ⅳ조

최종선언문은 NPT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증진되었다고 선언하면서 NPT는 제Ⅰ, Ⅱ조에 따라 행해지는 비핵국의 평화적 원자력활동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스라엘의 핵개발이 핵비확산 체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훼손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양국의 핵개발 계획에 대한 협력을 중단할 것을 각국에 촉구하였다.

최종선언문은 핵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전제하에 보다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 원자력공급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선언문은 IAEA의 「공급보장회의」(CAS)가 몇가지 원칙에 합의했다는 점을 환영하면서 CAS가 핵물질 국제거래시의 기술적·행정적 문제점들을 줄이기 위해 IAEA 이사회에 제안한 방안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또한 원

92) Jozef Goldblat, "The third review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pp. 474~475.

자력분야의 국제조약은 조약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이는 기존 원자력공급 계약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핵비확산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이 원자력선진국과 제3세계 국가들의 반발을 야기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⁹³⁾ 최종선언문은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각국의 결정과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IAEA가 개발도상국의 원자력개발을 위한 기술지원과 더불어 재원조달에도 협조할 것을 제의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NPT에 가입한 비핵국들을 우대할 것을 촉구하였다.

최종선언문은 1981년 6월 7일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원자로를 폭격한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⁹⁴⁾ 안전조치를 받고 있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이나 공격위협은 유엔헌장에 의거하여 유엔안보리가 즉각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조약가맹국들에게 이러한 군사공격 위협을 받는 국가의 도움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를 지원할 것과 공격측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결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최종선언문은 이러한 군사공격이 방사능 확산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93) Ibid., p. 471.

94) 유엔안보리는 1981년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 487호를 통해 이스라엘의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고 이러한 공격이 IAEA의 안전조치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점을 염려하였다. 한편, 이란은 이라크 공군이 자국의 원자력시설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최종선언문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이라크가 이를 부인하는 등 兩國間 논쟁으로 인해 최종선언문 채택이 평가회의 마지막날 아침까지 늦어지게 되었다.

원자력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에 대처하는 방안은 공격이 이루어진 시점이平時인가 혹은 戰時인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⁹⁵⁾ IAEA 안전조치의 수용 여부를 불문하고 만약 平時에 어떤 국가의 원자력시설이 다른 국가의 공격을 받는다면 이는 침략에 해당하므로 유엔헌장에 따라 유엔 차원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이다. 戰時에는 「무력충돌시 적용되는 인도법」(Humanitarian Law of Armed Conflict) 규정에 따라 무력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 특히 제네바협약의 제1부속의정서로 1977년에 채택된 「국제전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제56조 1항은 공격을 받을 경우 위험한 물질이 유출되어 심각한 민간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군사 목표물이라 하더라도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⁹⁶⁾

95) Jozef Goldblat, "The third review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p. 472.

96) Jozef Goldblat, *Arms Control: A Guide to Negotiations and Agreements* (London: SAGE Publications, 1994), p. 433. 동 의정서에 1994년 1월 현재 남북한을 포함하여 112개국이 서명하였다. 5개 核國중에는 중국과 러시아만이 서명하였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최종선언문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CD에서 논의되고 있다.

(4) 제 V조

최종선언문은 비핵국들이 평화적 핵폭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아직 이러한 기술이 입증된 바 없고 이와 관련한 비핵국들의 요구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제 V조의 실질적 이행이 계속 중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제 VI조

최종선언문은 지난 5년간의 군축과정을 검토한 결과 NPT 前文 8~12항과 제 VI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고 결론짓고, 제 VI조의 이행이 NPT의 유지와 강화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핵국들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美·蘇 양국이 핵 및 우주무기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최종선언문은 모든 핵무기의 質的·數的 동결 요구가 1982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유엔총회 결의안을 통해 표명된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과 소련이 우선적으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실험 금지와 관련하여, 최종선언문은 1981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유엔총회 결의안을 통해 표명된 바 있는 CTBT 체결을 전제로 한 핵실험 금지요구에 주목하고 1977년에 개시된

美·英·蘇 3국간 핵실험 전면금지협상이 1980년 이후 중단된 것을 우려하면서 3者 협상을 재개할 것과 모든 핵국이 CD의 최우선 문제로서 CTBT를 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효과적으로 검증가능한 핵실험 전면금지를 지지하지만 제Ⅵ조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무기의 대폭적인 감축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한편,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비동맹중립국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가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였다:⁹⁷⁾ ①NPT 기탁국인 미국, 영국, 소련이 CTBT 문안작성 및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②同 3국이 잠정적으로 즉각 모든 핵실험을 중단할 것, ③모든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실험, 생산, 배치를 동결할 것.

제Ⅵ조의 이행에 있어 핵실험 전면금지조약이 갖는 의미는 핵무기의 질적 개선을 차단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모든 핵실험이 금지되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대효과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⁹⁸⁾ ①새로운 디자인의 핵무기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②기존 핵무기 디자인의 변경도 상당히 어려워짐, ③안전성 테스트를 위한 핵실험이 불가능해지므로 무작정 핵무기를 量産하지 못함, ④핵국들이 핵무기의 질적 감축을 실행하고 있음이 입증됨, ⑤심리적 측면에서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이용이 不法이라는 인식이 강화됨, ⑥환경오염을 줄이고 인류의

97) Ibid., p. 474.

98) Jozef Goldblat, "Issues facing the 1995 NPT Extension Conference," *Security Dialogue*, vol. 23, no. 4 (December 1992), p. 26.

자원을 건설적인 목적에 이용함.

제3차 평가회의에서 군사용 핵물질의 생산 중단 문제는 별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 역시 제Ⅵ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안임에 틀림없다. 핵물질 생산중단은 수직적 핵확산 방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핵물질의 전체량을 통제함으로써 수평적 핵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핵국들이 핵개발 전용시설을 폐쇄하더라도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시설에서 핵무기용 물질의 생산이 가능하므로 5개 핵국의 모든 평화적 원자력시설과 핵물질(군사용 핵물질 생산금지 조약이 체결되면 모든 원자력시설과 핵물질)에 대해 IAEA의 안전조치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⁹⁹⁾

(6) 제Ⅶ조와 비핵국에 대한 안전보장

최종선언문은 특정지역의 핵무기不在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국가들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인정한 제Ⅶ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유엔 제1차 군축특별회의 최종문서」(Final Document of the First Special Session of the UN Devoted to Disarmament)에서 밝힌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에 準하여 비핵지대화 조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핵군축이 비핵지대 창설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비핵지

99) Ibid., p. 479.

대를 창설하는 데 있어서 각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최종선언문은 「중남미비핵지대화조약」의 이행에 만족을 표시하고 「남태평양비핵지대화조약」의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제35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중동지역의 비핵지대 설치 제안이 이행되기를 촉구하였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무기 개발이 유엔의 「아프리카 비핵화 선언」(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Africa)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최종선언문은 비핵지대화 조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핵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핵국들이 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하고 비핵지대내의 국가들에 대해 핵무기 사용과 사용위협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255호에 명시된 적극적 안전보장에 대한 NPT 기탁국들의 결의에 주목하고 유엔총회 제10차 특별회의의 최종문서 제59항이 비핵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금지하는 조약의 체결을 촉구했음을 지적하면서 CD에서 소극적 안전보장을 국제조약화 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 1990年 第4次 評價會議

제4차 평가회의는 세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1990년 8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84개 조약가맹국과 중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14개 참관국이 참가한 가운데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제4차 평가회의에는 1985년 12월 NPT에 가입한 북한이 처음으로 참가함으로써 주요 현안에 대해 남북간에 대결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평가회의에서 77그룹을 중심으로 한 비핵국들은 CTBT는 핵군축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NPT 연장에 앞서 CTBT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소극적 안전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평화적 원자력이용 분야에서 NPT에 가입한 비핵국들이 우대받아야 하며 핵비확산을 전제로 핵물질의 장기적인 공급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면에 핵국들은 NPT 연장과 CTBT의 직접적인 연계에 반대하면서 모든 NPT 가입국들이 IAEA 안전조치를 철저히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평가회의는 1995년의 NPT 효력연장과 CTBT 체결을 연계시키는 문제에 대한 관련국들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최종선언문 채택에 실패하였다.

제4차 평가회의는 3개 「주요 위원회」(Main Committee)를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하였다. 제1위원회는 3개의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제1그룹에서는 제 I, II조를, 제2그룹에서는 비핵국의 안전보장 문제를, 제3그룹에서는 제 VI조에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였다. 제2위원회에서는 제 III, VII조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제3위원회는 제 IV, V조와 관련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다루었다. NPT의 각 조항별로 평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¹⁰⁰⁾

100) David Fischer and Harald Müller, "The fourth review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pp. 555~584.

(1) 제 I, II조

제3차 평가회의에서와 같이 핵국 특히 미국과 영국이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제 I조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핵개발 현황에 대한 망명과학자 바누누(Mordechai Vanunu)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의 참가국들은 이스라엘 문제를 무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서도 국내 정치적 변화, 1985년 이후 원자력공급이 중단된 점, NPT 가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평가회의는 또한 이라크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모든 NPT 조약당사국들의 완전한 조약준수를 촉구하였다.

서독의 겐셔(Hans-Dietrich Genscher) 외무장관은 동서독이 핵 및 화생무기를 제조·보유·관리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통일독일 역시 이러한 약속과 NPT를 준수할 것이며 NPT의 효력연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兩獨 정부의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¹⁰¹⁾ 합의사항은 또한 비핵지대의 창설과 비핵국의 안전보장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개방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냉전시대에 자국의 안보를 핵억제력에 의존했던 서독이 이상의 두가지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과 대조된다. 한편 겐셔 장관은 독일이 원자력수출의 조건으로 수입국에 대해 IAEA의 전면안전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향후 5년에 걸쳐 기

101) NPT/CONF.IV/SR.4.

존의 계약도 갱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제Ⅲ조

제2위원회에서는 안전조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에 합의하였다.¹⁰²⁾

첫째, 비용이 저렴한 최신기술의 이용과 「임의검사」(random inspection) 실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효과적인 안전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자원이 조달되어야 한다.

셋째, 사찰요원의 파견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

넷째, 모든 국가가 「핵물질방호협약」에 가입해야 하고 특히 핵국에서 핵물질 방호를 엄격히 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트리튬」(tritium)과 같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가능한 비핵물질도 수출이 통제되어야 한다는 캐나다의 제안을 지지한다.

여섯째, 민간용 핵주기와 군사용 핵주기의 구분을 강화하고 핵국에 대한 안전조치 범위를 확대하며 핵국은 군사용에서 민간용으로 전환된 시설이나 물질에 대해 안전조치를 수용해야 한다.

일곱째, 원자력수출시 안전조치 적용을 의무화한 쟁거위원회 규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로써 쟁거위원회는 NPT 제Ⅲ조

102) David Fischer and Harald Müller, "The fourth review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p. 573.

2항의 공식적 이행수단이라는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여덟째, IAEA가 특별사찰 권한을 행사할 것을 권고한다.

아홉째, IAEA가 안전조치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한다.

핵국들의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과 관련하여 제3차 평가회의는 스웨덴의 제안에 따라 핵국들의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대한 IAEA의 안전조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가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많은 평가회의 참가국들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핵국들의 경우 미국과 영국이 소련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모든 평화적 원자력시설에 대해 IAEA 안전조치를 허용한 반면, 소련은 평가회의에서 IAEA 안전조치의 적용범위를 모든 발전용 원자로와 일부 연구용 원자로로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美·英·蘇 3國은 IAEA가 그들의 모든 원자력시설에 대해 안전조치를 적용할 경우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비핵국에 대한 원자력수출시 전면안전조치 수용을 의무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제4차 평가회의에서 다소 진전이 있었다. 제3차 평가회의에서 호주가 이러한 원칙을 평가회의의 공식입장으로 공표할 것을 주장했으나 당시 서독, 벨기에, 스위스의 반대로 최종선언문에 원자력공급국들이 이러한 원칙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정도의 완화된 표현이 채

택된 바가 있다. 제4차 평가회의에서도 벨기에와 스위스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비핵국들에 대해 전면안전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프랑스가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핵국에 대한 수출시 전면안전조치 수용을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등 이견이 노출되었다.¹⁰³⁾ 여기에 EC 의장국이던 이태리까지 벨기에와 스위스의 입장에 동조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달리 전면안전조치 수용을 의무화하는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제3차 평가회의에서 NPT 비가입국들의 독자적 핵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던 서독이 겐서 외무장관의 발표를 통해 전면안전조치 적용원칙을 표방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정책변화로 평가된다.

한편 제1위원회는 수출통제 제도의 강화와 단일화 문제도 논의하였는데 핵폭발 능력의 확산방지에 대한 결의와 핵잠재국들의 핵개발 계획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금지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즉 처음으로 「폭발 능력」(explosive capabilities)을 강조함으로써 핵폭발에 이용될 수 있는 「민감한 기술」(sensitive technologies)에 대한 통제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¹⁰⁴⁾

한국의 이상옥 주제네바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 체결은 NPT 조약당사국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103) Ibid.

104) Ibid., p. 570.

NPT에 가입한지 거의 5년이 지난 북한이 아직 IAEA의 안전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조약위반 행위이며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의무이행을 촉구하였다.¹⁰⁵⁾ 또한 중국이 1989년 9월 IAEA와 자발적으로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면서 NPT에 가입한 핵국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한국은 IAEA의 기능강화와 관련하여,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분량 이외의 잉여 플루토늄 및 농축우라늄의 국제적 관리를 위한 「지역연료주기센터」(Regional Fuel Cycle Center)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¹⁰⁶⁾

평가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IAEA의 안전조치 수용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의 이철 주제네바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및 주변의 미군 핵무기와 韓·美 군사훈련에 의한 핵위협 때문에 북한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NPT 가입과 동시에 이러한 위협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했었으나 군사훈련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자국의 안보에 대한 「법적 보장」(judicial guarantees)을 받기 전에는 안전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¹⁰⁷⁾ 이와 함께 북한은 한반도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105)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核武器 非擴散條約 第4次 評價會議 參加結果 報告書」(서울: 외무부, 1990년 11월), pp. 12~13.

106) Ibid., p. 28.

107) David Fischer and Harald Müller, "The fourth review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p. 562.

위한 남북한 군비통제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의 안보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IAEA 안전조치 적용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제Ⅳ조

제3위원회에서는 원자력공급 보장을 우선시하는 견해와 핵비확산 문제를 강조하는 견해사이의 절충을 시도했던 「공급 보장회의」(CAS)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유엔회의」(UNCPICPUNE)가 결실을 거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제3위원회는 CAS의 국제원자력시장에 대한 조사는 매우 유익한 정보라고 평가하면서 CAS의 재가동을 요청하였다. 또한 UNCPICPUNE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원자력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평화적 원자력이용의 安全性 문제는 제3차 평가회의에서는 중요시되지 않았으나 체르노빌(Chernobyl) 사태 이후 개최된 제4차 평가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소련 외무차관 페트로프스키(Vladimir Petrovskiy)는 체르노빌 사건의 후유증을 소련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며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¹⁰⁸⁾ 제

108) Ibid., p. 565.

3위원회는 체르노빌 사태에 대처한 IAEA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체르노빌 사건 이후 체결된 두가지 협약(사고발생시 신속한 통보 및 상호협조에 관한 협약들)의 보편적인 이행을 촉구하였다. 이태리는 각국이 IAEA의 「안전기준」(safety standard)을 적용하고 IAEA가 이를 감독할 것을 제의한 반면, 대부분의 서방 원자력선진국들은 IAEA의 권한 확대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3위원회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개별 국가에 있으나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포괄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비핵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제3위원회는 1985년도 평가회의에서와 같이 기술원조를 위한 기금 마련과 NPT 가입국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지역차원의 원자력협력의 중요성을 이전보다 더욱 강조하였다. 美·蘇間 전략무기감축조약의 타결로 다량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이 양산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이미 과거에도 논의된 바 있고 IAEA 헌장 제 XII(A)5조에도 언급되어 있는 「국제플루토늄 저장시스템」(International Plutonium Storage System)의 설치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소련의 페트로프스키(Vladimir Petrovskiy) 외무차관은 우선 美·蘇 양국이 군사용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받으면서

同 조약을 다자간 조약으로 확대할 것을 제의하였다.¹⁰⁹⁾ 한편 77 그룹 국가들은 비핵국에 대해 가해지는 규제를 비판하면서 원자력 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과 NPT 가입국들을 우대할 것을 촉구하였다.

원자력시설에 대한 공격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헝가리,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국제전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에 모든 국가가 가입할 것과 核國에 대해서는 군사전략을 수립할 때 원자력시설 공격에 따른 방사능 유출위험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다.¹¹⁰⁾

한국은 기초연설을 통해 IAEA 안전조치 수용 등 NPT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원자력선진국들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기술 이전 및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하며 핵연료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해 1980년 제35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1987년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바 있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증진 유엔회의」(UNCPICPUNE)의 활성화 필요성도 지적하였다.¹¹¹⁾ 한국은 모범적인 원자력이용국으로서 원자력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면서

109) Ibid., p. 569.

110) Ibid., p. 577.

111)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核武器 非擴散條約 第4次 評價會議 參加結果 報告書」, p. 11.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저해해서는 안되며, NPT 당사국에 대해서만 우대조치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¹²⁾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요구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관련 발언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제 V 조

이미 NPT 당사국들간에 이행이 중지된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된 제 V 조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단지 제3위원회는 평화적 핵폭발의 혜택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으며, IAEA는 제 V 조에 따른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음에 주목하면서 소련이 1985년에 평화적 핵실험을 중단한 이후 평화적 핵폭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核國은 없다고 밝혔다.¹¹³⁾

(5) 제 VI 조

대부분의 평가회의 참가국들은 1985년 이후 핵무기 경쟁이 퇴조하고 재래식 무기의 감축이 이루어지는 등 군축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군축분야에서 전통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온 멕시코는 1985년 이후 체결된 조약들이 군비경쟁을 중지시킨 것은 아니며 우주가 새로운 군비경쟁의 場이 되고 있음을 비난하면서 제 VI 조의 목적

112) Ibid., p. 33.

113) David Fischer and Harald Müller, "The fourth review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p. 577.

은 달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럽재래식무기감축 조약 I」(CFE I)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제Ⅵ조의 이행과 연관된다는 견해에 반대하면서 오로지 CTBT만이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¹¹⁴⁾

유고슬라비아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NPT의 부차적인 목적으로 간주하면서 제Ⅵ조의 이행에 최대의 역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군축분야의 일부 진전을 인정하지만 핵무기의 질적 개선은 중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NPT의 연장 가능성은 핵군축 의무의 이행을 통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동유럽 국가들은 군축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CTBT 체결에 중요성을 부여했지만 핵국들의 군비통제 노력에 대해 77그룹 국가들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소련은 CTBT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으며 CTBT 협상 시작과 동시에 모든 핵실험을 중지할 의사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2000년까지 군사적 목적의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할 계획임과 핵무기용 농축우라늄 생산도 중단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반면에 미국과 영국은 CTBT 조기 체결을 반대하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평가회의에서 제Ⅵ조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역시 CTBT의 조기 체결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평가회

114) Ibid., p. 571.

의 참가국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분류된다.¹¹⁵⁾

첫째, 미국과 영국은 CTBT를 장기적인 목표로 간주하면서 핵실험이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핵억제력에 의존하는 한 핵무기의 안전성, 내구성,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핵 실험의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당시 미국은 핵실험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소련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둘째, 대부분의 나토 국가들은 CTBT 체결 원칙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들 국가들은 美·蘇間 핵실험부분금지조약이 이룬 진전과 CD의 「핵실험에 관한 임시그룹」(Ad hoc group on nuclear testing)이 다시 가동된 것을 환영하였다.

셋째, 동유럽 및 북구 국가들은 군축노력이 다소 진전을 이룬 것을 인정했지만 CTBT를 조속히 체결할 것과 이를 위해 CD의 「핵실험에 관한 임시그룹」에 협상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핵실험에 따른 생태계 파괴문제도 거론하였다. 소련은 1991년에 개최예정인 LTBT 수정회의에서 LTBT를 CTBT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넷째, 대다수의 비동맹 중립국들은 CTBT의 조기체결을 희망했으나 안전보장, 대폭적인 핵군축, 비핵지대화 문제 등도

115) Ibid., pp. 567~568.

CTBT만큼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였다. 즉 CTBT를 중요시하지만 CTBT는 NPT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중의 하나라고 인식한 것이다.

다섯째, 멕시코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CTBT 없이는 핵무기 경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CTBT는 핵군축의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아울러 멕시코는 CTBT 없이는 NPT의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은 기조연설에서 지난 5년간 미·소간의 핵군축 협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CTBT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효과적인 검증방안 수립을 통한 단계적 추진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비핵국의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IAEA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제VI조에 따른 핵군축 의무의 이행여부도 IAEA에 맡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¹¹⁶⁾

이에 앞서 북한은 기조연설을 통해 핵국이 비핵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비핵국의 비핵지대 설치노력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핵무기 불사용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1957년 이래 한반도에 배치된 핵무기와 팀스피리트 훈련이 북한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군축 및 한반도 비핵지대 설치 제안에 대한 한국측의 무반응을 비판하였다.¹¹⁷⁾

116)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核武器 非擴散條約 第4次 評價會議 參加結果 報告書」, p. 12.

117) Ibid., pp. 13~14.

(6) 제Ⅶ조와 비핵국의 안전보장

제2위원회에서는 비핵지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이의가 없었으며 域內 당사국들의 합의에 기초한 비핵지대 설치가 중요한 군축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아울러 비핵지대 설치에는 각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핵국들은 비핵지대 설치를 위한 비핵국들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제2위원회는 중남미비핵지대화가 성공적으로 실현된 것에 주목하면서 유엔총회가 프랑스로 하여금 「중남미비핵지대화조약」의 제Ⅰ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고한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남태평양비핵지대화조약」이 발효되었으나 중국과 소련만이 제Ⅱ, Ⅲ의정서에 서명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미국은 同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이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영국은 제Ⅰ, Ⅲ의정서에 대한 지역당사국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에 프랑스는 同 지역에서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모든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¹¹⁸⁾ 제2위원회는 또한 아프리카의 비핵지화와 관련하여 제3차 평가회의 최종선언문에 표명된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지지하였다.

118) David Fischer and Harald Müller, "The fourth review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p. 574.

제2위원회에서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간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가 핵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IAEA 안전조치의 보편적인 적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조약당사국들이 이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¹¹⁹⁾ 이에 대해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관련당사국간 협의가 필요하고 지역의 특수상황을 감안해야 하므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려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비핵지대화 설치 문제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地域 또는 地帶를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반면, 한반도는 지대가 아니라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비핵지대 범주에 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¹²⁰⁾

소극적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는 평가회의에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NPT 조약 당사국인 비핵국들에게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조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특별회의를 1991년 말 이전에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¹²¹⁾ 이전에도 CD에서 이 문제의 거론을 주도한

119)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核武器 非擴散條約 第4次 評價會議 參加結果 報告書」, p. 29.

120) Ibid., p. 30.

121) 나이지리아가 제안한 소극적 안전보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核國과 군사동맹관계에 있거나 안보협정을 맺었지만 영토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NPT 가입 非核國들 및 핵國과 군사동맹이나 안보협약을 맺지 않은 NPT 가입 비핵국들에 대해 핵국들은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금지할 것을 국제조약을 통해 약속함. Jozef Goldblat, "Issues facing the 1995 NPT Extension Conference," p. 29.

나이지리아는 제4차 평가회의 준비회의에서도 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한 구속력있는 국제조약 체결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스라엘로부터의 잠재적 핵위협을 염두에 둔 이집트는 핵국들이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1968년의 유엔안보리 결의안 255호보다 분명하고 무조건적인 적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할 것을 제안하였다.

평가회의에서는 대다수 국가들이 비핵국에 대한 기존의 안전보장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와 이집트의 제안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안전보장을 NPT 가입의 중요한 댓가로 간주하였으며 안전보장의 대상을 NPT 가입국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¹²²⁾ 소극적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나토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선진국들은 나이지리아 제안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NATO의 핵억지전략을 감안하여 소극적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일본은 나이지리아의 제안에 보다 많은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¹²³⁾ 한편 북한은 비핵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보장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회의를 1991년까지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

122) David Fischer and Harald Müller, "The fourth review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p. 566.

123)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核武器 非擴散條約 第4次 評價會議 參加結果 報告書」, p. 22.

다.¹²⁴⁾

제1위원회는 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한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이 필요하며 조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5 개 핵국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핵잠재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비핵국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였으며 CD가 소극적 안전보장에 관한 협상을 조속히 타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결과적으로 나이지리아의 소극적 안전보장 제안과 이집트의 적극적 안전보장 제안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비핵국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¹²⁵⁾

124) *NPT/CONF.IV/MC.I/WP.1.*

125) David Fischer and Harald Müller, "The fourth review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p. 571.

〈표 3-3: 評價會議 主要 論議事項〉

평가회의 조항	제1차 평가회의 1975.5.5~5.30	제2차 평가회의 1980.8.11~9.7	제3차 평가회의 1985.8.27~9.21	제4차 평가회의 1990.8.20~9.14
제 I, II조	<p>- 제 I, II조가 적절히 준수되었으나 비가입국인 인도의 핵실험으로 NPT의 보다 철저한 이행이 촉구됨.</p> <p>- 美·蘇는 비핵국들의 핵개발 원조, 장려, 유도가 NPT 위반이라는 입장을 표명.</p> <p>- 핵국이 비핵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핵무기 사용 훈련을 시키는 「間接的 核武裝化」가 NPT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됨.</p>	<p>- 제 I, II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음.</p> <p>- 비핵국의 영토와 공해상에 핵무기 배치는 NPT 목적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제시됨.</p> <p>- NPT 비가입국들이 원자력 협력을 통해 핵무장 능력을 제고하는 「間接擴散」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p> <p>- 이와 관련, 이스라엘과 남아공에 대한 원자력협력 중단이 요구됨.</p> <p>- 제 I조의 「원조, 장려, 유도」 금지규정이 핵국과 비핵국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수용됨.</p>	<p>- 제 I, II조가 적절히 준수되었다고 평가됨.</p> <p>- 비핵국의 핵실험이 핵확산 방지에 위협이 된다고 밝힘.</p> <p>- 남아공과 이스라엘에 대한 원자력시설과 물질 및 장비의 이전 금지를 촉구.</p>	<p>-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p> <p>- 서독의 겐서외무장관이 동서독 및 통일독일의 대량살상무기 보유금지과 NPT 준수를 선언.</p>

평가회의 조항	제1차 평가회의 1975.5.5~5.30	제2차 평가회의 1980.8.11~9.7	제3차 평가회의 1985.8.27~9.21	제4차 평가회의 1990.8.20~9.14
제Ⅲ조	<p>- NPT 비가입국의 모든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적용할 것을 촉구.</p> <p>- 다수 국가들이 NPT에 가입한 핵국들의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대해서도 IAEA 안전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p>	<p>- 기존 안전조치 체제가 만족스럽다는 의견과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p> <p>- 안전조치 적용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원자력 시설을 설계·건설할 것을 촉구.</p> <p>- NPT 비가입국의 부분안전조치 수용에 대해 가입국들의 불만이 제기됨.</p> <p>- 비가입국들의 모든 원자력활동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적용에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공급국이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이 3가지로 갈라짐.</p> <p>- 美·英·佛의 평화적 원자력시설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수용을 환영하면서 소련의 동참을 촉구.</p>	<p>- IAEA의 안전조치 수행중 대량의 핵물질이 핵무기 생산에 전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만족을 표시.</p> <p>- 국제플루토늄 저장시스템 설립을 권고.</p> <p>- 국제핵연료주기시설의 설립과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p> <p>- NPT 비가입국에 대한 부분적인 안전조치 적용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전면 안전조치 적용을 원자력수출의 전제조건화하는 문구에 원자력수출국간 이견이 노출됨.</p> <p>- NPT 비가입국들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모든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대해 IAEA 안전조치를 수용할 것을 촉구.</p>	<p>- 사찰기술과 임의검사에 대한 연구, 쟁거위원회 규정 적용, 특별사찰 권한 행사 등 9개항의 안전조치 강화방안에 합의.</p> <p>- NPT 비가입국의 전면안전조치 수용 의무화에 대한 원자력 선진국간 이견 노출에도 불구하고 전면안전조치 의무화에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 서독도 전면안전조치 적용원칙 표명.</p> <p>-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IAEA 사찰수용을 촉구.</p> <p>- 북한은 미군의 핵무기와 韓·美 군사훈련에 의한 핵위협에 대한 제거와 자국의 안보에 대한 법적 보장을 요구.</p>

평가회의 조항	제1차 평가회의 1975.5.5~5.30	제2차 평가회의 1980.8.11~9.7	제3차 평가회의 1985.8.27~9.21	제4차 평가회의 1990.8.20~9.14
제Ⅳ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간지역적 핵연료 주기 센터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이 분야에 대한 IAEA 연구를 환영.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비가입국들이 훨씬 많은 혜택을 입는다는 불만이 제기됨. - 한국, 멕시코 등이 핵군축으로 생산되는 핵물질의 일부를 비핵국이 사용하도록 제의. - 이태리는 핵연료의 가격안정과 공급의 연속성 문제가 최종 선언문에서 검토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핵국들은 평화적 원자력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질적 지원강화를 촉구. - 원자력 공급국들의 수출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해 비핵국들은 안전조치를 수용했으므로 더 이상의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 - 원자력공급의 일방적 중단 방지와 예측가능성 증대의 중요성에 합의. - 재처리기술의 포기여부에 대해 상당한 이견이 있었으나 「국제 플루토늄저장」(IPS) 계획을 지지한다는 데 공감대 형성. - 우라늄비상안 전망과 국제핵연료은행 등 에너지 지원체제의 필요성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공과 이스라엘의 핵개발이 핵비확산 체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훼손했다는 우려 제기 및 양국에 대한 원자력협력 중단 촉구. - 핵무기 확산 방지라는 전제하에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 원자력 공급의 필요성 인정.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NPT에 가입한 비핵국들을 우대할 것을 촉구. - 1981년 6월 발생한 이스라엘의 이라크 원자로 폭격 사건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원자력시설 공격에 대해 유엔안보리가 즉각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르노빌 사태 이후 평화적 원자력이용의 안전성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됨. - 지역차원의 원자력 협력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강조됨. - 77그룹 국가들은 평화적 원자력이용 분야에서 NPT 가입국에 대한 우대를 촉구. - 헝가리, 스웨덴 등은 모든 국가가 「국제전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할 것과 핵국이 군사전략수립시 원자력시설 공격에 따른 방사능 누출위험을 고려할 것을 촉구. - 한국은 NPT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가에 대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기술 이전 및 정보제공 강화와 핵연료의 장기적·안정적 공급보장을 촉구.

평가회의 조항	제1차 평가회의 1975.5.5~5.30	제2차 평가회의 1980.8.11~9.7	제3차 평가회의 1985.8.27~9.21	제4차 평가회의 1990.8.20~9.14
제 V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폭발의 평화적 응용에 의한 혜택을 모든 비핵국들에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 - 서방 국가들로부터 평화적 핵폭발 응용의 기술적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V 조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없었으며 회의 참가국들의 묵시적 동의아래 제 V 조의 이행이 중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V 조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논의는 없었으며 제 2차 평가회의 이후 실질적 이행이 중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NPT 당사국들간에 이행이 중지된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된 제 V 조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없었음.
제 VI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실험과 핵무기 경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제 VI 조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핵국들의 노력을 촉구. - CTBT가 핵군축의 주요 방안임. - 볼리비아 등 20개국은 NPT 가입국 수와 핵국의 핵실험 중지를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제 I 의정서를 제의. NPT 가입국수와 美·蘇의 전략핵무기 감축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제 II 의정서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핵국들은 핵군축이 실현되지 못했으며 제 VI 조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미·소와 그 동맹국들은 「SALT II」 체결을 예로 들면서 제 VI 조가 이행되었다고 주장. - 77 그룹 국가들은 핵국들이 CD에서 ① 핵무기의 질적 개선 중지, ②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생산 중지, ③ 핵무기용 핵물질 생산 중지, ④ 단계적 핵군축, ⑤ 핵실험 전면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VI 조가 이행되지 못했다고 결론짓고 핵국들의 핵군축 및 핵실험금지 노력을 촉구. - 멕시코를 비롯한 비동맹중립국들은 ① 美·英·蘇의 CTBT 협상개시 촉구, ② 同 3국의 잠정적 핵실험 중단, ③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실험·생산·배치 동결을 내용으로 하는 3개 결의안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5년 이후 핵무기 경쟁이 퇴조하고 재래식 군축이 이루어지는 등 군축분야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 - 그러나 멕시코를 비롯한 77 그룹 국가들은 제 VI 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CTBT 체결에 중요성을 부여. - CTBT 조기 체결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으나 평가회의 참가국들의 의견이 5가지로 갈라짐.

평가회의 조항	제1차 평가회의 1975.5.5~5.30	제2차 평가회의 1980.8.11~9.7	제3차 평가회의 1985.8.27~9.21	제4차 평가회의 1990.8.20~9.14
제Ⅵ조	<p>- 美·蘇는 이러한 제안들이 양국관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간섭이라며 거부.</p>	<p>지 등을 협상할 것을 촉구.</p>		<p>- 한국은 美·蘇間 핵군축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CTBT는 효과적 검증방안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북한은 비핵국 영토에 핵무기 배치금지를 요구하고 핵무기 불사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있는 국제적 보장을 요구.</p>
제Ⅶ조	<p>- 비핵지대 창설이 핵확산 방지와 역내 국가들의 안보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밝히고 핵국들의 협력을 촉구. - 가나, 네팔 등 5개국은 NPT 가입 비핵국의 영토를 비핵지대화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 - 적극적 안전보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p>	<p>- 비핵지대화가 해당지역의 핵확산을 막고 역내 국가들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 - 비핵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사용위협 금지를 보장하는 국제조약의 체결이 핵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 한국은 소극적 안전보장의 임의적, 무차별적 적용은 오히려 안</p>	<p>- 특정지역의 핵무기 부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지역 국가들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 - 비핵지대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에 준하여 창설할 것을 명시. - 핵군축이 비핵지대 창설에 기여 가능함.</p>	<p>-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비핵지대 설치가 중요한 군축방안이 될 수 있음. -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가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IAEA 안전조치의 보편적인 적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관련 당사국 간 협의가 필요하며 지역의 특</p>

평가회의 조항	제1차 평가회의 1975.5.5~5.30	제2차 평가회의 1980.8.11~9.7	제3차 평가회의 1985.8.27~9.21	제4차 평가회의 1990.8.20~9.14
제Ⅶ조	<p>-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11개국들은 ①핵무기 불배치 비핵국에 대한 무조건 핵사용·사용위협금지, ②기타 비핵조약 당사국에 대한 핵선제 사용 자제, ③적극적 안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제Ⅲ의정서를 제안.</p> <p>- 美·蘇는 무조건 핵불사용 제의 거부.</p>	<p>전보장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힘.</p>	<p>- 핵국들이 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하고 비핵지대내 국가들에 대해 핵무기 사용과 사용위협을 하지 말 것을 권고.</p> <p>- CD에서 소극적 안전보장을 국제조약화 하는 협상이 지속되어야 함.</p>	<p>수상항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p> <p>- 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해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이 필요하며 5개 핵국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됨.</p> <p>- 나이지리아는 1991년 말까지 NPT 가입 비핵국들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조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회의개최를 제안.</p>

第Ⅳ章 NPT 延長會議의 豫想爭點과 韓國의 對策

NPT 조약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행현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11가지 사항이 NPT 연장회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①핵국의 핵무기 개발 지원 금지, ② 비핵국의 핵무기 개발 시도 차단, ③IAEA 안전조치 강화와 원자력투명성 제고, ④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수출규제 완화, ⑤대폭적인 핵군축 실현, ⑥「독립국가연합」(CIS)의 핵무기 해체 및 핵물질·기술 유출 방지, ⑦「핵실험전면금지조약」(CTBT) 체결, ⑧군사용 핵물질의 생산 금지 및 투명성 제고, ⑨비핵국에 대한 안전보장 강화, ⑩비핵지대 창설, ⑪ NPT 효력연장 유형 및 기간. 본 장에서는 이상의 쟁점사항들에 대한 한국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한국의 대책을 요약·정리하여 <표 4-1>에 수록하였다.

1991년 12월 31일 「비핵화 공동선언」이 체결되기 전까지 한국의 독자적인 핵정책은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고 북한이 이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해 온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핵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禁忌로 여겨진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철수되고 「비핵화 공동선언」이 체결되면서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일반 국민들간에 우리의 핵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핵주권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비핵화

공동선언」의 수정이나 폐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외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남북한은 당분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핵무장을 포기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할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거한 남북한 상호사찰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다.

1995년 NPT 연장회의에 대비한 한국의 대책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 NPT 체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NPT는 유지되어야 하며,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계속 보완·발전되어야 한다. 둘째,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원빈국들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핵무기의 보유와 사용이 금지되어야 하며 완전한 핵군축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넷째, 「비핵화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해소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군축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을 높인다. 즉 한국은 NPT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원빈국이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 국가라는 점을 감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고 핵군축 실현을 위한 외교적 공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연장회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 核國의 核武器 開發 支援 禁止

核國을 비롯한 원자력선진국들이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위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대표적인 핵잠재국들의 핵개발을 지원한 「間接擴散」(oblique proliferation) 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물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6개의 핵무기를 개발했다가 폐기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함으로써 핵국의 핵무기 개발 지원 문제가 과거와 같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간접확산이 NPT 체제에 허점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 NPT 비가입국이 IAEA의 전면안전조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원자력수출과 원조를 전면 중단하는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의 체결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선진국들이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NPT 체제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촉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제 I조가 핵국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선진 원자력기술을 보유한 비핵국이 다른 비핵국의 핵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제2차 NPT 평가회의에서 「원조, 장려, 유도」 금지 규정은 핵국과 비핵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원자력선진국들

이 NPT에 가입하지 않은 비핵국들에 대한 무분별한 수출을 자제하여 간접확산을 방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인 핵물질 거래의 투명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원자력수출입의 모든 현황을 IAEA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단일보고체제」(universal reporting system)를 실시하도록 제의할 필요가 있다.¹⁾

NPT는 비핵국 영토에 핵무기 배치와 비핵국 군대의 핵무기 사용훈련을 허용함으로써 「間接的 核武裝化」(indirect nuclearization)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美·러 양국의 전술핵이 모두 철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핵무기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 사용훈련의 허용 문제는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 한국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거하여 한반도에는 핵무기가 존재할 수 없으며 미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논리로 대응해야 할

1) IAEA 사무국은 1992년 2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자력장비 및 물질의 생산과 수출입에 대한 보고와 검증을 제의한 바 있다. Jennekens, J., R. Parsick and A. von Vaeckmann,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safeguards system," *IAEA Bulletin*, vol. 34, no. 1, 1992, p. 7. 현재 IAEA에서는 단일 보고체제가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IAEA 사무국은 구속력있는 단일보고 체제를 원했지만 IAEA 이사회가 이 제도의 자율적 실시를 선호하였다. David Fischer와의 의견교환, 1994년 11월 14일. 한편 재래식무기 분야에서도 자발적인 수출입 보고체도가 시행되고 있다. 유엔은 1991년 12월 9일 각국이 7개 재래식무기의 수출입 현황에 대해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결의안」(UN resolution 46/36L)을 채택하였다. 同 결의안에 따라 1993년 5월 말 현재 한국을 비롯한 59개국(북한 제외)이 전차·장갑차·야포·전투기·공격헬기·전함·미사일 및 발사대의 수출입 및 보유 현황을 보고하였다.

것이다. 또한 NPT가 핵무기 배치 여부를 검증할 권한은 없으나 한국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이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핵무장 항공기와 함선의 通過·訪問·寄港이 간접적 핵무장화로서 NPT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표명된 적은 없으나 미국의 핵우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군 항공기와 함선의 한반도 통과·방문·기항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²⁾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핵화 공동선언」협상 당시 한국은 외국 항공기와 함선의 한반도 통과·방문·기항을 금지하는 북한의 「비핵지대화」(案)을 강력히 거부했던 것이다. 이 문제는 미국의 전반적인 핵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항이므로 韓·美間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단기적으로 기존의 허용 입장을 견지하되, 국제정세의 변화를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입장을 정립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제 I조의 내용중 핵무기와 통제권의 「間接的 讓渡」(indirect transfer)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다. 이는 핵국의 핵무기가 비핵국 영토에 배치될 경우 이를 NPT 위반으로 간주할 것인지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한

2) 전성훈, “南北 核協商 現況과 展望,” 「統一研究論叢」, 創刊號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 140.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가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한국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주한미군 전술핵의 재배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간접적 양도」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핵국이 핵무기 사용(배치가 아님)을 결심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비핵국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경우 「간접적」 양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2. 非核國의 核武器 開發 試圖 遮斷

현재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거나 앞으로 그 가능성이 큰 국가들은 이라크, 북한, 이란 등으로 이들을 「신흥핵개발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핵국의 도움을 받은 6개 잠재핵국들도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으며 逆으로 신흥핵개발국들도 원자력선진국들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 兩者를 구분하는 기준은 6개 핵잠재국들은 이미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거나 완전히 중단한 반면, 3개 신흥핵개발국들은 핵무기 개발의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의 경우 유엔안보리의 각종 결의안을 통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보유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이다. 북한도 1994년 9월 23일~10월 17일에 미국과 가진 제3단계 2차 고위급회담에서 현재와 미래의 핵활동을 동결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제 북한의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핵의혹의 해소, 즉 북한이 1992년 5월 최초로 IAEA 사찰을 받기 이전의 핵활동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문제만이 남아 있다. 과거 핵의혹의 해소는 IAEA의 특별사찰과 관련된 문제로써 北·美 양국은 북한에 건설되는 경수로의 주요 부품이 북한에 반입되는 시점에, 즉 앞으로 약 5년 정도 지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3개 신흥핵개발국중 현재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는 이란이다. 이란은 심각한 부채와 실업문제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삭감하지 않고 있다. 이란은 걸프지역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주변국을 위협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를 원하고 있다.³⁾ 미국의 울시(James Woolsey) CIA 국장은 이란이 앞으로 8~10년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완성된 핵무기와 핵물질 수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⁴⁾ 따라서 원자력선진국들은 앞으로 이란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국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핵무기를 제조해도 무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핵실험전면금지조약을 조속히 체결하여

3) Mourad El-Desouky, a military expert at Al Aharm Strategic Studies Center in Cairo, cited in "Proliferation formula for terror," *Time*, 29 August 1994, p. 21.

4) *Korea Herald*, 28 September 1994.

모든 NPT 당사국들이 CTBT에 가입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핵무기의 설계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비핵 부품(non-nuclear components)의 개발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 설계의 경우 원시적인 핵폭탄 기술은 이미 공개된 반면, 첨단 제조기술은 핵국의 최고 기밀사항이므로 NPT 차원에서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비핵 부품은 현재 런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수출입이 규제되고 있다.

우리가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우려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핵비확산 차원에서 남북한을 동일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국도 1970년대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던 전력을 갖고 있으며 아직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이 완전히 불식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핵무장 포기 의사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NPT 연장회의 참가국들에게 「원자력통제기술센터」(Technology Center for Nuclear Control: TCNC)를 통한 국내사찰 강화와 남북한 상호사찰 등 남북한의 핵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NPT 연장회의 석상에서 남북한이 앞으로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핵·화학·세균 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고 공동으로 선언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⁵⁾

5) 제4차 NPT 평가회의에서 당시 서독의 겐셔(Hans-Dietrich Genscher) 외무장관이 통일독일의 대량살상무기 보유금지과 NPT 준수를 공식 선언한 것은 통일독일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통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남북한이 NPT 연장회의와 같은 중요한

3. IAEA 安全措施 強化와 原子力透明性 提高

기존 IAEA 사찰제도를 개선하고 각국의 원자력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문제는 제3세계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핵국과 원자력선진국들이 강력히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의제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①NPT에 가입하지 않은 비핵국의 원자력활동에 대한 IAEA 사찰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②핵국들의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대한 IAEA의 사찰을 강화하는 문제, ③ 기존의 IAEA 사찰제도를 강화하는 문제. 한편 한국은 남북한 원자력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독자적 및 상호협력적 방안을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고 핵무장 의혹을 해소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NPT에 가입하지 않은 비핵국에 대한 전면안전조치 적용을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으로 체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4차 NPT 평가회의에서 이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후 핵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분위기가 강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관건은 원자력선진국들이 얼마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핵개발국에 대한 원자력수출을 자제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4차 평가회의에서는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이 동시

국제회의 석상에서 대량살상무기 보유금지를 공동으로 선언하는 것도 남북한 관계개선 및 통일의 주변여건 조성과 더불어 남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에 발생했다. 부정적 측면에서, 벨기에와 스위스가 NPT에 가입하지 않은 비핵국들에 대해 전면안전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프랑스가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원자력 선진국들간에 이견이 노출되었다. 반면에 서독이 전면안전조치 적용원칙을 표방하고 기존의 원자력수출 계약을 재협상할 것을 결정한 것은 NPT 체제 유지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이다. 특히 서독의 결정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핵개발 계획을 중단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제3차 NPT 평가회의에서와 같이, NPT 비가입국에 대해 IAEA의 전면안전조치를 적용할 경우 독자적인 핵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일부 국가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원자력선진국들도 독일의 예를 따를 것과 더 나아가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핵국들의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대해 IAEA 사찰을 강화하는 문제는 특히 러시아의 핵물질 유출로 인해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가 모든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부분적인 사찰을 수용하고 있다. 한국은 NPT에 가입한 비핵국과 같이 모든 핵국들의 평화적 원자력활동이 전면안전조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핵국들이 IAEA 사찰수용에 솔선수범하는 것은 NPT의 차별성을 약화시킴으로써 NPT 체제 강화와 사찰의 보편성(universality)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

다. IAEA 사찰을 실시하는 방법은 핵국들의 원자력시설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정기적인 사찰보다는 사찰대상과 시간을 受檢國에게 일정기간내에 통보하고 실시하는 任意檢査(random inspection)가 적절할 것이다.

원자력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역시 IAEA의 사찰제도를 강화하는 문제이다. 기존의 사찰제도는 20년 이상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더욱이 IAEA가 이라크의 핵개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IAEA 사찰의 문제점이 드러남으로써 기존의 사찰제도로는 비핵국의 핵개발 방지가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IAEA가 우선적으로 취한 조치는 1992년 2월 이사회에서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실시권한을 재확인하고 새로이 건설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제공받겠다고 결정한 것이다.⁶⁾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은 한번도 실시되지 않아 거의 死文化되었던 조항이다. 또한 과거에는 새로운 원자력시설 건설시 IAEA에 통보하는 시점을 「핵물질을 시설 내에 투입하기 전에 가능한 빨리」라고 애매하게 표현하였으나,⁷⁾ 이제 의사결정 단계 및 이후 주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6) Jon Wolfsthal, "IAEA to implement 'suspect site' inspection powers," *Arms Control Today*, vol. 22, no. 2 (March 1992), p. 27.

7) 일반적으로 핵물질 裝入 180일전에 IAEA에 통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원자력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기존의 IAEA 사찰제도를 보완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⁸⁾

첫째, 사찰대상을 확대하고 보고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이다. 현재 우라늄광산, 정련공장, 「옐로우케익」(yellow cake) 등은 IAEA 사찰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차원에서 사찰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⁹⁾ 따라서 옐로우케익과 핵무기에 사용가능한 민감한 비핵물질 및 장비를 포함하여 모든 핵물질과 기술 및 장비의 수출입·생산에 대한 「단일보고 체제」(universal reporting system)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찰기준을 변경하여 IAEA 査察資源을 핵개발 가능

8) Owen Greene, *Verifying the Nonproliferation Treaty: Challenges for the 1990s* (London: VERTIC, 1992), pp. 55~63. 현재 IAEA 사무국은 1993년에 시작한 「93+2 프로그램」(Programme 93+2)을 통해 IAEA의 검증능력을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1995년 3월 IAEA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Statement to the Thirty-Eigh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by Hans Blix, *Programme for Promoting Nuclear Non-Proliferation*, no. 27, 1994, pp. 29~30. 「93+2 프로그램」의 주요 연구분야는 ①정보관리와 원거리 정찰능력의 배양, ②환경감시, ③상업용 인공위성 사용 등이다. Lothar Wedekind and James Larrimore, "IAEA symposium on international safeguards: mirror of the times," *IAEA Bulletin*, vol. 36, no. 3, 1994, pp. 10~12.

9) 전성훈, 「核問題에 대한 北韓의 立場과 韓半島 非核化 展望」, 「제5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 27.

성이 큰 비핵국들에게 많이 할당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IAEA는 원자력시설의 형태 및 각 시설에 존재하는 핵물질의 양에 따라 同 시설의 연간 사찰회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찰을 실시해 왔다. 따라서 핵개발 가능성은 적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선진국들이 많은 회수의 IAEA 사찰을 받는 반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국가가 소량의 핵물질을 여러 시설에 분산해 놓는 경우 IAEA 사찰부담을 덜 받는다는 단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92년에 원자력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독일, 캐나다, 일본이 IAEA 안전조치 예산의 60%를 소모하였다. 따라서 사찰 기준을 변경하여 원자력선진국들에 대한 사찰을 줄이고 「시설부록」(facility attachment)과 사찰요원에 대한 비자발급을 통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사찰시점과 빈도에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약소국에 대한 압력이라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당사국간 폭넓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IAEA가 정의한 「重要量」(significant quantity: SQ)과 「轉換時間」(conversion time)을 수정하는 것이다. IAEA 사찰은 안전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원자력시설에서 「중요량」만큼의 핵물질이 손실되었는지를 「전환시간」내에 탐지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계획되었다.¹⁰⁾ 중요량과 전환시간은

10) 현재 IAEA는 중요량 만큼의 핵물질 유출이 전환시간내에 탐지될 확율을 95% 정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찰을 실시하고 있다.

각각 한개의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물질의 량과 時間이다. IAEA는 플루토늄의 경우 중요량을 8kg, 전환시간을 7~10일, 고농축우라늄의 경우 중요량을 25kg, 전환시간을 1~3주로 설정하였다.¹¹⁾ 그러나 1967년도 유엔보고서에 근거하여 결정된 기존의 중요량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핵무기 제조기술이 발달하여 기존 중요량보다 훨씬 적은 량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블릭스 IAEA 사무총장과 올리어리(Hazel O'Leary) 미국 에너지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요량을 플루토늄 1kg, 고농축우라늄 3kg으로 축소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¹²⁾ 기존 중요량의 50% 정도만 새로운 중요량으로 삼을 경우에도 IAEA 사찰 허용회수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 중요량 조정과 함께 IAEA가 실제사찰 회수와 시기를 결정하는 임의검사 개념을 적용할 경우 IAEA 사찰기능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실현가능성이 있는 특별사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IAEA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실시권한을 확인하고 이를 북한에 대해 적용하였으나 북한의 완강한 거부로 특

11) Benjamin Schiff, *International Nuclear Technology Transfer: Dilemmas of Dissemination and Control* (London: Rowman & Allanheld Publishers, 1983), p. 119.

12) Letters by Thomas Cochran and Christopher Paine to the Honorable Hans Blix and the Honorable Hazel O'Leary, 18 August 1994.

별사찰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사찰은 해당국가를 일종의 범죄국으로 간주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실시절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당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군사적·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면서 실시될 수 있는 특별사찰 절차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강제사찰」(challenge inspection)에서 채택된 「접근조절기술」(managed access techniques) 개념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¹³⁾

다섯째,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나 「아르헨티나·브라질 원자력협약체」(ABACC)와 같이 자체적으로 사찰을 실시하는 지역협약체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IAEA의 사찰에 산을 절감한다. 물론 지역차원의 사찰이 IAEA 사찰을 대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여섯째, IAEA 사찰의 非敵對的(nonadversarial) 혹은 非調查的(noninvestigative)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현재 IAEA는 핵물질의 算定(accounting)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기관으로서 핵개발 여부를 정확히 탐지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과 진행 정도 등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별로 요원을 할당하여 해당국의 모든 원자력활동에 대

13) CWC Summary and Text, *Arms Control Today*, vol. 22, no. 8 (October 1992), p. 4. 접근조절기술은 受檢國의 민감한 시설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찰 실시중 수검국이 주요 문서를 치우거나 컴퓨터화면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검증기법이다.

한 정보를 분석하는 「개별국요원제도」(country officer system)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IAEA의 정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IAEA로 하여금 각국이 제공한 첩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블릭스(Hans Blix) 사무총장이 시도했으나 제3세계 국가들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반면에 상업용 인공위성을 이용하거나 유럽에서 체결된 영공개방조약에 의거하여 각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¹⁴⁾ 또한 핵실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진탐지소가 취득한 정보를 IAEA에 전송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일곱째, 현재 IAEA는 핵추진 잠수함이나 함선에 사용되는 핵물질을 「금지되지 않은」(non-proscribed) 군사활동에 사용되는 것이라 하여 사찰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이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우선 운행중인 잠수함이나 함선의 원자로에 장입하지 않은 핵물질에 대해서 사찰을 실시해야 한다.

여덟째, 제2차 평가회의에서 결의되었듯이, 각국은 IAEA 사찰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사찰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자력시설을 설계·건설해야 한다.

한국이 NPT 연장회의에서 남북한 원자력활동의 투명성 증대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남북한이 개별적으로 실시

14) 이를 위해서는 各國의 원자력시설을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과 정확한 위치 등 관련 정보의 제출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방안과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남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자력활동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독자적인 방안이 조속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 독자적인 투명성 증대방안은 IAEA의 핵사찰 및 남북한 상호사찰을 보완하면서 남북한의 핵무장 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원자력통제기술센터」(TCNC)를 설립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1994년 3월에 설립된 원자력통제기술센터는 원자력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찰기술과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원자력통제기술센터는 원자력투명성 증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첫째, 국내사찰, 핵물질 계량, 물리적 방호 및 국제적으로 통제되는 핵물질의 수출입 관리와 관련된 법적 문제와 규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둘째, 국내사찰체제를 개발하기 위해 사찰훈련과 기술지원,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사찰기술 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셋째, 핵물질의 계량 및 측정을 위해, 컴퓨터 계량 및 관리 기술 개발, 국제적으로 통제되는 핵물질의 수출입 자료관리, 비파괴 측정방법 연구 및 응용 등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환경시료분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료의 화학적 분석 및 검증, 미신고 핵활동을 탐지하기 위한 환경시료분석, 사찰단에 대한 방사능 통제와 건강 지원문제 등을 담당한다.

이상의 독자적인 방안과는 별개로, 남북한은 이미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효과적인 상호사찰을 실시하고 쌍방의 원자력활동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사찰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호사찰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첫째, 「비핵화 공동선언」의 제4항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사찰 실시는 남북한의 의무사항이다. 만약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호사찰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비핵화 공동선언」은 실질적 의미를 상실하고 死文化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의 핵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인 동시에 남북한의 문제이므로 국제적 차원에서 IAEA 사찰이 필요하다면, 남북한 차원에서 상호사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한은 상호사찰의 독자성을 확보하여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북한 상호사찰은 국제적 이목이 집중된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북한 문제의 당사

자 해결원칙과 우리의 자주성을 견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됨으로써 향후 통일을 위한 제반 남북협력 문제에서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셋째, 남북한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상호사찰은 필수적이다. 원자력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한 원자력 시설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여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남북한이 평화적 원자력이용에 대한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상호사찰을 통한 원자력산업의 상호공개가 필요한 것이다.

넷째, IAEA 사찰제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상호사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IAEA 사찰과 상호사찰의 대상이 중복되더라도 상호사찰의 경우 동일한 언어와 감각을 가진 같은 한국사람이 사찰을 실시하고 관련자들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제3국인이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다섯째, 상호사찰은 원자력전문가들의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쌍방의 원자력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불신을 해소하고 남북한 신뢰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미국은 「비핵화 공동선언」과 이에 의거한 상호사찰 체제를 국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모델로 간주하고 있다.¹⁵⁾ 이라크의 경험을 통해 IAEA 사찰의 한계를 절감한

15) 예를 들어 1992년 당시 미군축처장이었던 레만(Ronald Lehma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는 한국에서 얻어진 경험이 中東이나 南아시아와 같

미국은 상호사찰이 IAEA 사찰을 보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¹⁶⁾ 따라서 미국은 남북한간에 강력한 상호사찰 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선례로 핵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찰제도를 수립한다는 구도하에 남북한 상호사찰을 관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상호사찰 실현을 포기할 경우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둘러싸고 韓·美 및 北·美間에 마찰도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상호사찰 수용을 종용할 가능성이 크며, 역으로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의 중요한 촉진요인이 될 것이다.

남북한간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쌍방의 원자력활동에 대한 투명도 증대를 위해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핵화 공동선언」이나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일방의 의무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협력에

은 기타 지역에 유용한 개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남북한은 갈 길이 멀지만 핵문제에 관해 서울과 평양이 이미 취한 행동조차 취하지 않는 지역들이 있다. 핵과 관련한 신뢰구축이 보다 더 이루어져야 할 지역이 인도와 파키스탄이 대치하고 있는 남아시아이다.” Ronald Lehman,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on the Korean Peninsula,” 「韓半島 軍縮 4國 學術會議」(서울: 북한연구소, 1992년 6월 2일), pp. 24~25.

- 16) 레만(Ronald Lehman) 美군총처장은 어느 사찰이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핵개발을 지연시킬 수는 있으며 한국이 제시한 사찰방안은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하고 북한의 재처리시설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협상에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가 있어야 상호사찰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상호사찰 실시를 관철할 것을 촉구하였다. *Korea Herald*, 3 June 1992.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남북한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 양국의 핵물질과 시설을 공동 관리하고 원자력기술 및 자원에 관한 교류·협력을 수행하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¹⁷⁾ 또한 북한이 IAEA 사찰을 수용하더라도 사찰결과는 제3국에 비밀로 하는 IAEA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직접 북한의 원자력활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남북한 양측은 우선 핵사찰 협상과 관계없이, 自國의 원자력활동에 관하여 최소한 IAEA에 제공되는 만큼의 자세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도록 합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방안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상대방의 원자력활동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자력활동의 투명도를 증대하고 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17) 남북한은 이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은 1991년 9월 17일 IAEA 총회에서 북한이 IAEA 핵사찰을 수용할 경우,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기술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우진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북측 위원장도 일본 환태평양연구소 주최 한반도 통일문제 심포지움에서 핵사찰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면 남북한이 평화적 원자력이용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겨레신문」, 1992년 5월 20일.

4.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 增進과 輸出規制 緩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규제는 일정 규모의 원자력 산업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비핵국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문제로서 NPT 연장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NPT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NPT에 가입한 비핵국과 가입하지 않은 비핵국간의 차별이다. 즉 NPT에 가입하지 않은 비핵국들이 NPT에 가입한 비핵국들보다 평화적 원자력 이용 분야에서 덜 규제받음으로써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NPT에 가입한 핵국과 비핵국간의 차별이다. 비핵국들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평화적 원자력이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핵군축과 핵불사용 보장을 통한 자국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핵국들은 원자력수출 규제를 통해 비핵국들의 평화적 원자력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핵군축과 안전보장에 있어서도 비핵국들이 요구하는 만큼 적극적이지 못하다.

비핵국이면서 앞으로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은 원자력기술 선진국들이 비핵국들의 평화적 원자력이용 증진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 것과 수출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¹⁸⁾ 이러한 한국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리

18) 한국이 조만간 NSG에 가입하게 되면 이러한 주장을 펼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비핵국인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활성화를 기본입장으로 하고 NSG의 가이드라인 적용에 가급적 융통성을 부여함

에 근거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IAEA 사찰의 성실한 수용과 함께 효과적인 상호사찰 실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원자력통제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자체적인 국내사찰을 강화하는 등 원자력활동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둘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서 NPT 가입국보다 비가입국이 유리한 상황에서는 NPT 가입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므로 NPT 체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NPT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각종 수출규제를 강화하되 NPT 가입국에 대해서는 원자력활동의 투명도가 보장되는 정도에 따라 평화적 원자력이용을 지원해야 한다. 즉 NPT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감으로써 NPT 체제가 확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원자력선진국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관련하여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지역핵연료주기센터의 설립, 원자력이용의 안정성 증진, 수출규제의 완화, 평화적 목적의 핵실험, 원자력시설에 대한 공격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각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은 다음과 같다.

으로써 평화적 원자력활동 선호국이라는 국제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한국의 입장은 평화적 원자력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적인 핵확산 위험이 고조되어도 이미 핵국과 핵잠재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안보가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략적 계산에 바탕을 둔다.

첫째,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하여, 핵연료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는 비핵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핵연료 수출국들이 NPT에 가입한 비핵국들에 대해 핵연료의 가격 안정과 공급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아울러 특정 비핵국이 NPT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유엔차원에서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비핵국에 대한 일방적인 원자력공급 중단이나 계약갱신 혹은 계약위반을 금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원자력수출국에 대해서는 유엔차원의 규제조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의할 수 있다. 또한 제2차 NPT 평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우라늄비상안전망」이나 「국제핵연료은행」과 같은 에너지 지원체제의 필요성도 IAEA의 「공급보장회의」 등에서 재검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둘째, 지역핵연료주기센터는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하고 비핵국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¹⁹⁾ 한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최근에는 일본이 자국의 핵무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아시아 지역의 평화적 원자력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차원의 다자간 핵연료주기센터 또는 플루토늄저장체제의 설립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⁰⁾ 한국도 이미 제4차 NPT 평

19) Frank Baranby et al.,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related to disarmament," *SIPRI Yearbook 1976* (Stockholm: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76), pp. 375~376.

20) 핵국을 비롯한 원자력선진국들은 핵무기 개발을 우려하여 플루토늄의 확산을 막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플루토늄 보유가 「擴散」(proliferation)에 해당

가회의에서 잉여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의 국제적 관리를 위해 지역연료주기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²¹⁾ 한국은 우선적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도록 제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화적 원자력이용의 안전성 증진문제는 체르노빌 사태 이후 국제사회가 각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문제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주요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IAEA 사찰을 통해 북한의 원자력시설에 안전상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제4차 NPT 평가회의에서 IAEA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IAEA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자는 이태리의 제의에 대해 IAEA의 권한 확대를 원치 않는 대부분의 서방 원자력선진국들이 반대하였다.²²⁾ 그러나 한국은 노력과 비용이 들더라도 자체적으로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원자력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일부 국민들의 反核 정서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소련식 원자력시설을 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협력을 촉구하는 근거를

되는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장회의에서는 「확산」의 정의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독일 자유백립대 서병문 교수와의 의견교환, 1994년 9월 17일.

21)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核武器 非擴散條約 第4次 評價會議 參加結果 報告書」(서울: 외무부, 1990년 11월), pp. 12~13.

22) David Fischer and Harald Müller, "The fourth review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SIPRI Yearbook 1991* (Stockholm: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91), p. 576.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수출규제의 완화와 관련, NPT 체제의 강화가 비핵국들의 평화적 원자력이용을 저해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원자력수출국들은 NPT 가입국들에 대해 우대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클린턴행정부가 양면성을 가진 첨단기술의 수출규제를 완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국방부를 중심으로 마련중인 미국의 새로운 핵비확산 정책은 민감기술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며,²³⁾ 미의회도 수출규제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산업계의 불만을 고려하여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²⁴⁾ 이와 관련하여, 미행정부는 이미 1993년 가을 「대통령 검토지침서 8호」(Presidential Review Directive 8)에 의거하여 우주발사로켓트 기술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의사를 밝힌 바 있다.²⁵⁾ 한국은 원자력기술 선진국들이 핵·화학·세균무기의 보유를 포기하고 핵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한 국가들에 대해 수출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원자력협정들은 대부분 원자력기반이 취약한 후진국이었을 때 맺어진 것으로 평화적 원자력이용의 증진보다는 규제측면이 강조된 수출국 위주의 협정들이다.²⁶⁾ 따라서

23) *Korea Herald*, 14 May 1994; 「中央日報」, 1994년 5월 11일.

24) *The New York Times*, 29 July 1994.

25) *Jane's Defence Weekly*, 4 September 1993, p. 24.

26) 李在星·朴承基·崔瑛明, “國際協力を 통한 原子力 敏感技術 確保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軍事運營分析學會誌」, 第16卷 第2號(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0), pp. 25~26.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협정들에 대한 개정과 보완을 관련국들과의 협의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평화적 목적의 핵실험은 곧 핵무기 보유와 동일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실험 전면금지조약」을 통해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 제 V 조는 제 2차 NPT 평가회의 이후 이행이 중지되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연장회의에서 이를 공식 확인함으로써 제 V 조를 사실상 死文化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V 조를 삭제하는 것은 조약을 수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고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이스라엘의 이라크 원자력시설 공격으로 국제문제화된 원자력시설에 대한 공격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사실이 밝혀진 이후 북한의 영변 원자력 시설에 대한 「군사작전」(surgical strike)이 거론되기도 했기 때문에²⁷⁾ 이 문제는 한국이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할 사안이다. 원자력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며 유엔안보리가 이라크를 공격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비난하는 등 국제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이 다시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27) 1991년 4월 12일 당시 이종구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사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특공작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국일보」, 1991년 4월 14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이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미행정부
 부가 국방부를 중심으로 수립하고 있는 새로운 핵비확산 전략
 인 「反擴散 독트린」(counterproliferation doctrine)이 바로
 그것이다. 1993년 12월 7일 당시 애스핀(Les Aspin) 미국방
 장관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기존의 「非擴散 戰
 略」(nonproliferation strategy)에 미국과 우방을 적국의 대
 량살상무기로부터 보호한다는 적극적 개념을 포함시킨 새로운
 대량살상무기 방지책으로서 「反擴散 독트린」을 천명하였다.²⁸⁾
 이후 미행정부는 「反擴散 독트린」의 구체적 시행절차를 마련
 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이 우려해야 할 문제는 「反擴散 독트
 린」이 제3세계의 핵무기 개발국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사공
 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탈냉전 이후 유일한 초강
 대국인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국가에 대해 군사적
 인 응징을 가함으로써 핵개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은 북한 핵문제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방향으
 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
 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反擴散 독트린」은 한국의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NPT 연장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경우, 한국은 제3세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원자

28) Remark by Honorable Les Aspin, Secretary of Defens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Committee on International Security and Arms Control*, 7 December 1993.

력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²⁹⁾

5. 大幅的인 核軍縮 實現

NPT 협상 당시 美·蘇의 초안에는 핵국의 핵무기 감축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비핵국들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핵국들의 핵무기 감축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즉 핵의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을 연계시킴으로써³⁰⁾ 핵무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군축문제가 NPT에 첨가되었다. 하지만 美·蘇를 비롯한 핵국들이 NPT에서 비핵국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핵군축을 추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보다는 어느 정도 전력의 균형이 달성되었다는 전략적 계산, 과도한 군비지출을 줄이겠다는 경제적 이해, 국제관계 개선에 따른 정치적 긴장완화 등 각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핵국들의 군축노력은 조심스럽고 완만하게 진행되어 왔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핵국들은 핵국들이 군축문제에 보다 많은 노력과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1980년대

29)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다음 논문을 참조. Seongwhun Cheon, "A South Korean view of US Counterproliferation Initiative," paper prepared for The Woodrow Wilson Center's International Project on US Counterproliferation Doctrine, Washington, D.C., November 1994.

30) Jozef Goldblat and Macha Levinson, "The second NPT review conference," *SIPRI Yearbook 1981* (Stockholm: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81), p. 335.

중반 이후 美·蘇間에 여러가지 실질적인 군축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NPT 연장회의에서 핵군축 문제는 핵국과 비핵국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 분명하다.

핵군축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당연히 비핵국으로서 핵국들이 보다 과감한 군축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정 달성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평화적 원자력이용 권한을 보장하라는 비핵국들의 요구에 대해 핵국들은 NPT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군축조약이므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군축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 바 있다.³¹⁾ 바로 이러한 논리를 이용하여 한국은 핵국들의 군축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핵국들이 핵군축을 비롯한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NPT 제Ⅵ조는 비핵국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제Ⅰ, Ⅱ조와 동등한 구속력을 가지며 이행의 先後를 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한국은 핵국들이 더 이상 군비통제라는 이름하에 계산된 군비경쟁을 추구하거나 핵을 담보로 그들의 정치·경제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지양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NPT의 협상 역사를 검토해 볼 때, NPT는 전면적인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조약이 아니며, 제Ⅵ조가 NPT의 핵심조항이 아니라

31) Ibid., p. 318.

는 의견도 있다.³²⁾ 그러나 NPT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국제규범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변화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탈냉전 시대에 핵군축 문제를 더 이상 도외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핵무기의 보유와 사용 및 사용위협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는 「核武器에 대한 不法化 規範」(a norm of delegitimizing nuclear weapons)이 국제사회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3세계 비핵국들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주된 요인의 하나는 핵무기 보유가 그들의 체제유지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³³⁾ 제3세계 국가들의 이러한 판단은 그동안 핵국들이 핵무기를 담보로 그들의 이익을 챙기고 권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 핵군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핵무기의 정치적·군사적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비핵국의 핵개발 욕구를 제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³⁴⁾ 핵무기의 불법화 규범이 바로 이러한 여건 조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완

32) Benjamin Sanders, "Avoiding the worst of all possible worlds," in Joseph Pilat and Robert Pendle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1990), p. 25.

33) George Quester and Victor Utgoff, "Toward an international nuclear security policy,"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7, no. 4 (Autumn 1994), p. 7.

34) Frank Barbany et al.,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related to disarmament," p. 382.

전한 핵군축을 단기간내에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치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시의 적절하며 핵군축 완성에 필수적인 중간단계의 방안들을 실천함으로써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정당화하는 인식을 줄여나가고 NPT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³⁵⁾

핵무기가 초래하는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폐해는 핵국들의 책임이므로 핵국들은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핵국들이 그들에게 가해지는 규제를 거부하지 않고 핵군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핵비확산 체제가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³⁶⁾ 비유하자면 어른들이 칼을 갖고 세상을 누비는 것을 본 어린이들이 역시 칼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칼장난을 막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술선수범해서 칼은 위험하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³⁷⁾

핵군축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핵무기의 數的 및 質的 감축, 배치금지, 군사전략 조정문제 등으로 구분해서 논할 수 있다.

35) Lawrence Scheinman, "The Non-Proliferation Treaty: on the road to 1995," *IAEA Bulletin*, vol. 34, no. 1 (1992), pp. 35~36.

36) David Albright and Mark Hibbs, "Iraq's quest for the nuclear grail: what can we learn?" *Arms Control Today*, vol. 22, no. 6 (July/August 1992), p. 11.

37) 그러나 한반도 주변의 강국들은 핵무기 사용이 국제법적으로 규제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일본도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 「世界日報」, 1994년 12월 7일.

첫째, 수적 측면에 있어서는, 美·蘇가 1987년 「INF」 체결 이후 실질적인 군축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비핵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1991년에 체결된 「START I」이 최근에야 발효되었으며 1993년에 체결된 「START II」도 2003년까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NPT 연장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우선 美·蘇가 향후 추진할 핵군축의 시간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군축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감축은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계획은 미리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美·러의 핵군축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 NPT 연장기한을 2003년을 중심으로 정하고 이후의 연장여부를 핵군축 실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핵무기의 질적 동결 문제는 NPT 연장회의 개최 이전까지 핵실험 전면금지조약의 체결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핵국들이 핵무기의 질적 개선을 중지하는 별도의 NPT 의정서를 채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質的 동결 의정서」는 핵탄두의 소형화, 다탄두화 및 운반수단 개량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 핵무기의 배치를 금지하는, 즉 間接的 核武裝化를 방지하는 별도의 NPT 의정서를 채택하는 것도 「핵무기의 불법화 규범」을 유지시켜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방안이다. 자국영토 이외의 지역은 他國

의 영토·영해·영공 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남극과 같은 영토, 深海底 및 그 海上과 우주를 포괄한다. 혹자는 이 방안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91년 9월 당시 부시대통령의 전술핵 철수 선언에 따라 현재 주한미군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을 순회하는 함선도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고 있다.³⁸⁾ 따라서 「핵무기 배치 금지」 의정서가 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실현불가능한 방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물론 미국이 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를 비롯한 해양핵전력에 의존한다는 사실과 한반도 주변에도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방부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핵무기를 불법화하기 위해서는 핵국이 그동안 누려왔던 권한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 또한 한국은 핵무기 불법화 규범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해 한국의 핵무장 포기의사를 입증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넷째, 핵국들이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군사전략을 재정립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미국이 제2차 NPT 평가회의 며칠전에 핵공격의 목표와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

38) John Endicott, "The impact of a limited nuclear free zone on deployed nuclear weapons in Northeast Asia," prepared for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managed by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erkeley, California, July 1994, p. 12.

독트린을 발표한 것과 같은 행동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핵무기의 불법화 규범」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핵국이 비핵국에 대해 무조건 핵무기 사용금지를 약속하는 「핵불사용 의정서」를 NPT의 부속의정서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핵억제전략을 수정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견해³⁹⁾도 있으나, 탈냉전시대에는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핵전략이 갖는 의미가 쇠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불사용 의정서」 채택 제의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 「獨立國家聯合」(CIS)의 核武器 解體 및 核物質·技術 流出 防止

독립국가연합의 15개국중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던 국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베루로스 등 4개국이다. 이 중 러시아가 재처리 및 우라늄농축 공장, 핵탄두 조립·해체 공장 및 기타 연구시설 등 가장 많은 원자력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국에는 관련 연구시설들이 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던 4개 공화국들

39) 핵선제불사용은 핵억제전략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안보증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Archelaus Turrentine, "The dynamics of the NPT extension decision," in Kathleen Bailey, ed., *Director's Series on Proliferation*, UCRL-LR-114070-2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1993), p. 9.

은 러시아가 소련의 핵국지위를 승계하고 나머지 3개국은 비핵국으로 남기로 합의하였다. 베루로스와 카자흐스탄은 이 약속을 잘 준수하고 있으나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쉽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우크라이나는 NPT 가입과 「START I」의 비준을 미루면서 자국에 대한 안전보장과 경제적 반대급부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였으며⁴⁰⁾ 우크라이나 의회는 최근 들어서야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건을 전제로 NPT 가입을 비준하였다: ①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는 국제조약을 체결함, ②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핵물질은 우크라이나의 資産이며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함, ③核國의 경제·군사적 압력은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NPT 가입을 재고하도록 만드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될 것임.⁴¹⁾ 우크라이나와 북한은 핵을 담보로 반대급부를 얻어내기 위해 협상을 하는 유사한 행태를 보여주었다. 한국은 인류의 안전을 담보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국제사회에서 다시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NPT와 「START I」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40) 1994년 1월 14일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國의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모임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핵보유 포기 및 NPT 가입을 조건으로 美·러 양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안전보장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Trilateral Statement by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Ukraine, *Arms Control Today*, vol. 24, no. 1 (January/February 1994), pp. 21~23.

41) *Korea Herald*, 18 November 1994. 우크라이나의 NPT 가입과 「START I」은 1994년 12월 5일 CSCE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효되었다.

소련이 보유한 핵무기와 핵기술의 외부 유출은 소련 붕괴 이후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우려는 핵무기 감축으로 소련의 핵과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연방정부의 핵무기 통제가 약화됨으로써 핵무기와 제조기술 및 관련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증대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독일에서 핵물질 밀수사건이 발각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⁴²⁾ 특히 1994년 8월 17일 독일 하원 무기통제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제3세계 비핵국들의 핵물질 밀거래 실태가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 게르스터(Johannes Gerster) 무기통제위원회 위원장은 독일내 불법 플루토늄의 구입선은 「개인이나 테러단체」가 아닌 「국가」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북한 핵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 큰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⁴³⁾

북한의 핵문제는 北·美間의 합의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북한 핵활동이 동결된 상태이고 이제 韓·美 양국은 과거의 핵 의혹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활동의 현재와 미래가 동결됐다는 것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것 뿐이며,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등으로부터 핵무기나 핵물질을

42) "Proliferation formula for terror," *Time*, 29 August 1994, pp. 17~21.

43) 「한국일보」, 1994년 8월 20일; *Korea Herald*, 20 August 1994.

밀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 발생한 상황으로 볼 때, 그 실현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현단계에서 한국은 과거의 핵의혹 해소보다는 북한의 핵물질 밀수 기도에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북한은 소련과 원자력분야에서 오랫동안 교류해 왔으며 관련 학자들간의 친분도 두터울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우회경로를 통한 북한의 핵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핵물질과 핵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핵물질 유출 문제를 전담하여 감시·수사하는 국제조직의 창설을 제의한다.⁴⁴⁾ 이러한 조직의 설립이 어려울 경우 각국이 이미 가동하고 있는 감시기구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⁴⁵⁾ 둘째, 불법으로 유출된 핵물질·기술의 습득을 시도한 비핵국들에 대해 유엔차원의 제재조치를

44) 러시아 에너지부는 핵물질의 밀매행위를 근절하고 통제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IAEA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東亞日報」, 1994년 9월 7일.

45) 이와 관련, 1994년 11월 2~3일 46개국의 전문가 100여명이 IAEA에 모여 핵물질 밀거래 근절대책을 논의하였다. 키드(David Kyd) IAEA 대변인은 同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핵물질 밀거래를 근원부터 퇴치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IAEA는 각국의 핵물질 산정 및 방호체제 개선에 협력할 것과 밀거래 탐지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감시요원의 훈련 및 과전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IAEA는 핵물질의 국제거래를 기록·분석하고 밀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은행」(data bank)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朝鮮日報」, 1994년 11월 5일; Korea Herald, 5 November 1994.

강화한다. 이 방안은 비핵국들의 평화적 원자력활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건에서는 평화적 원자력활동이 마땅히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불법 유출된 핵물질과 기술은 투명성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히 규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합법적 테두리내에서의 경제활동은 활성화하되 탈세와 음성적인 경제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볼 수 있다. 셋째, 핵물질·기술의 불법 유출을 인명살상과 유사한 정도의 중범죄로 취급하여 의도적으로 관련된 사람이나 조직에 대한 형벌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각국이 국내법을 정비한다.

7. 「核實驗全面禁止條約」(CTBT) 締結

CTBT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핵실험 실시장소와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현존하는 핵실험 규제조약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핵실험을 규제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

첫째, 「핵실험부분금지조약」(LTBT) 이다. 「핵실험부분금지조약」은 1963년 7월 25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되었으며 1963년 10월 10일 발효되었고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다. 미국, 소련, 영국, 일본, 남한 등 120개국이 가입하였다(북한과 중국은 불참). 핵실험부분금지조약은 대기권, 대기권밖 및 해저에서의 핵무기 실험이나 핵폭발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하핵실험

의 경우에도 핵폭발을 실행한 국가의 국경선 밖으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9년 4월, LTBT 총 회원국의 1/3이 조약의 수정을 제의하는 안건을 美·英·蘇 등 3개 조약기탁국에 제출하였다. 내용은 NPT와 LTBT의 전문에 명시된 「핵실험 전면금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LTBT를 수정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수정안을 토의하기 위한 회의가 1991년 1월 7일부터 2주간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LTBT에 대한 수정은 3개 조약기탁국(미국, 영국, 소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부시 행정부가 수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수정제의는 부결되었다.

둘째, 「지하핵실험제한조약」(TTBT)이다. 지하핵실험제한조약은 1974년 7월 3일 모스크바에서 美·蘇間에 체결되었다. 유효기간은 연장되거나 다른 조약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5년이다. 美·蘇 양국은 지하핵실험제한조약을 통해서 1976년 3월 31일부로 150kt을 초과하는 지하 핵무기실험을 금지하고 평화적 목적의 지하 핵실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TTBT의 정신을 위반하는 「조약회피」(treaty circumvention)를 막기 위해서 평화적 목적의 지하핵실험을 규제하는 조약이 체결되어야 했으므로 미행정부는 TTBT 체결후 바로 의회의 비준을 요청하지 않았다.

셋째, 「평화적 지하핵폭발에 관한 조약」(The Peaceful Nuclear Explosions Treaty: PNET)으로서 1976년 5월 28

일 美·蘇間에 체결되었다. 유효기간은 연장되거나 다른 조약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5년이다. 1976년 3월 31일 이후에 실시하는 모든 평화적 목적의 지하 핵폭발도 150kt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폭발사이의 간격이 5초 이하인 연쇄폭발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합계폭발의 강도가 역시 150kt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6년 PNET가 체결되었지만 당시 선거유세중이었던 포드 대통령은 이 조약들의 비준이 정치문제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비준요청에 소극적이었다. 반면에 카터 행정부는 TTBT와 PNET를 무용지물로 만들게 되는 핵실험 전면금지협상에 중점을 둠으로써 두 조약의 비준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레이건 행정부는 핵실험을 제한하는 사실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했고 따라서 두 조약의 비준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후 부시와 고르바초프간의 워싱턴 정상회담(1990년 5월 31일~6월 3일)에서 TTBT와 LTBT의 검증의정서가 조인되었고, 곧이어 비준을 거쳐 발효되었다.

이상의 세가지 핵실험규제조약들이 핵확산 방지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였다. 대부분의 비핵국들은 핵실험을 실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핵실험규제조약은 소수의 핵국에 대해서만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조약이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마음껏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TTBT의 회원국도 미·소뿐이며, 중국은 LTBT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상의 세가지 핵실험규제조약은 핵의 수직적 확산방지에 전혀 기여

하지 못하였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핵국들은 CTBT 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를 감안할 때, 핵실험을 부분적으로 규제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CTBT만이 NPT 연장회의에서 비핵국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⁴⁶⁾

제4차 NPT 평가회의에서 최종선언문 채택을 무산시킨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CTBT 문제는 NPT 연장회의를 앞둔 현 시점에서 비핵국들이 NPT 연장의 댓가로 핵국들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그간 CTBT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미국이 NPT 연장회의 이전인 1994년 4월까지 CTBT를 체결할 것을 주장하는⁴⁷⁾ 등 CTBT 조기타결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CTBT와 관련된 최근의 상황과 핵국들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겠다.

미국은 제4차 NPT 평가회의까지만 해도 핵무기의 안전성, 내구성,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핵실험의 실시가 불가피하며 CTBT는 장기적으로 실현해야 할 목표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⁴⁸⁾ 그러나 부시행정부 말기부터 CTBT에 대해 보다

46) Mohamed Shaker, "The 1995 NPT Extension Conference: a rejoinder," *Security Dialogue* (December 1992), vol. 23, no. 4, p. 34.

47) 홀럼(John Holm) 美군축처장의 제네바 군축회의 발언, 「한겨레신문」, 1994년 8월 6일.

48) David Fischer and Harald Müller, "The fourth review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p. 567.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미국은 1992년에 핵실험금지와 관련한 법안을 채택하였다(1992년 8월 3일 미 상원을 통과하고 10월 2일 부시대통령이 서명함). 同 법안은 핵실험 전면금지를 위한 다음과 같은 3단계 조치를 담고 있다:⁴⁹⁾ ①1992년 10월 1일부터 1993년 6월 30일까지 핵실험을 전면 중지함, ②1993년 7월 1일부터 1996년 9월 30일까지 총 15회의 핵실험을 허용함, ③1996년 10월 1일부터 다른 국가의 핵실험이 국가안보에 유해하다고 대통령이 확인하지 않는 한 핵실험을 전면금지하고 러시아와 CTBT 협상을 재개함. 1993년 7월 3일 클린턴대통령은 다른 국가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미국은 1994년 9월 30일까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1994년 3월 핵실험 유예기간을 다시 1년간 연장하였다.⁵⁰⁾

영국은 자체 핵실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네바다주의 핵실험장소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핵실험 금지 정책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으며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을 지지해 오고 있다.

프랑스는 1992년 4월 8일 같은 해 말까지 핵실험을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미테랑대통령은 1993년 1월 13일 미국과 러시아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을

49) Archelaus Turrentine, "The dynamics of the NPT extension decision," p. 3.

50) 「中央日報」, 1994년 3월 16일.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내부에서는 핵실험 금지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레오타르(François Léotard) 국방장관은 1994년 1월 10일 프랑스가 빨리 핵실험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⁵¹⁾ 차기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였다.⁵²⁾ 그러나 미테랑대통령은 자신의 재임기간인 1995년 5월까지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후임자도 핵실험 금지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⁵³⁾

러시아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1991년 10월 1년간의 핵실험 중지를 선언하였고 1992년 10월 19일 엘친대통령이 1993년 6월 말까지 핵실험 중지를 연장한 바 있다. 러시아는 이후에도 핵실험 중지정책을 계속 견지해 오고 있다. 1993년 4월에는 밴쿠버 정상회담에서 美·러가 핵실험 전면금지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자간 협상을 조속히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5개 핵국중 핵실험 전면금지에 가장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핵전력이 다른 핵국들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중국은 핵무기 현대화를 위해 핵실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994년 10월 7일 41번째의 핵실험을 강행하였다.⁵⁴⁾ 중국이 1993년

51) 「世界日報」, 1994년 1월 11일.

52) 「世界日報」, 1994년 2월 25일.

53) 「東亞日報」, 1994년 5월 7일.

54) 지금까지 각국이 실시한 핵실험 회수는 다음과 같다: 미국 94회, 러시아 71회, 프랑스 192회, 영국 44회, 중국 41회, 인도 1회.

10월 5일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발표한 성명은 중국이 견지하는 핵정책의 골간을 담고 있다.⁵⁵⁾ 중국은 이 성명에서 CTBT를 항상 지지해 왔으며 이 조약을 1996년 말까지 체결하기 위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CTBT가 체결·발효된 이후에 이를 준수하고 더 이상의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당분간은 핵실험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錢其琛 외교부장은 1994년 9월 4일 모스크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1996년까지 핵실험 전면금지와 관련된 협의를 끝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⁵⁶⁾ 그러나 이를 중국이 CTBT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1996년까지 핵실험금지에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중국은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진행 중인 CTBT 협상에서 과학연구와 토목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평화적 핵실험을 인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CTBT 체결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⁵⁷⁾ 또한 중국 외교부대변인 吳建民은 기타 핵국들이 핵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경우 CTBT에 서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⁵⁸⁾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진행 중인 CTBT 협상은 주요 핵국들의 적극적인 태도에 힘입어 1994년 8월 말 조약의 기본골격

55) *Statement by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Question of Nuclear Testing*, 5 October 1993.

56) 「中央日報」, 1994년 9월 5일.

57) 「中央日報」, 1994년 9월 2일.

58) 「한국일보」, 1994년 9월 11일.

에 합의하였다.⁵⁹⁾ 이제 1995년 4월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끝내어 NPT 연장회의 이전에 CTBT 문안을 완성할 예정으로 막바지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비핵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CTBT 체결이 NPT 연장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제4차 NPT 평가회의에서 한국이 CTBT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효과적인 검증방안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은⁶⁰⁾ 한국의 입장을 적절히 대변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 앞으로 한국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칙을 토대로 CTBT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첫째, CTBT는 신무기 개발, 기존무기의 현대화 및 量産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적인 핵비확산 조치이므로 조속히 체결되어야 하며 모든 NPT 당사국들이 CTBT에 가입해야 한다.

둘째, CTBT는 일체의 핵폭발을 금지해야 한다. 이는 핵국들의 평화적 핵폭발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일부에서는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소규모 핵폭발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증기술이 발달하였고 기타 부수적인 검증방안으로 검증능력을 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⁶¹⁾ 이와 관련하여,

59) 「中央日報」, 1994년 9월 1일.

60)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核武器 非擴散條約 第4次 評價會議 參加結果 報告書」, p. 12.

61) "Assuring the success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extension conference," *Disarmament Times*, May 1994, p. 2.

CTBT 조약문안에서 「핵실험」을 정의하면서 소규모 핵폭발을 허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핵실험」에 대한 정의없이 NPT에서 사용된 「핵폭발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의 실험을 금지하면 CTBT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다.⁶²⁾

8. 軍事用 核物質의 生産 禁止 및 透明性 提高

군사용 핵물질의 생산중단 문제는 아이젠하워가 1956년 3월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중단」(cut off)을 제의한 이래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제2차 NPT 평가회의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 제조용 핵물질 생산을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하자는데 동의한 바 있다. 핵무기 감축이 사후대책이라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핵물질의 생산중단은 확산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보다 근원적인措置라고 볼 수 있다.

군사용 핵물질 생산을 금지하는 조약의 체결은 한국이 강력히 요구해야 할 문제로서 실현가능성도 있는 방안이다. 우선 미국은 1964년부터 고농축우라늄의 생산을 중단해 왔고 1988년부터는 플루토늄의 생산도 중단하였다. 또한 1992년 7월 13일 부시대통령의 「핵비확산 정책」(nonproliferation ini-

62) George Bunn and Roland Timerbaev, "Avoiding the 'definition' pitfall to a comprehensive test ban," *Arms Control Today*, vol. 23, no. 4 (May 1993), p. 15.

tiative)을 통해 핵무기 제조용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식 천명하였다. 클린턴대통령은 1993년 9월 27일 군사용 핵물질 생산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다. 러시아도 미국과 유사한 정책을 표방하였다. 제4차 NPT 평가회의에서 당시 소련의 페트로프스키(Vladimir Petrovskiy) 외무차관은 우선 美·蘇 양국이 군사용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받으면서 同 조약을 다자간 조약으로 확대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⁶³⁾ 1994년 6월 21~23일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러시아는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 3기의 가동을 2000년까지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⁶⁴⁾ 중국의 전기침 외교부장도 1994년 10월 크리스토퍼 미국 외무장관과 서명한 공동선언문에서 핵무기 제조용 핵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조약의 조속한 체결을 약속한 바 있다.⁶⁵⁾ 한편 1993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결의안 48/75L호) 1994년부터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기조합의서」(mandate)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군사용 핵물질의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군사

63) David Fischer and Harald Müller, "The fourth review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p. 569.

64) Dunbar Lockwood, "U.S., Russia agree to phase-out of nuclear weapon reactors," *Arms Control Today*, vol. 24, no. 6 (July/August 1994), p. 24.

65) Patrick Tyler, "China's nuclear puzzle: first, who's the targe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7 October 1994.

용 핵물질의 총량을 파악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사용 핵물질의 생산금지와 재고파악은 하나의 조치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군사용 핵물질의 생산금지와 투명성 제고를 포괄하는 국제협약의 조속한 체결을 주장해야 한다. 특히 독립국가연합에서 핵물질·기술 유출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도 군사용 핵물질의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⁶⁶⁾ (1) 美·러 양국이 핵무기와 핵물질의 재고를 공개하고, (2) 상호 협력하에 이를 검증하며, (3) 무기용 핵물질의 생산을 중단하고, (4) 재고를 줄여 나감.

군사용 핵물질의 생산중단과 투명성 제고는 수직적 핵확산 방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군사용 핵물질의 전체량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평적 핵확산 방지에도 공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핵국들이 핵무기 생산시설을 폐쇄한다 하더라도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시설에서 군사용 핵물질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5개 핵국의 평화적 원자력시설과 핵물질에 대해서도 IAEA의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용 핵물질의 생산중단 및 재고공개와 핵국들에 대한 철저한 IAEA

66) Executive Summary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ort, *Arms Control Today*, vol. 24, no. 2 (March 1994), p. 27.

사찰이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므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9. 非核國에 대한 安全保障 強化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고 NPT에 가입한 비핵국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NPT 협상 당시부터 비핵국들은 안전보장을 요구했으며 핵국들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핵국들은 「적극적 안전보장」과 「소극적 안전보장」을 통해 비핵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으나 비핵국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하였다. 따라서 네차레의 NPT 평가회의에서는 보다 강력한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비핵국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탈냉전 이후 東·西 양진영의 대결구도가 무너지면서 비핵국들에 대한 안전보장 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기존의 안전보장 정책을 검토하고 한국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적극적 안전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

1968년 NPT가 체결되기 바로 전에, 미국, 소련, 영국 등 3개국은 유엔안보리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⁶⁷⁾

67) Lewis Dunn, *Containing Nuclear Proliferation*, Adelphi Paper 263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91), p. 43.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으로서 유엔헌장에 의거하여 NPT에 가입한 비핵국이 핵무기가 사용되는 침략의 대상이 되거나 침략 위협을 받을 경우 해당 비핵국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안보리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

이러한 적극적 안전보장은 NPT 체결 직전인 1968년 6월 19일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255호를 통해 공식화되었다. 이에 대해 많은 비핵국들이 적극적 안전보장은 피공격국에 대한 지원의무를 규정한 유엔헌장의 내용과 다를 바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더욱이 3개국(미국, 영국, 프랑스)이 발표한 내용은 단지 의사표명일 뿐이었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핵국들의 거부권에 구속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⁶⁸⁾ 또한 적극적 안전보장은 핵공격이나 공격위협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일부 제3세계 국가들은 해당국의 도움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핵국들이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였다.⁶⁹⁾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1975년의 제1차 NPT 평가회의 이후 적극적 안전보장에 불만을 가진 비핵국들은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금지하

68) Aga Shahi, "Defense, disarmament, and collective security," *Nonoffensive Defense: A Global Perspective* (New York: UNIDIR, 1990), p. 184.

69) Frank Barnaby et al.,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related to disarmament," pp. 383~384.

는 구체적인 소극적 안전보장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⁷⁰⁾ 비핵국들의 소극적 안전보장 제안에 대해 핵국들은 대체로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미국은 제1차 NPT 평가회의에서 소극적 안전보장이 전세계적으로 취해질 경우 핵확산금지에 기여하지 못하고 핵국의 보호를 받는 비핵국들의 핵무장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일부 비핵국들도 이에 동조하였다.⁷¹⁾ 핵국들의 부정적 반응은 핵불사용 약속이 핵국들의 핵무기 사용 선택권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핵무기의 정치적·전략적 가치를 떨어뜨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核國들은 소극적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각종 조건, 제한 그리고 예외규정을 둔 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소련은 “핵무기의 생산과 보유를 포기하고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은” 비핵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⁷²⁾ 반면에 러시아는 최근들어 이러한 핵선제불사용 정책에서 다소 후퇴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러시아 국방부는 1993년 11월 2일 채택한 러시아 군사교리에는 과거 소련의 핵선제불사용 선언이 포함

70) William Epstein,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A United Nations Perspective* (Cambridge, Massachusetts: Gunn & Hain, Publishers, 1984), p. 30.

71) 예를 들어 한국은 소극적 안전보장의 임의적, 무차별적 적용은 오히려 안전보장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의 이러한 발언은 동북아에서 핵무기 사용위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Jozef Goldblat and Macha Levinson, “The second NPT review conference,” p. 332.

72) UN document A/S-10/PV.5.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⁷³⁾

미국은 “NPT에 가입했거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유사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비핵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된다고 선언하였다.⁷⁴⁾ 미국 영토나 미군 및 미국의 동맹국이 “核國과 동맹관계에 있거나 지원을 받는” 非核國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 영국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⁷⁵⁾

프랑스의 입장은 “비핵지대의 구성원인” 비핵국에 대해서만 협상을 통해 핵불사용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⁷⁶⁾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CD)에서는 핵국들의 소극적 안전보장에 포함된 조건들을 없애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⁷⁷⁾

중국만이 조건없는 핵불사용 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1964년 이후 중국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국이 핵무기를 최초로 사용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중국은 또한 비핵국이나 비핵지대 지역에 대해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무조건적인 핵선제불사용과

73) Serge Schmemmann, “Russia drops pledge of no first use of atom arms,” *New York Times*, 4 November 1993, p. A8.

74) *UN document A/S-10/AC.1/30*.

75) *UN document A/S-10/PV.26*.

76) *UN document A/S-10/PV.27*.

77) Aga Shahi, “Defense, disarmament, and collective security,” p. 184.

비핵국과 비핵지대에 대해 핵무기 사용과 사용위협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체결할 것을 다른 核國들에게 제의하고 있다.⁷⁸⁾

「포괄적 안전보장 의정서」 요구

중국은 非核國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 정책을 확고히 견지해 왔으나 적극적 안전보장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프랑스 역시 적극적 안전보장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중국과 프랑스가 각각 1992년 3월과 8월에 NPT에 가입했으므로 이제는 양국이 적극적 안전보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중국과 프랑스의 참여는 기존의 적극적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적극적 안전보장 선언은 한국이 핵무기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한국에 대한 지원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사용을 억제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NPT 연장회의를 앞두고 적극적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소극적 안전보장을 보완하라는 비핵국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은 새로운 방식의 안전보장을 NPT의 부속의정서로 채택할 것을 제의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안전보장 개념은 기존의 안전보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그 대상은 제4차 NPT 평가회의에서 개발도상국들이 강력히 주장했듯이,

78) *Statement by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Question of Nuclear Testing*, 5 October 1993.

NPT 가입국으로 한정함으로써 NPT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은 美·러·英·佛·中 등 5개 核國들이 「포괄적 안전보장 의정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약속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1) 無條件 核不使用: 5개 핵국은 NPT에 가입한 비핵국에 대해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위협을 하지 않는다.
- (2) 核武器의 地域的 擴散 禁止: 5개 핵국은 비핵국의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저장하지 않는다.
- (3) 非核國에 대한 安保支援: 5개 핵국이외의 새로운 핵국으로부터 핵무기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받는 비핵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엔안보리는 공격측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포함하여 즉각적인 지원 조치를 취한다.

10. 非核地帶 創設

제1차 NPT 평가회의 이후 국제적으로 인정된 비핵지대 창설이 핵무기 확산방지의 효과적인 수단이며 해당지역 국가들의 안보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비핵지대화 조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핵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핵국들이 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다

만 제3차 평가회의 최종선언문에서 비핵지대 창설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을 일부 국가들이 비핵지대 창설에 반대하는 근거로 이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1975년 「군축위원회회의」(CCD)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바에 따르면, 비핵지대를 창설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⁷⁹⁾ 첫째, 해당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둘째, 해당지역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셋째, 해당지역 국가가 비핵지대 창설을 주도해야 하며 각국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조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효과적인 검증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을 통해 비핵지대 당사국들의 경제·과학·기술 발전을 증진해야 한다. 여섯째, 조약의 유효기간은 무기 한이어야 한다.

한국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거하여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약속한 만큼 국제적인 비핵지대 창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핵국들이 비핵지대 설치에 협력하고 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한다는 것은 他國의 영토에 대한 핵무기 배치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

79) Jozef Goldblat, "Nuclear weapon-free zones: lessons from the existing agreements," in Darryl Howlett and John Simpson, eds., *East Asia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Southampton: Programme for Promoting Nuclear Non-Proliferation, 1993), p. 56.

국이 「포괄적 안전보장 의정서」 제2항에서 제의한 핵무기의 지역적 확산 금지와 비핵지대 창설 촉구는 상호 연계성을 가진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경우 북한이 과거에 주장했던 비핵지대화 논리를 다시 제기하여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여기서는 비핵지대화를 주장하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한국의 대처방안에 대해 논하겠다.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지대화 주장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구체적 실천조치의 일환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제의하면서 시작되었다.⁸⁰⁾ 이후 북한은 남북한간 신뢰구축과 군축방안을 제의하면서 항상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문제를 포함시켰다.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한국보다는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미국의 핵위협을 겨냥한 전략이었다고 보여진다. 그 이유는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비핵지대화(案)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분명해진다.⁸¹⁾

첫째, 기존의 「중남미비핵지대화조약」이나 「남태평양비핵지대화조약」과 달리, 북한의 비핵지대화 제안은 규제사항이 훨씬 포괄적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비핵지대화 조약이 규정한 핵무기의 실험·생산·반입·보유·사용 금지 등의 일반적인 非核原則과 더불어 북한의 비핵지대화 제안은 핵무기 탐

80) 「로동신문」, 1980년 10월 11일.

81) 전성훈, 「南北 核協商 現況과 展望」, pp. 133~134.

재가 가능한 항공기와 함선의 한반도 통과와 방문도 금지하고 있다.⁸²⁾ 「남태평양비핵지대화조약」은 핵탑재 가능 항공기와 함선의 통과·방문 허용 문제를 조약가맹국이 결정하도록 일임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만이 국내법으로 핵무장·핵추진 함정이 자국 영해에 들어오거나 핵무기 탑재 항공기가 영토에 착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남미비핵지대화조약」의 경우 통과·방문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으나 「중남미비핵화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Denuclearization of Latin America)가 1967년에 내린 해석에 따라 통과·방문의 허용 여부가 각국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⁸³⁾

둘째, 북한의 비핵지대화 제안은 핵무기의 저장·배치, 핵우산을 보장하는 조약의 체결 및 핵무기가 동원되는 군사훈련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은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와 韓·美 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폐기와 주한미군의 완전철수까지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은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위협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할 것과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지위를 주변의 핵

82)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제시된 북한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 연형묵 총리 기초연설문, 「로동신문」, 1991년 10월 24일.

83) Jozef Goldblat, "Nuclear weapon-free zones: lessons from the existing agreement," p. 57.

무기 보유국으로부터 국제적으로 보장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법적 보장을 함께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만을 겨냥한 요구사항은 아니다.

1991년 12월 31일 「비핵화 공동선언」이 타결되면서 북한이 기존의 비핵지대화 입장을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었다. 1991년 9월 27일 부시대통령의 전술핵 감축선언과 같은해 12월 18일 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내 핵부재 선언으로 주한미군의 핵철수가 사실상 확인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 협상에서 그들이 종래 주장해 온 핵우산보장협정 금지나 핵무기 탑재가능한 비행기나 함선의 출입·통과·방문 금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제안 명칭에도 「비핵지대화」 대신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은 전술적인 변화였을 뿐 비핵지대화 주장을 통해 성취하려던 전략적 목표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후의 북한태도를 통해 입증되었다. 북한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협상에서 외부로부터 강요된 핵위협을 공동으로 저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담보를 받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의하였다. 핵통제공동위원회 출범 이후의 협상에서도 북한은 외국군대의 핵무기 저장·배비, 영토 출입 금지, 핵무기 사용을 가상한 군사훈련·작전 금지, 핵무기지원 을 전제로 한 협정체결 금지 등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시

철회했던 문제들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비핵지대화」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그 성격과 범위에 있어 현재의 「비핵화 공동선언」보다 매우 포괄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이 실현될 경우 韓·美 군사동맹관계의 약화는 물론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이 현재로서는 고려할 수 없다. 한국이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 관계가 진정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즉 북한이 체제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하면서 대남 적화노선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남북간 화해·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이 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11. NPT 效力延長 類型 및 期間

NPT 효력연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NPT의 유효기간이 1995년으로 만료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간디(Rajiv Gandhi) 수상은 1988년 6월 9일 「유엔총회 제3차 군축특별회의」(Third Special Session for Disarmament of the UN General Assembly)에서

“1995년에 만료되는 NPT를 대체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1990년 IAEA 총회 임시의장국이었던 한국도 “1995년 만기에 앞서 매우 중요한 검토가 예정되어 있는 NPT에 관하여”라고 발언하였다.⁸⁴⁾ 그러나 NPT 규정에 따르면 1995년도 연장회의에서 해야 할 일은 NPT의 「연장기간을 결정」하는 것 뿐이다. 즉 조약이 “무기한으로 지속될 것인지 또는 한번의 일정기간이나 여러번의 일정기간을 반복하면서 연장될 것인지”(continue in force indefinitely, or shall be extended for an additional fixed period or periods)를 결정하는 것이다.⁸⁵⁾ 물론 연장기간은 NPT의 이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겠지만 1995년 연장회의의 임무가 조약의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1995년 연장회의에서 추후 연장기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도 NPT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NPT 협상역사와 국제관례 및 제 X조 2항의 문안을 검토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⁸⁶⁾ 만약 1995년 연

84) David Fischer, “Article X.2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the nature of its 1995 Extension Conference,” *Options & Opportunities: the NPT Extension Conference of 1995* (Southampton: Programme for Promoting Nuclear Non-Proliferation, 1991), p. 39. note 1.

85) NPT 제 X조 2항.

86) George Bunn, “Procedural issues—the nature of the review/extension conference: implications for the extension decision,” Draft paper for PPNN, Stanford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Arms Control, May 1994, p. 10.

장회의에서 효력연장 기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연장회의를 정회하고 합의도출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며, 그동안 NPT는 유효하게 됨.

이와 유사한 예로서 Euratom의 사례를 들 수 있다.⁸⁷⁾ Euratom 조약은 「Euratom 공급위원회」(Euratom Supply Agency)가 Euratom 회원국들과의 핵물질 공급계약을 독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Euratom 조약의 제Ⅵ장 76조는 이러한 계약에 의한 공급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Euratom 위원회」(Euratom Council)에 부여하면서 조약발효 7년후 Euratom 위원회가 기존 공급조항의 유효함을 재확인해야 하며 이에 실패할 경우 새로운 공급조항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964년 12월 31일 7년이 만기되었을 때, Euratom 위원회는 기존 공급조항을 재확인하거나 새로운 공급조항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더 이상 공급조항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며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uratom은 이 문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Euratom 위원회가 기존 공급계약의 유효함을 재확인하거나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할 때까지 기존 공급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러한 판결은 Euratom 조약의 문

87) George Bunn and Charles Van Doren, "Options for extension of the NPT: the intention of the drafters of article X.2," *Options & Opportunities: the NPT Extension Conference of 1995* (Southampton: Programme for Promoting Nuclear Non-Proliferation, 1991), pp. 9~10.

안과 협상과정, 기존 공급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法的으로 확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NPT도 조약의 문안과 협상과정을 고려하고 핵물질 공급계약과 IAEA 사찰의 연속성 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효력연장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결정된 효력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NPT의 유효기간 연장은 비핵국이 핵국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이다. NPT 체제의 유지를 원하는 핵국과 원자력선진국들은 일부 국가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NPT를 조건없이 무기한 연장한다는 데 합의하였다.⁸⁸⁾ 반면에 비핵국들은 NPT 연장에 앞서 CTBT 체결, 보다 과감한 핵군축 실현 등을 요구하고 있다. NPT 연장회의에서는 NPT의 유효기간을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보장하려는 핵국 및 원자력선진국들과 NPT 효력연장의 댓가로 NPT의 차별성을 해소하는 등 보다 많은 반대급부를 얻어내려는 비핵국들간의

88) 1993년 6월 10일 아테네에서 개최된 North Atlantic Council 장관회담 성명서, *NATO Review* (June 1993), pp. 31~33. 1993년 7월 8일 도쿄 G-7 정상회담에서 선진 7개국 정상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We reiterate the objectives of universal adherence to the NPT as well as the Treaty's indefinite extension in 1995 and nuclear arms reduction," 이 회담에 앞서 일본에서는 NPT 무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G-7 정상회담 합의서에 핵군축 문제가 언급된 것은 NPT 무기한 연장에 대한 일본의 동의를 얻기내기 위해서 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eorge Bunn, "The NPT and its extension in 1995," Draft paper for CISAC, Stanford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Arms Control, November 1993, p. 6, note 7.

참여한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NPT 효력연장의 방법은 제X조 2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가지가 있다. 첫째, 유효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원자력선진국들이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비핵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다. 우선 현재의 NPT 체제를 영구화함으로써 기존의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NPT의 차별성이 해소되지 않고 핵군축 실현을 위한 중요한 압력수단이 상실됨으로써 핵국의 핵무기 보유를 영구히 합법화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무기한 연장은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 및 개발, 핵물질의 공급보장, 핵확산방지, 군축, 안전보장 등 제 측면에서 비핵국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⁸⁹⁾ 또한 NPT의 문제점이 해소될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비핵국들의 NPT 탈퇴사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NPT 효력연장을 카드로 기존의 NPT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NPT를 국익에 유리하게 활용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무기한 연장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둘째, 한번의 일정기간만 연장하는 것이다. 이는 핵국들의 핵군축 특히 CTBT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방안이다. 즉 1995년 연장회의에서는 단기간(예: 2

89)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 국제협력 정책연구: NPT 연장 대응전략과 원자력 손해배상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KAERI/RR-1288/93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 1993년 12월), p. 51.

년 정도) 연장하여 CTBT 체결시간을 주고 同 기간중 CTBT가 체결되면 연장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장기 연장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의 문제점은 NPT 유효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연장회의는 “단 한번”(a conference) 열릴 수 있도록 NPT 제 X조 2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997년에 추가 연장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조약을 수정하지 않는 한 추가 연장회의의 개최는 불가능한 것이다.⁹⁰⁾ 1995년 연장회의에서 한번의 일정기간만 연장하게 되면 NPT는 同 기간 후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NPT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한번의 연장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연장회의는 개최하지 않되 1995년도 연장회의에서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일단 단기간 연장하여 CTBT 체결 및 핵군축 상황을 지켜보고 만족스러우면 추가로(혹은 무기한) 연장한다고 합의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NPT의 협상역사를 검토해 볼 때, 효력연장에 조건을 첨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주장이다.⁹¹⁾ 효력연장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기존 NPT 조약의 요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약

90) George Bunn and Charles Van Doren, “Options for extension of the NPT: the intention of the drafters of article X.2,” p. 10.

91) Ibid., pp. 12~13; David Fischer, “Article X.2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the nature of its 1995 Extension Conference,” p. 30.

의 수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또한 비핵국의 요구사항이 만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장회의의 재개최가 불가피할 것이나⁹²⁾ 이는 추가 연장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셋째, 동일 기간을 반복하면서 연장하되 매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기존의 평가회의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여 유효기간의 반복을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동일 기간은 NPT 협상 당시 美·蘇가 이태리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여 「일정기간 반복」(addittional fixed periods)을 결정했다는 점에 근거한다.⁹³⁾ 이 방안은 반복회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조약당사국들의 합의하에 NPT가 무기한 지속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다. 매 기간 종료시 개최되는 회의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이는 이미 1995년에 결정되었음) 단지 「자동반복의 중단」(halt automatic renewal) 여부를 결정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연장회의라고 볼 수 없다.

92) George Bunn, "The NPT and its extension in 1995," p. 8.

93) 당시 이태리는 NPT 효력을 무기한으로 하자는 美·蘇의 주장에 대응하여, 조약이 일정기간을 반복하면서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되 매 기간 종료시 각국은 탈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의하였다. 美·蘇는 이태리의 제안 중 일정기간을 반복한다는 점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개별국가의 탈퇴권한을 인정하는 대신 일정기간을 한번만 반복함으로써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여러차례 일정기간을 반복하는 경우 특정기간이 만료된 후 「반복을 중단」(non-renewal)함으로써 조약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집단탈퇴 방식을 도입하였다. George Bunn, "Procedural issues—the nature of the review/extension conference: implications for the extension decision," pp. 5~9.

이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1995년도 연장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해야 할 것이다.⁹⁴⁾ 첫째, 반복되는 동일기간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최초 반복기간의 개시시점이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자동반복의 중단」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평가회의나 유엔총회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회의를 소집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넷째, 조약가맹국들이 「자동반복의 중단」을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회의개최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회의개최를 발의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를 결정해야 한다. 다섯째, 이러한 발의가 유효하기 위해 반복기간 만료 며칠전까지 제안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발의제출 시점도 결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자동반복의 중단」에 필요한 정족수를 결정해야 한다.

이상의 여섯가지 문제에 대해 한국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반복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다. NPT 체제의 지속적인 유지와 핵국들의 핵군축 노력을 연계시키기 위해 「START II」에 의거하여 美·러가 3,000~3,500개로 핵탄두

94) John Simpson, "The NPT Extension Conference of 1995," in Darryl Howlett and John Simpson, eds., *East Asia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Southampton: Programme for Promoting Nuclear Non-Proliferation, 1993), p. 91; George Bunn, "Procedural issues—the nature of the review/extension conference: implications for the extension decision," p. 9.

를 감축하고 미국이 최근 검토가 끝난 Nuclear Posture Review에 따라 부시행정부의 핵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⁹⁵⁾ 2003년을 중심으로 제1차 연장시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同 10년 동안에 CTBT가 체결·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후 10년 주기로 반복기간의 중단여부를 계속 검토하면서 추가적인 핵군축을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만약 핵국들이 강력히 반발할 경우 최초 발효후 연장회의 개최까지의 기간인 25년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최초의 반복 개시시점은 가능하면 처음에 합의한 25년이 만료되는 다음날 즉 1995년 3월 6일로 선택하여 NPT 효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셋째, 비용문제를 고려하여 별도의 회의보다는 기존의 평가 회의를 이용하도록 한다.

넷째, 조약 수정의 사례를 감안할 때, 조약가맹국 1/3의 발의를 통해 반복중단에 대한 검토여부를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발의제출 기간은 몇차례의 준비회의가 필요함을 감안할 때, 최소한 1년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동반복의 중단은 NPT 체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조약가맹국 2/3 이상의 찬성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95) Jeffrey Smith, "U.S. keeps nuclear guard against Russia," *Washington Post*, 22 September 1994.

〈표 4-1: NPT 延長會議에 대비한 韓國의 對策〉

〈基本立場〉

1. NPT 체제는 유지되어야 하나 차별성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2.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원빈국들의 평화적 원자력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함.
3.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불법화하는 국제규범이 수립되어야 하며 완전한 핵군축이 달성되어야 함.
4. 「비핵화 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남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평화적 원자력이용의 기반을 다지고 핵군축 실현을 위한 외교적 공세를 강화함.

〈細部對策〉

1. 남북한에 대한 핵무장 의혹 해소대책
 - 연장회의 참가국들에게 한국의 「원자력통제기술센터」를 통한 국내사찰 강화와 남북한 상호사찰 실현 노력 등 남북한의 핵투명성 제고노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함.
 - 연장회의 석상에서 남북한이 앞으로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핵·화학·생물·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고 공동으로 선언함.

2. 주요 현안별 대책

유효기간 연장 방식 및 기간

- 유효기간 연장은 10년을 단위로 반복하여 연장하는

방식을 채택함. 핵국들의 강한 반발에 대비하여 25년을 주기로 반복연장하는 방안을 마지노선으로 준비함.

평화적 원자력이용의 활성화

- 원자력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제고되는 정도에 따라 NPT 가입국의 평화적 원자력이용을 지원하여 NPT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가는 것이 NPT 체제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함.
- 핵연료 수출국들이 NPT에 가입한 비핵국들에 대해 핵연료의 가격안정과 공급의 연속성을 구체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함.
- 지역차원의 플루토늄저장시스템, 핵연료주기센터, 핵연료은행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역차원의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요구함.
-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은 불법적 행위이며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함.

핵군축 실현 및 비핵국의 안전보장 강화

- 핵국들이 핵무기를 담보로 정치·경제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지양할 것을 촉구함.
- 핵국들이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군사전략을 재정립하도록 촉구함.
-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CTBT의 조속한 체결과 모든 NPT 당사국의 가입을 촉구함.
- 「START I, II」의 조속한 이행과 「START III」 협상을 촉구하고 향후 핵군축의 시간표 제출을 요구함.
- 군사용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재고를 공개하는 조

약의 조속한 체결을 요구함.

- 핵무기의 질적 개선을 중지하기 위해 핵국들이 「핵무기 質的 동결 의정서」를 NPT 부속의정서로 채택하도록 요구함.
- 비핵국에 대한 기존의 안전보장을 강화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괄적 안전보장 의정서」를 NPT 부속의정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함: ①NPT에 가입한 비핵국에 대해 무조건 핵무기 사용과 사용위협을 금지하는 無條件 核不使用, ②비핵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저장하지 않는 핵무기의 地域的 擴散 禁止, ③5개 핵국 이외의 새로운 핵국으로부터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위협을 받는 비핵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엔안보리가 즉각 지원하는 비핵국에 대한 安保支援.
- 포괄적 안전보장 의정서 채택이 어려울 경우 우선적으로 「무조건 핵불사용 의정서」의 채택을 관철함.

IAEA 안전조치 강화 및 원자력활동의 투명성 제고

- IAEA 사찰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의함: ①사찰대상의 확대와 보고체계의 단일화, ②사찰기준을 변경하여 査察資源이 핵개발 가능성이 큰 국가에 많이 할당되도록 조정, ③「重要量」과 「轉換時間」을 현실에 맞게 수정, ④현실성 있는 특별사찰 실시방안을 강구, ⑤자체적으로 사찰을 실시하는 지역협 의체와 협력을 강화, ⑥IAEA 사찰의 非調査的 사찰 문화를 변경, ⑦금지되지 않은 군사활동에 사용되는 핵물질에 대해 사찰실시, ⑧사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핵시설을 설계.

- 각국이 국내사찰 강화를 통해 원자력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요구함.
- Euratom, ABACC, 남북한 상호사찰 등 지역차원의 사찰을 활성화함.
-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적 원자력이용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제 구축을 제의함.
- 핵국들의 모든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대해서 IAEA 전면안전조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임의검사를 실시함.
- NPT 비가입국에 대한 원자력수출의 조건으로 IAEA 전면안전조치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함.

기 타

- 핵물질·기술의 불법유출을 방지하는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의함: ①핵물질·기술 유출 전담수사기구 창설 및 정보교환 강화, ②불법 유출된 핵물질 수입국에 대한 유엔차원의 제재실시, ③핵물질·기술 유출을 중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각국의 국내법을 정비.
- 비핵지대의 창설과 확대를 지지함.
-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남북한 관계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재고하지 않음.
- 연장회의에서 NPT의 차별성을 해소하고 허점을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함.

第 V 章 結 論

소련의 붕괴와 동구 공산정권의 몰락으로 상징되는 냉전의 종식은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탈냉전 이후의 국제관계는 대결과 분쟁보다는 대화와 협력에 바탕을 두고 군비감축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부 「問題國」(rogue state)들이 핵·화학·세균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시도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들 문제국들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기존의 체제를 보완하고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상황속에서 1991년 봄 공개적으로 제기된 북한 핵문제는 동북아의 안보와 남북대화 진전에 중대한 장애물이 되어 왔다. 북한 핵문제는 핵이 가지는 국제적 성격으로 인해 한국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이목을 한반도에 가장 많이 집중시킨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의 평화적 문제해결 노력에 힘입어 북한으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핵동결을 약속받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과거 핵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노력과 북한 핵문제 등을 감안할 때, 1995년 봄에 개최될 예정인 NPT 연장회의는 한국의 안보와 평화적 원자력이용 증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의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은 연장회의에 대비

하여 확고한 원칙과 신축성있는 세부전략을 수립하여 NPT 연장회의를 국익 극대화의 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NPT 연장회의를 준비하는 정부의 협상전략 수립과 향후 한국의 행정책을 보완·발전시키는 데 一助하고자 준비되었다. 본 연구는 NPT 연장 회의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쟁점으로 11가지 사항을 파악하고 각 쟁점별로 한국이 취해야 할 대책과 설득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야 한국이 실질적인 행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NPT 연장회의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쟁점별 대책을 통해 한국의 독자적인 행정책을 국제사회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NPT의 기원 및 체결배경에 대한 검토와 조약의 내용 및 이행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장회의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사항을 파악한 후 각 쟁점별로 한국의 대책을 제시하는 順으로 진행하였다.

1968년 체결된 NPT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으로 진행된 군비통제 노력이 거둔 주요 성과중의 하나이다. 戰後 NPT 체결까지의 기간은 핵무기 확산 방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크게 세時期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945년부터 1946년까지의 「바루크 플랜」 시기는 미국이 원자력사용에 대한 독점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기구를 통해 원자력의 무분별한 사용을 통제하고자 했으나 실패한 기간이다. 둘째, 1946년부터 1957년까지의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논의시기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포괄하는 군축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한 기간이다. 셋째, 1957년부터 1968년까지의 부분군축방안 합의시기는 군축의 대상을 제한하여 특정 부분의 무기체계나 군사활동을 규제하는 세부군축방안이 합의·이행되기 시작한 기간이다.

NPT는 12개항의 前文과 11개조의 條文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주제별로 다음과 같이 6가지 부문으로 재구성하였다. 첫째, 핵국의 핵무기 개발 지원과 비핵국의 핵무기 개발 시도를 금지하는 「擴散禁止」(Nonproliferation) 부문은 대체적으로 잘 이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5개 핵국을 비롯한 원자력선진국들이 정치적·상업적 동기에 의해 핵잠재국들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했고 이라크와 북한 등 신흥핵개발국들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둘째, 비핵국의 NPT 준수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安全措置」(Safeguards) 부문은 비핵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IAE 사찰로 대별된다.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이후 수출규제조치 계속 강화되어 왔으며 이라크의 핵개발 사실 발견 이후 거의 IAEA 사찰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비핵국들의 평화적 원자력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原子力の平和的利用」(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부문은 핵국과 비핵국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다. 비핵국들은 핵무기를 포기한 댓가로 핵국을 비롯한 원자력선진국들이 그들의 평화적 원자력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수출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평화적 핵폭발의 혜택을 공유하는 문제는 제2차 NPT 평가회의 이후 死文化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핵국들의 핵무기 감축을 규정한 「軍縮」(Arms Control and Disarmament) 부문은 NPT 무기연장을 지지하는 핵국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핵국들은 특히 탈냉전 이후에 추진된 군축성과를 예로 들면서 군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비핵국들은 핵국들의 군축노력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면서 NPT 연장과 군축을 연계하려 하고 있다. 최소한 「핵실험전면금지조약」(CTBT)은 체결되어야 NPT 연장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비핵국들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 영토를 비핵지대화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非核國의 安全」(NWFZ and Security of NNWS) 부문은 비핵지대 창설과 안전보장으로 세분된다. 한반도를 포함하여 중남미와 남태평양 등 세곳에서 비핵지대가 창설되어 있다. 비핵지대는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비핵국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는 점을 말할 때,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비핵지대 창설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개 핵국들은 비핵국의 안전보장하기 위해 「소극적 안전보장」과 「적극적 안전보장」을 하고 있으나 비핵국들은 보다 완벽한 안전보장을 원하고

마지막으로, 조약의 이행절차와 세부사항을 규정한 「條約의 改正, 履行 및 延長」(Amendment, Implementation, and Extension) 부문이다. NPT 발효 이후 조약의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는 개최된 적이 없으나 조약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회의는 1975년 이후 5년마다 개최되었다. 1995년에는 조약의 이행을 검토하는 평가회의와 연장기간을 결정하는 연장회의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NPT 탈퇴 규정을 이용하여 탈퇴를 선언했던 유일한 국가는 북한이다.

제1차 평가회의는 1975년 5월 5일부터 30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평가회의에서는 핵무기 확산 방지와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군축을 위해 NPT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였으며 최종선언문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핵무기 감축과 핵실험 금지 등의 문제에서 핵국과 비핵국간의 의견이 대립되었으며 비핵국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원자력선진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였다.

제2차 평가회의는 1980년 8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평가회의와 같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군축 및 비핵국의 안전보장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으나 핵국을 비롯한 원자력 선진국들과 비핵국들간의 심각한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겪었다. 핵군축 문제에 대한 77그룹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최종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했다.

제3차 평가회의는 1985년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평가회의에서 핵국들은 IAEA 전면안전

조치 및 수출통제의 강화 필요성과 핵비확산이 국제 원자력교역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기술과 정보의 교환은 원자력공급국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핵군축에 대해서는 전략적·정치적 문제라는 이유로 신중히 대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비핵국들은 원자력수출 통제는 NPT의 범위를 벗어난 원자력공급국들의 일방적인 월권행위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원자력공급 보장 대책을 수립할 것과 기술과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대립에도 불구하고 제3차 평가회의는 최종선언문 도출에 성공하였다.

제4차 평가회의는 1990년 8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제4차 평가회의에는 북한이 처음으로 참가함으로써 주요 현안에 대해 南北間의 대결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평가회의에서 비핵국들은 CTBT는 핵군축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NPT 연장에 앞서 CTBT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비핵국에 대한 안전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평화적 원자력이용 분야에서 NPT에 가입한 비핵국들을 우대할 것과 핵물질의 장기공급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핵국들은 NPT 연장과 CTBT 체결의 직접적인 연계에 반대하면서 모든 NPT 가입국들이 IAEA 안전조치를 철저히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평가회의는 1995년도의 NPT 연장회의와 CTBT 체결을 연계시키는 문제에 대한 관

련국들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최종선언문 채택에 실패하였다.

NPT의 기원과 내용을 검토하고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5년 연장회의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11가지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각 예상쟁점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국이 비핵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핵국들이 핵잠재국들의 핵개발을 지원한 「間接擴散」 문제에 대해 한국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NPT에 가입하지 않은 비핵국들에 대한 무분별한 수출을 자제할 것과 모든 원자력수출의 조건으로 IAEA 전면안 전조치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수출입 현황에 대한 단일보고체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의할 필요가 있다. 비핵국의 영토에 대한 핵무기 배치와 비핵국 군대의 핵무기 사용훈련을 허용하는 「間接的 核武裝化」 문제에 대해 한국은 한반도에는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거하여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NPT는 핵무기 배치여부를 검증할 수 없으나 「비핵화 공동선언」은 상호사찰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핵무기 탑재 가능한 항공기와 함선의 통과·방문·기항 금지 문제는 단기적으로 기존의 허용 입장을 고수하되 중장기적으로 韓·美間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NPT 제 I조의 내용중 「間接的 讓渡」

의 정의와 관련하여, 한국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핵국이 핵무기 사용을 결심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비핵국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경우 「간접적 양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

둘째, 비핵국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는 문제이다. 신흥핵개발국들중 특히 이란의 핵개발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비핵국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CTBT를 조속히 체결하고 NPT 가입국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CTBT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IAEA 사찰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찰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사회가 남북한 모두에 대해 핵개발 의혹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NPT 연장회의를 핵무장 의사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NPT 연장회의 참가국들에게 「원자력통제기술센터」(TCNC)를 통한 국내사찰 강화와 남북한 상호사찰 등 남북한의 핵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NPT 연장회의 석상에서 남북한이 앞으로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핵·화학·세균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고 공동으로 선언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IAEA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원자력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문제이다. 우선 한국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비핵

국에 대한 전면안전조치 적용을 법적 구속력있는 협정이나 의정서로 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핵국들의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대한 IAEA 사찰을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핵국들이 모든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대해 NPT에 가입한 비핵국들과 같이 전면안전조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핵국들의 원자력시설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정기사찰보다는 회수와 시기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任意檢査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기존의 IAEA 사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①사찰대상의 확대와 보고체계의 단일화, ②사찰기준을 변경하여 査察資源이 핵개발 가능성이 큰 국가에 많이 할당되도록 조정, ③IAEA가 정의한 「重要量」과 「轉換時間」을 현실에 맞게 수정, ④현실성 있는 특별사찰 실시방안을 강구, ⑤자체적으로 사찰을 실시하는 지역협의체와 협력을 강화, ⑥IAEA 사찰의 非調査的 사찰문화를 변경, ⑦금지되지 않은 군사활동에 사용되는 핵물질에 대해서도 사찰을 실시, ⑧IAEA 사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핵시설을 설계. 남북한 원자력활동의 투명성 증대차원에서 한국은 TCNC를 통한 국내사찰강화와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거한 남북한 상호사찰 실현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해야 한다.

넷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고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이다. 한국은 NPT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수출규제를 강화하되 NPT 가입국에 대해서는 원자력활동의 투명도가 보

장되는 정도에 따라 평화적 원자력이용을 지원함으로써 NPT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가는 것이 NPT 체제유지에 기여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핵연료 공급문제에 대해 한국은 핵연료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는 비핵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핵연료 수출국들이 NPT에 가입한 비핵국들에 대해 핵연료의 가격안정과 공급의 연속성을 구체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지역핵연료주기센터는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비핵국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핵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은 자체적으로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규제의 완화와 관련하여, NPT 체제의 강화가 비핵국들의 평화적 원자력이용을 저해해서는 안되며 원자력수출국들은 NPT 가입국들에 대해 우대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평화적 목적의 핵실험도 CTBT를 통해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공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다섯째, 핵국들의 핵무기를 감축하는 문제이다. 한국은 비핵국으로서 핵국들이 보다 과감한 군축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정 달성에 기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핵무기의 보유와 사용 및 사용위협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는 「核武器에 대한 不法化 規範」이 국제사회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촉구해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규범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핵무장 의혹을 해소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美·러의 핵군축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 NPT 연장기한을 우선 2005년까지로 정하고 이후의 연장 여부를 「START II」의 이행 여부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핵국들이 「핵무기 質的 동결 의정서」를 체결하여 핵무기의 질적 개선을 중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핵국들이 자국의 영토 이외의 지역에 핵무기의 보유·배치를 금지하는 별도의 NPT 의정서를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국들이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군사전략을 재정립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핵국들이 비핵국에 대해 무조건 핵무기 사용금지를 약속하는 「핵불사용 의정서」를 NPT의 부속의정서로 채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여섯째, 「독립국가연합」(CIS)의 핵무기 해체와 핵물질과 기술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는 문제이다. 특히 핵을 담보로 반대급부를 얻어내려는 우크라이나의 핵정책과 러시아의 핵물질·기술 유출 문제가 주요 관심사항이다. 한국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NPT와 「START I」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한국은 핵물질·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①핵물질 유출문제를 전담하여 감시·수사하는 국제조직의 창설과 各國 감시기구간 정보교환 및 협력의 강화, ②불법으로 유출된 핵물질·기

술의 습득을 시도한 국가에 대한 유엔차원의 제재조치 강화, ③핵물질·기술의 불법유출을 중범죄로 간주하여 관련인사나 조직에 대한 형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각국의 국내법을 정비.

일곱째,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CTBT를 체결하는 문제이다. 한국은 CTBT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1) CTBT는 신무기 개발, 기존무기의 현대화 및 量産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적인 조치이므로 조속히 체결되어야 하며 모든 NPT 당사국들이 CTBT에 서명해야 한다; (2) CTBT는 평화적 핵폭발과 소규모의 핵실험을 포함하여 일체의 핵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여덟째, 군사용 핵물질의 생산을 금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문제이다. 한국은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군사용 핵물질 생산금지 조약의 조속한 체결을 요구해야 한다. 군사용 핵물질의 생산중단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군사용 핵물질의 총량을 파악하는 조치, 즉 재고공개와 검증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사용 핵물질의 생산금지와 재고파악은 하나의 조치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시설에서 군사용 핵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개 핵국의 평화적 원자력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홉째, 핵국이 비핵국에 대해 제공해 온 기존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1995년 연장회의를 앞두고 기존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라는 비핵국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은 새

로운 방식의 안전보장을 NPT의 부속의정서로 채택할 것을 제의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안전보장은 기존의 안전보장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격이어야 하며 그 대상은 NPT 가입국으로 한정함으로써 NPT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은 5개 核國들이 「포괄적 안전보장 의정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약속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①NPT에 가입한 비핵국에 대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위협을 하지 않는 無條件 核不使用, ②비핵국의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저장하지 않는 核武器의 地域的 擴散 禁止, ③5개 핵국 이외의 새로운 핵국으로부터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위협을 받은 비핵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엔안보리는 공격측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포함하여 즉각적인 지원조치를 취하는 非核國에 대한 安保支援.

열째, 비핵국들이 자국 영토에 핵무기 배치를 금지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비핵지대 창설 문제이다. 한국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거하여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를 약속한 만큼 국제적인 비핵지대 창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국이 「포괄적 안전보장 의정서」의 제2항에서 제의한 「핵무기의 지역적 확산 금지」는 비핵지대 창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기존의 비핵지대화 주장을 다시 제기할 경우, 한국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북한의 주장을 재고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1) 남북한 관계의 진정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북한

이 체제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하면서 대남 적화노선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남북간 화해·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이 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NPT 효력연장의 유형과 기간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효력연장의 유형과 관련하여 세가지 가능한 방안 중, 한국은 동일 기간을 반복하면서 연장하되 매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기존의 평가회의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여 유효기간 반복의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지지해야 한다. 효력연장의 기간은 10년을 단위로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년의 근거는 NPT 체제의 지속적인 유지와 핵군축을 연계시키기 위해 「START II」에 의거하여 美·러가 3,000~3,500개로 핵탄두를 감축하고 미행정부가 현재의 핵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2003년을 중심으로 제1차 연장시점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핵국들이 10년이 너무 짧다고 강력히 반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은 NPT 최초 발효 후 연장회의 개최까지의 기간, 즉 25년을 마지노선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1995년 연장회의에서는 남북간의 대결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또한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연장회의에서의 남북대결은 국제적으로도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연장

회의에서 논의될 예상쟁점에 대한 남북간의 의견대립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북한이 NPT에 대해 표명해 온 입장을 보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문제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국들이 냉전이 종식된 오늘에도 핵무기 독점을 영구화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서 핵무기를 선제공격과 보복의 수단 및 전쟁억제력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였다.¹⁾ 이와 함께 북한은 25년 전의 상황을 반영하여 작성된 불평등하고 불균형적인 현재의 NPT는 오늘의 변화된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①他國의 영역과 공해, 우주에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문제, ②비핵지대창설 담보, ③무조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불사용 안전담보, ④전면적인 핵무기실험 금지, ⑤전반적이고 완전한 핵무기철폐 문제가 조약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 또한 NPT가 공정한 조약이 되기 위해서는 ①무조건적 핵불사용 담보, ②핵무기 선선불사용 공약, ③핵무기 사용의 완전 금지, ④핵무기 생산 중지, ⑤핵무기 완전철폐를 위한 시간표 제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

1) 외교부대변인 기자회견, 「조선중앙방송」, 1994년 8월 13일.

2) NPT 연장회의 제3차 준비회의 북한대표 연설, 「조선중앙방송」, 1994년 9월 20일.

3) 최수현 외교부부부장 제49차 유엔총회 연설, 「조선중앙방송」, 1994년 10월 7일.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의 대책과 원칙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조약의 수정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대신에 NPT를 보완하는 의정서의 채택이나 기존의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남북한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남북한이 NPT 연장회의에서 유사한 입장을 표명한다면, 이는 양측 모두 핵무기를 포기한 비핵국의 입장에서 NPT의 차별성 해소와 국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5개 핵국과 원자력선진국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NPT 연장회의는 국제적으로 참여한 이해가 얽혀있는 핵문제에 대해 남북한의 공조체제가 자연스럽게 구축되고 양측이 民族의 이익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탈냉전 이후 핵국을 비롯한 원자력선진국들은 제3세계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소련의 붕괴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방해하고 자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에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왔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이라크에서 사용한 강압적 군사수단과 북한과의 회담에서 보여준 타협과 강압외교의 병행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다. 반면에 핵국들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더

이상의 핵군축을 유보하면서 평화적 기술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핵군축과 안전보장 및 평화적 기술이전에 대한 비핵국들의 요구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러한 요구의 타당성과 필연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핵국들은 1995년 NPT 연장회의를 필두로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제3세계 국가들이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궁극적으로 핵무기의 완전폐기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독자적인 핵정책을 갖게 된 것은 1991년 11월 8일 「韓半島の 非核化와 平和定着에 관한 宣言」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북한의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 주장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았으며 자연스럽게 국내에서의 핵관련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하면서 부터 핵문제에 대한 국내의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사회에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소와 원자력발전소 설치 반대 움직임이 심화되는 부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는 아직 우리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평화적 원자력이용과 핵무기가 주는 피해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원폭의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설득

하여 원자력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우리 정부와 관련 학계도 앞으로 일본의 사례를 본받아 국민들의 무조건적 反核 정서를 변화시키고 정부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 일각에서는 「비핵화 공동선언」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비핵화 공동선언」의 제3항을 수정하거나 아예 「비핵화 공동선언」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경우 원자력이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에너지안보 차원, 우라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재처리를 통해 보다 저렴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경제적 차원, 그리고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기술적 차원에서 「비핵화 공동선언」 제3항의 수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는 없으나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기술을 개발하고 핵무장 선택권을 보유하기 위해 「비핵화 공동선언」의 수정을 통한 핵주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리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⁴⁾ 핵주권 논의가 아무리 당위성이

4) 전성훈, “東北亞 安保와 韓半島 非核化 實現,”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243~244.

있더라도 현재의 남북한 및 주변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기술 발전에 부작용만 더해줄 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서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현재 남북한이 해야 할 일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앞으로 평화적 원자력이용의 권리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경제적·기술적 명분을 축적하고 국제적 신뢰를 쌓아나가는 일인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장황한 말보다는 차분한 계획과 소리없는 행동이라 하겠다.

〈附 錄〉

「核武器非擴散條約」(NPT) 全文¹⁾

본 조약을 체결하는 국가(이하 「조약당사국」이라 칭함)들은

1. 핵전쟁이 모든 인류에게 미칠 참화와 그러한 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연적 필요성을 생각하면서,
2. 핵무기 확산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심각하게 증대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3. 핵무기의 광범위한 확산 방지에 관한 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4.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대한 IAEA의 안전조치 적용을 촉진하는 데 협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5. 특정 전략장소에서 기재 및 기타 기술을 이용하여 원료 물질 및 특수분열성 물질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안전조치

1) 본 연구에서 번역한 NPT 全文은 지금까지 정부 각 부처에서 발간한 다음과 같은 번역문들을 참고하여 보완한 것이다: ①과학기술처 안전심사실, 「安全措置 (Safeguards) 業務便覽」(서울: 과학기술처, 1989), pp. 379~389; ②국가안전기획부, 「軍縮條約集」(서울: 국가안전기획부, 1989년 9월), pp. 64~70; ③국방부 군비통제관실, 「군비통제 국제조약집」(서울: 국방부, 1993년 12월), pp. 29~34; ④외무부 조약국, 「다자조약 제3권(1971~1976)」(서울: 외무부, 1980년 12월), pp. 403~412.

한다는 원칙을, IAEA 안전조치체제의 테두리내에서, 적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기타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6. 핵폭발 장치의 개발로부터 核國이 획득한 기술상의 부산물을 포함하여 원자력기술의 평화적 응용에 의한 혜택은, 핵국이거나 비핵국임을 불문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해 본 조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7. 상기 원칙을 촉진함에 있어서 본 조약의 모든 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응용을 더욱 개발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대한의 과학정보 교환에 참여하고, 또한 단독으로 혹은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이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8. 핵무기 경쟁의 중지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에 달성하고 핵군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조약당사국들의 의사를 선언하면서,
9.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모든 국가의 협력을 촉구하면서,
10. 대기권, 우주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1963년 조약의 당사국들이, 핵무기의 모든 폭발실험을 영원히 중지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협상을 계속하

겠다고 同 조약의 전문에서 표명한 결의를 상기하면서,

11.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감시하의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조약에 의거한 핵무기의 제조 중지, 모든 핵무기의 비축 중단, 핵무기와 핵운반수단의 폐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적 긴장완화와 국가간 신뢰증진을 촉진하기를 희망하면서,
12.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국가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반대되는 또는 유엔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여하한 방법에 의한 무력의 사용 또는 사용위협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과 국제평화와 안전의 확립 및 유지에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의 軍備로의 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I 조

조약에 가입한 核國은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나 폭발장치에 대한 통제권을 어떠한 수령자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또한 非核國이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그러한 무기나 폭발장치를 통제하는 것을 절대로 원조, 장려, 유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Ⅱ조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은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나 폭발장치에 대한 통제권을 어떠한 양도자로부터도 직·간접적으로 양도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획득하지 않을 것과,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를 제조함에 있어서 도움을 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Ⅲ조

1.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은 원자력이 평화적 이용으로부터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조약하에서 수용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만을 위하여, IAEA 현장 및 안전조치체제에 따라 IAEA와 교섭하여 체결하게 될 협정에 명시된 안전조치를 수락할 것을 약속한다. 본 조가 요구하는 안전조치 절차는 원료 물질이나 특수분열성 물질이 주요 원자력시설내에서 생산·처리·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이들 시설 외부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가를 불문하고, 이들 물질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본 조가 요구하는 안전조치는 해당국 영토내에서, 그 관할권하에서, 기타 장소에서 해당 국가의 통제하에 행해지는 모든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원료 물질이나 특수분열성 물질에 적용되어야 한다.

2. 본 조약당사국은, 원료 물질이나 특수분열성 물질이 본 조가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한, (a) 원료 물질이나 특수분열성 물질 또는 (b) 특수분열성 물질의 처리·사용·생산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장비나 물질을 평화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비핵국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 본 조가 요구하는 안전조치는, 본 조약 제Ⅳ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또한 본 조의 규정과 본 조약 전문에 명시된 안전조치 적용원칙에 따라서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물질과 핵물질의 처리·사용·생산을 위한 장비의 국제적 교류를 포함하여 평화적 원자력활동 분야에서의 국제협력과 조약당사국의 경제적·기술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4.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은 IAEA 헌장에 따라 본 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IAEA와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한 협상은 본 조약의 최초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180일 기간이 지난 후에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의 경우, 기탁일 이전에 同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 同 협정은 협상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발효되어야 한다.

제Ⅳ조

1.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동등하게 그리고 본 조약 제Ⅰ조 및 제Ⅱ조에 따라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생산·사용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조약당사국의 고유권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2. 모든 조약당사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장비, 물질 및 과학·기술 정보의 교환을 가능한 한 최대한 촉진하기로 약속하며, 또한 이러한 교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의 조약당사국은 개발도상지역의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특히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의 영토내에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응용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기여하도록 협력한다.

제Ⅴ조

본 조약의 당사국은 본 조약에 의거하여, 적절한 국제감시하에 그리고 적절한 국제적 절차를 통하여, 핵폭발의 평화적 응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잠재적 혜택을 차별없이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에게 제공할 것과 사용된 폭발장치에 대하여 이들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가능한 한 저렴하고 여기에서 연구 및 개발비용은 제외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다.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은 비핵국을 적절히 대표하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은 본 조약이 발효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은 원하는 경우 양자협정에 따라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제Ⅵ조

조약당사국은 핵무기 경쟁의 조속한 중지와 핵군축에 관련된 효과적 방안에 관하여, 그리고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감시하의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조약에 관하여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기로 약속한다.

제Ⅶ조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일단의 국가들이 그들의 영토내에서 핵무기의 전면적 不在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Ⅷ조

1. 조약당사국은 본 조약에 대한 개정안을 제의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문안은 기탁국 정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기탁국 정부는 이를 모든 조약당사국에게 배포해야 한다. 조약당사국의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기탁국 정부는 동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든 조약당사국을 초청하는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 본 조약에 대한 개정안은 조약에 가입한 모든 핵국과 동

개정안이 배포된 시점에 IAEA 이사국인 조약당사국 전체의 찬성을 포함하여 전체 조약당사국 과반수의 찬성투표로써 승인되어야 한다. 同 개정안은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한 조약당사국에 대하여, 조약에 가입한 모든 핵국과 同 개정안이 배포된 시점에 IAEA 이사국인 조약당사국 전체의 비준서를 포함하여 전체 조약당사국 과반수의 비준서가 기탁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이후에는 同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는 시점에서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조약당사국 회의가 본 조약 前文의 목적과 조약 규정이 실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목적으로 본 조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그후 5년마다 조약 당사국 과반수가 동일한 취지로 기탁국 정부에 제의함으로써 본 조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같은 목적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Ⅸ조

1. 본 조약은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본 조약의 발효전에 본 조 3항에 따라 본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도 언제든지 본 조약에 가입할 수 있다.
2. 본 조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 및 가입서는 기탁국 정부로 지정된 미국, 영국 및 소련정

부에 기탁된다.

3. 본 조약은 본 조약의 기탁국 정부로 지정된 국가와 기타 40개 서명국의 비준과 비준서 기탁이 완료되면 발효한다. 본 조약의 목적을 위해, 핵국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킨 국가이다.
4. 본 조약의 발효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해서, 조약은 해당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자에 발효한다.
5. 기탁국 정부는 본 조약에 대한 개별 서명일자, 개별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자, 본 조약의 발효일자 및 회의소집 요청 또는 기타 통보 접수일자를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6. 본 조약은 유엔 헌장 제102조에 따라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등록된다.

제 X 조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와 관련된 비상사태가 자국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결정하는 경우 본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각 당사국은 3개월전에 미리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탈퇴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통보에는 해당 국가가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에 본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지 또는 한번의 일정기간이나 여러번의 일정기간을 반복하면서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同 결정은 조약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으로 내려진다.

제 XI 조

똑같이 정본인 영어, 러시아어, 불어, 서반아어 및 중국어로 된 본 조약은 기탁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본 조약의 인증사본은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서명국과 가입국 정부에 전달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下記 서명자는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1968년 7월 1일 워싱턴, 런던 및 모스크바에서 본 협정문 3부를 작성하였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核武器 非擴散條約 第4次 評價會議
參加結果報告書」. 서울: 외무부, 1990.

이호재. 「核의 世界와 韓國核政策」. 서울: 法文社, 1981.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 국제협력 정책연구: NPT 연장
대응전략과 원자력 손해배상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KAERI /RR-1288 /93.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 1993.

_____.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3.

_____. 「원자력국제협력정책연구」, KAERI /RR-
1171.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 1992.

전성훈.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
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The Arms Control Reporter. Cambridge, Massachusetts:
Institute for Defense and Disarmament Studies,
1994.

Bailey, Kathleen. *Strengthening Nuclear Non-Prolifera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3.

Blacker, Coit and Gloria Duffy. *International Arms Con-
trol: Issues and Agreements*. Stanford: Stanford Uni-
versity Press, 1984.

- Bunn, George and Roland Timerbaev. *Nuclear Verification Under the NPT: What Should it Cover—How Far May it Go?*. PPNN Study Five, Southampton: Mountbatten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1994.
- Dunn, Lewis. *Containing Nuclear Proliferation*. Adelphi Papers 263,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91.
- Dunn, Lewis and Amy Gordon. *On-Site Inspection for Arms Control Verification: Pitfalls and Promise*. McLean, Virginia: The Center for National Security Negotiations, 1989.
- Epstein, William.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A United Nations Perspective*. Cambridge, Massachusetts: Gunn & Hain, Publishers, 1984.
- Goldblat, Jozef. *Arms Control: A Guide to Negotiations and Agreements*. London: SAGE Publications, 1994.
- Greene, Owen. *Verifying the Nonproliferation Treaty: Challenges for the 1990s*. London: VERTIC, 1992.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Regional Nuclear Fuel Cycle Centres, Vol. 1-3*. Vienn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977.
-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Verification Technologies: Cooperative Aerial Surveillance in International*

- Agreements*. Washington, D.C.: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1991.
- Schiff, Benjamin. *International Nuclear Technology Transfer: Dilemmas of Dissemination and Control*. London: Rowman & Allanheld Publishers, 1983.
- Sherr, Alan. *The Other Side of Arms Control: Soviet Objectives in the Gorbachev Era*. Boston: UNWIN HYMAN, 1988.
- Spector, Leonard. *Nuclear Ambitions: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1989~1990*. Boulder: Westview Press, 1990.

2. 論 文

- 金泰宇. “核武器 非擴散條約과 核의 南北問題.” 「國防論集」, 第14號.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1.
- 송운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다국적 수출통제체제의 동향과 전망.” 「한반도 군비통제」, 제10집. 서울: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1993.
- 이서항. “核擴散禁止體制는 延長될 것인가.” 「國際問題」,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93년 12월.
- 李在星·朴承基·崔瑛明. “國際協力을 통한 原子力 敏感技術 確保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軍事運營分析學會誌」, 第16卷 第2號.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0.

전성훈. “東北亞 安保와 韓半島 非核化 實現,”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_____. “南北 核協商 現況과 展望.” 「統一研究論叢」, 創刊號.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_____. “核問題에 대한 北韓의 立場과 非核化 展望.” 「제5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Albright, David and Peter Gray. “Building a corporate non-proliferation ethic.” *ISIS Report*, Washington: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June 1993.

Albright, David and Mark Hibbs. “Iraq’s quest for the nuclear grail: what can we learn?” *Arms Control Today*, vol. 22, no. 6, July/August 1992.

Barnaby, Frank. et al.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related to disarmament.” *SIPRI Yearbook 1976*, Stockholm: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76.

Blix, Hans. “Verification of nuclear non-proliferation: securing the future.” *IAEA Bulletin*, vol. 34, no. 1, 1992.

Bunn, George. “Procedural issues—the nature of the review/extension conference: implications for

the extension decision." Draft paper for PPNN, Stanford: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Arms Control, May 1994.

_____. "The NPT and its extension in 1995." Draft paper for CISAC, Stanford: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Arms Control, November 1993.

_____. "Does the Non-Proliferation Treaty(NPT) requires its non-nuclear-weapon members to permit inspection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of nuclear activities that have not been reported to the IAEA?" *CISAC Working Paper*, Stanford: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Arms Control, May 1992.

Bunn, George and Roland Timerbaev. "Avoiding the 'definition' pitfall to a comprehensive test ban." *Arms Control Today*, vol. 23, no. 4, May 1993.

Bunn, George and Charles Van Doren. "Options for extension of the NPT: the intention of the drafters of article X.2." *Options & Opportunities: the NPT Extension Conference of 1995*, Southampton: Programme for Promoting Nuclear Non-Proliferation, 1991.

- Butler, Richard. "Beyond the NPT." Pilat, Joseph and Robert Pendle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1990.
- Carrea, Antonio.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 universal concern." Pilat, Joseph and Robert Pendle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1990.
- Cheon, Seongwhun. "A South Korean view of US Counterproliferation Initiative." paper prepared for The Woodrow Wilson Center's International Project on US Counterproliferation Doctrine, Washington, D.C., November 1994.
- _____. "Regional non-nuclear options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paper prepared for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managed by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erkeley, California, June 1994.
- Collina, Tom Zamora. "Stretching the NPT—for how long?" *ISIS Report*, Washington: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January 1994.
- Dunn, Lewis. "Fifty years since stagg field: nuclear non-prolifer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aper prepared for Symposium on Proliferation Issues: Past, Present, and Future, University of Chicago, 3~5 December 1992.

_____. "The collapse of the NPT—what if?"

Pilat, Joseph and Robert Pendle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1990.

Endicott, John. "The impact of a limited nuclear free zone on deployed nuclear weapons in Northeast Asia," prepared for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managed by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erkeley, California, July 1994.

Executive Summary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ort, *Arms Control Today*, vol. 24, no. 2, March 1994.

Fischer, David. "Article X.2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the nature of its 1995 Extension Conference." *Options & Opportunities: the NPT Extension Conference of 1995*, Southampton: Programme for Promoting Nuclear Non-Proliferation, 1991.

_____. "What happens to safeguards if the

NPT goes?" Pilat, Joseph and Robert Pendle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1990.

Fischer, David and Herald Müller. "The fourth review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SIPRI Yearbook 1991*, Stockholm: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91.

Goldblat, Jozef. "Nuclear weapon-free zones: lessons from the existing agreements." in Howlett, Darryl and John Simpson, eds. *East Asia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Southampton: Programme for Promoting Nuclear Non-Proliferation, 1993.

_____. "Issues facing the 1995 NPT Extension Conference." *Security Dialogue*, vol. 23, no. 4, December 1992.

_____. "The third review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SIPRI Yearbook 1986*, Stockholm: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86.

Goldblat, Jozef and Macha Levinson. "The second NPT review conference." *SIPRI Yearbook 1981*, Stockholm: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81.

- Hayes, Peter. "North Korea's nuclear gambits." Kathleen Bailey, ed. *Director's Series on Proliferation*, Livermore: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1993.
- Imai, Ryukichi. "The NPT and nuclear proliferation in East Asia: views toward the 1990s." Pilat, Joseph and Robert Pendle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1990.
- Jennekens, J., R. Parsick and A. von Vaeckmann.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safeguards system." *IAEA Bulletin*, vol. 34, no. 1, 1992.
- Kapur, Ashok. "World and regional power relations without the NPT." Pilat, Joseph and Robert Pendle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1990.
- Khan, Munir Ahmad. "Toward a universal framework of nuclear restraint." Pilat, Joseph and Robert Pendle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1990.
- Krass, Allan. "The Soviet view of verification." in William Potter, ed. *Verification and Arms Control*, Lexington: Lexington Books, 1985.
- Lehman, Ronald.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on

- the Korean Peninsula.” 「韓半島 軍縮 4個國 學術會議」. 서울: 북한연구소, 1992년 6월 2일.
- Lockwood, Dunbar. “U.S., Russia agree to phase-out of nuclear weapon reactors.” *Arms Control Today*, vol. 24, no. 6, July / August 1994.
- Lowenthal, Mark and Joel Wit. “The politics of verification.” William Potter, ed. *Verification and Arms Control*, Lexington: Lexington Books, 1985.
- Lubetkin, Wendy. “U.S. seeks permanen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Backgrounder*, Seoul: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26 September 1994.
- Müller, Harald. “Reform of the system for nuclear export controls.” Howlett, Darryl and John Simpson, eds. *East Asia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Southampton: University of Southampton, 1993.
- _____. “European and global security in a world without the NPT.” Pilat, Joseph and Robert Pendle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1990.
- Nye, Joseph. “U.S.-Soviet cooperation in a nonproliferation regime.” George, A., P. Farley and A.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Achievements*,

Failures, Less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_____. "The superpowers and the Non-Proliferation Treaty." Carnesale, Albert and Richard Haass, eds. *Superpower Arms Control: Setting the Record Straight*, Cambridge, Massachusett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87.

_____.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mmer 1987.

Pilat, Joseph. "A world without the NPT." Pilat, Joseph and Robert Pendle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1990.

Pilat, Joseph and Robert Pendley. "Introduction." in Pilat, Joseph and Robert Pendle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1990.

Quester, George and Victor Utgoff. "Toward an international nuclear security policy."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7, no. 4, Autumn 1994.

Sanders, Benjamin. "Avoiding the worst of all possible worlds." Pilat, Joseph and Robert Pendley, eds.

_____.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1990.

Scarlott, Jennifer. "Nuclear proliferation after the Cold War." *World Policy Journal*, vol. VIII, no. 4, Fall 1991.

Scheinman, Lawrence. "The Non-Proliferation Treaty: on the road to 1995." *IAEA Bulletin*, vol. 34, no. 1, 1992.

_____. "Does the NPT Matter?" Pilat, Joseph and Robert Pendle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1990.

Shahi, Aga. "Defense, disarmament, and collective security." *Nonoffensive Defense: A Global Perspective*, New York: UNIDIR, 1990.

Shaker, Mohamed. "The 1995 NPT Extension Conference: a rejoinder." *Security Dialogue*, vol. 23, no. 4, December 1992.

_____. "The nonproliferation treaty regime: a rereading before 1995." Pilat, Joseph and Robert Pendle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1990.

- Simpson, Diane. "Nuclear testing limits: problems and prospects." *Survival*, November/December 1991.
- Simpson, John. "The NPT Extension Conference of 1995." Howlett, Darryl and John Simpson, eds. *East Asia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Southampton: University of Southampton, 1993.
- Simpson, John and Darryl Howlett. "Nuclear non-proliferation: the way forward." *Survival*, November/December 1991.
- Thomas, Raju. "Should India sign the NPT?" Pilat, Joseph and Robert Pendley, eds. *Beyond 1995: The Future of the NPT Regime*, New York: Plenum Press, 1990.
- Turrentine, Archelaus. "The dynamics of the NPT extension decision." Kathleen Bailey, ed. *Director's Series on Proliferation*, UCRL-LR-114070-2, Livermore: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1993.
- Wedekind, Lothar and James Larrimore. "IAEA symposium on international safeguards: mirror of the times." *IAEA Bulletin*, vol. 36, no. 3, 1994.
- Wolfsthal, Jon. "IAEA to implement 'suspect site' inspection powers." *Arms Control Today*, vol. 22, no. 2, March 1992.

3. 其 他

신문, 잡지 및 방송

「東亞日報」.

「로동신문」.

「世界日報」.

「中央日報」.

「朝鮮日報」.

「조선중앙방송」.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Disarmament Time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ane's Defence Weekly.

Korea Herald.

NATO Review.

New York Times.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Time.

Washington Post.

기타 문건

과학기술처 안전심사실. 「安全措置(Safeguards) 業務便覽」

서울: 과학기술처, 1989.

국가안전기획부, 「軍縮條約集」. 서울: 국가안전기획부, 1989.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군비통제 국제조약집」. 서울: 국방부, 1993.

외무부 조약국. 「다자조약 제3권(1971-1976)」. 서울: 외무부, 1980.

CWC Summary and Text. *Arms Control Today*, vol. 22, no. 8, October 1992.

Final Declaration of the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CONF/30/Rev. I, Annex I, 30 May 1975.

IAEA document GOV/1997.

IAEA document GOV/1854.

IAEA document GOV/1744 and Add. 1.

IAEA Director General's statement.

Informal Working Paper Reviewing Articles I and II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prepared during the second NPT review conference, August-September 1980.

Informal Working Paper Reviewing Articles III, IV and V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prepared during the second NPT review conference, August-September 1980.

Informal Working Paper Reviewing Article VIII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the Question of the Se-

Security of Non-nuclear-weapon States, prepared during the second NPT review conference, August-September 1980.

Letters by Thomas Cochran and Christopher Paine to the Honorable Hans Blix and the Honorable Hazel O'Leary, 18 August 1994.

NPT/CONF.IV/MC.I/WP.1.

NPT/CONF.IV/SR.4.

NPT Review Conference document NPT/CONF.II/C.I/2.

NPT Review Conference document NPT/CONF.II/SR.1.

NPT Review Conference document NPT/CONF/C.I/L.1.

NPT Review Conference document NPT/CONF/C.I/SR.9.

NPT Review Conference document NPT/CONF/SR.2.

Remark by Honorable Les Aspin, Secretary of Defens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Committee on International Security and Arms Control, 7 December 1993.

Special message of the US President to Congress, 28 March 1961.

Statement by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Question of Nuclear Testing, 5 October 1993.

Statement to the Thirty-Eigh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by Hans Blix, *Programme for Promoting Nuclear Non-Proliferation*, no. 27, 1994.

The Third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1985, Final Declaration, Review document NPT/CONF. III /64/ I, Annex I, 1985.

Trilateral Statement by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Ukraine. *Arms Control Today*, vol. 24, no. 1, January /February 1994.

UN document A/RES/S-10/2.

UN document A/6834.

UN document A/S-10/PV.27.

UN document A/S-10/PV.26.

UN document A/S-10/AC.1/30.

UN document A/S-10/PV. 5.

UN document S/RES/255.

◎發刊資料目錄 案內◎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 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 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 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備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備統制條約의 示 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的 役割: 北韓映畫分
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6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權力基盤 研究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和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方向과 南北關係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부의 政勢認識: 對南觀·對外觀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北韓 住民의 價値意識 變化研究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 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
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 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律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現況과 展望
- 94-03 北韓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中心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 分析
- 94-10 韓·日關係 定立方案：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金正日政權의 變化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1994.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9)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ECONOMIC PROBLEMS OF NA-
TIONAL UNIFICATION(1993)

〈資 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1995年 NPT 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研究報告書 94-21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2-5341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4년 12월 일

發行日 1994년 12월 일
